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7-13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2014)

자율·자립·자강 新수산정책

2010. 3.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209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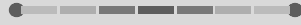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2014)

2010. 3.



요 약	1
제1편 우리 수산업의 현실과 新 수산 비전의 도출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	
제2장 지난 수산정책의 평가	
제3장 新 수산 비전과 전략	
제2편 新수산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과제	
제4장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제5장 자원관리에 기반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제6장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제7장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제8장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제9장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제3편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제10장 재정지원 계획	
제11장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참고> 2014년 수산업·어촌 전망 (KMI)	
첨부>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요약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 - 2014)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요약)

1.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평가

□ '99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

-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시행

- 제1차('00~'04) : 신 해양질서 시대 수산업 개편
 - 한·일('99) 및 한·중 어업협정('01) 체결로 연근해 어장 축소
⇒ 어선 감척, EEZ 어업관리, TAC 및 자율관리어업 등에 중점
- 제2차('05~'09) : 개방화 시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WTO/DDA 출범('01), FTA 확산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감
⇒ WTO/FTA 국내대책, 어촌개발,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 자원 회복, 어획량 증대,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연근해 수산자원은 '02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 * 수산자원량 : ('90) 835만톤 → ('00) 790만톤 → ('08) 835만톤
- 어업 생산액은 10년간 47% 증가('99. 4조3,200 → '08. 6조3,450억원)
- 어업 생산량은 10년간 16% 증가('99. 219 → '08. 336만톤)
 - 근해어업은 어선세력을 36%(5,937척 중 2,165척)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96% 수준 유지
 - 양식어업은 생산량 1.8배 증가, 넙치·전복산업 등 비약적 발전
- 어가호당 소득은 69.2% 증가('99. 1,843 → '08. 3,118만원)
- 자율관리어업, 총허용어획량(TAC) 등 선진 어업관리 정착

2. 대내외 여건변화

□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시대로의 진입

-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기온 상승은 2배, 해수면 상승은 3배)하여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심각
 -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어업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움
- 우리 연근해어업은 고탄소 산업(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66ℓ 사용)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산물 수요는 증대하나 생산은 한계

-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은 57% 증가('98. 35kg → '07. 55kg)하여 육류 17%, 과일류 29%에 비해 높은 증가율
 - 중국의 수산물 소비도 급증('00. 11kg/인 → '06. 22kg/인)
- 수산자원량에 비해 아직 어선세력이 과도(7% 추가감축 필요)하고, 양식어업도 어장오염, 개발적지 부족 등으로 생산 증대에 한계
 - 원양어업은 어선 노후와 국제규제 강화로 생산량 감소 추세

□ 유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채산성 악화

- 최근 4년간 어가소득은 19% 증가했으나, 어업경영비는 49% 증가
 - * 소득 : ('04) 2,616 → ('08) 3,118만원, 경영비 : ('04) 1,319 → ('08) 1,966만원
- 보건의료시설 접근에 농촌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촌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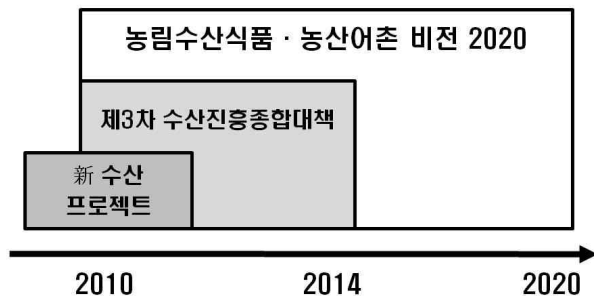
- ◆ 어업인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위주의 행정을 자율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 필요
- ◆ 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와 대중국 수출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필요
- ◆ 저탄소 녹색성장과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 감축 필요

3.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수단	<p>정부 규제 · 지원 ⇒ 어업인 자율 · 자립</p> <p>- 정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정부지원은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p> <p>- 어업인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립능력도 강화</p>
자원관리	<p>획일적 ⇒ 지역별 · 해역별 맞춤형</p> <p>-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p> <p>- 지역별 ·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p>
변화관리	<p>소극적 · 방어형 ⇒ 적극적 · 공세형</p> <p>-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명태 고갈)보다는 기회(참치 출현)를 주목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p> <p>- 대중국 수입 증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출 확대 추진</p>

4. 타 계획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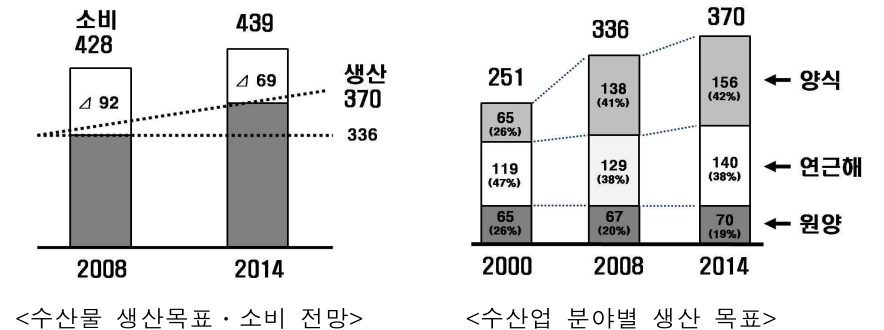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및 “新 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5.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목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 ('07. 생산 13위 수출 26위)
주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 (08) 336만톤 → (14) 370만톤 ■ 어가소득 : (08) 3,118만원 → (14) 3,800만원 ■ 수출액 : (08) 14.5억불 → (14) 25억불
중점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어업인 · 어촌 활력 증진

<수산물 생산 목표>



6. 업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 및 구조조정 방안

《 '14년 생산목표 370만톤 : 연근해 140, 양식 156, 원양 70 》

□ 연근해어업 : 129만톤('08) ⇒ 140만톤('14)

○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 24%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연근해 생산량	129만톤	140만톤	8.5%	- 어업 구조조정 촉진 - 맞춤형 수산자원관리 - 자원관리어업 확산 - 유류비 등 비용 절감
연근해 어선수	57,183척	50,000척	-12.6%	
수산자원량	835만톤	900만톤	7.8%	
척당 생산량	22.5톤	28.0톤	24.4%	

□ 양식산업 : 138만톤('08) ⇒ 156만톤('14)

○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양식 생산량	138만톤	156만톤	13.0%	- 외해양식 활성화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불법양식어업 근절
양식장 면적	13.6만ha	13만ha	-4.4%	
ha당 생산량	10.1톤	12.0톤	18.8%	

□ 원양산업 : 66만톤('08) ⇒ 70만톤('14)

○ 원양 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척당 생산량 15% 증대

구 분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원양 생산량	66만톤	70만톤	6.1%	- 원양어선 신조대체 - 연안국 협력 강화 - 해외 수산투자 촉진
원양어선 척수	380척	350척	-7.9%	
척당 생산량	1,736톤	2,000톤	15.2%	

7. 중점과제 추진계획

1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 감축

- 탄소 배출이 많은 저효율 어선기관을 대체('14년까지 279천마력)
- '13년까지 어선 1,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
 - * 집어등 사용 어선은 전체 유류사용량 중 65%를 전력 생산에 사용
-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 감축 추진
-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여 어류 산란 서식장, 탄소 흡수,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다용도 활용

□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히터펌프) 보급, 지하해수 개발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가온비 절감
-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복합화
- '벼농사+참게' 등 내수면어업과 농업의 결합으로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농수산물 생산

□ 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 촉진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나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대체
- 수산 부산물 리사이클링 활성화 등 수산 가공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방안 강구

2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척하고,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5만7천 척의 연근해 어선을 5만 척 수준으로 감축
- 고탄소·노후 어선을 저탄소·복지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비용 절감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 '14년 수산자원 900만톤을 목표로(현 835만톤)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 강화
- '14년까지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1,400개로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관리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에 적용
-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를 확대
- TAC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Q 단계적 도입 검토
-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청소 및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추진

□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

- 현행 2개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남해 3개 해역별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 어업관리를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 확대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3국간 어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도 강화

3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어장오염 및 공급과잉 등을 유발하는 불법양식어업 강력 단속
 - 양식어구 실명제, 폐양식 어구 처분권제도 도입 및 인공위성 활용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 친환경 인증 수산물 품목 확대
 - '08년 7개(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 '14년 20개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율을 상향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 확대

□ 고부가가치 신 성장동력 발굴

- 외해양식 촉진으로 국토의 2.9배인 EEZ를 바다목장으로 개발
 -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먼 바다에 설치한 대규모 수중 가두리에서 기업형으로 양식 ('12년까지 외해양식장 15개소 개발)
 - 내만가두리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 추진
-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 굴, 해삼 등 수출전략품목 개발
-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 및 특화 브랜드화 (동해 참가리비, 서해 황복, 남해 고등어 등)
- 논+미꾸라지, 참게 등 농수산 융합형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체계 개선

- 수산물 관측사업 대상품목을 '16년까지 12개로 확대
- 넙치, 전복, 김 대표조식을 집중 육성하고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여 생산 및 수급조절의 중추기능 수행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 '16년까지 총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 건조하여 어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방지 (평균 선령 26년 → 20년으로 개선)
- 국제기구 관할수역에 대한 신규허가와 제3국적선의 국적선 전환으로 원양어업세력 확장
- FTA 등 시장개방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구조조정 실시

□ 안정적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

- 우리나라가 연 28만톤의 참치를 어획하는 태평양 도서국가(PNA 8개국)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참치자원 지속적 확보
- 러시아 연해주 어선조선소 및 수산물 유통시설(냉동공장 등) 건립 참여로 한·러간 교류 확대 등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 개도국과의 어업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어업 교류센터” 설립 추진
- 인도네시아에 톳 등 해조류 대량 양식 및 펄프 생산시설을 구축해 차세대 세계 펄프시장(3~5조원 추정) 선점
- 해외양식어업, 가공공장 등 민관 합동펀드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 확충
 - '14년까지 수출용 패류(전복) 및 넙치 물류센터 2개소 건립
- 해외시장 수출수요의 지속적 파악 및 해외마케팅 다변화
 - 전복, 해삼, 참치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
- EU의 IUU 어업 근절조치 이행을 위해 국산 수산물에 대한 CDS(Catch Document System) 구축

□ 수산 가공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산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물류비 등 비용 절감
 - 경북 과메기, 전북 풍천장어, 완도 전복 등 우선 추진
-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국제 수산물거래소,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을 연계하여 동북아 수산물 물류가공 허브로 육성

□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강화

- 노량진, 가락 등 전국 18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리모델링, 현대화형, 기능전환형으로 분류하여 시설 개보수
- 씨푸드 타운 및 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위판장 건립
- 문화, 관광 시설과 연계한 Korea Seafood Landmark 조성

□ 수산물 수급관리체계 강화

- 국내외 수산물 생산·유통·가격·수출입 등 수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 구축('14년)
 - 양식어업 위주의 수산관측사업을 어선어업 품목까지 확대
- 학교급식, 군납 등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 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수산물 생산단계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11년부터 전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위생등급 설정
- HACCP를 어선, 어획물 양륙장, 건조장 등으로 확대

□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한국 농수산대학을 수산 정예인력의 요람으로 육성
- 매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400여명을 선발하여 '15년까지 후계 수산업경영인 2만명 달성

□ 어가 경영안전망 구축

- '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목표로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11~'12년)
 - 어가단위 소득 안정제는 '13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추진
-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추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을 '12년까지 20% 수준으로 제고

□ 어촌 복지서비스 향상

- 어업활동 관련 “어부증” 범위 구체화 및 의료비 지원방안 추진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를 취약어촌지역 전체(310개 어촌계, 60개소)로 확대하고, '12년까지 15개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운영
- 수도권 대학의 어촌학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 추진

□ 어촌·어항 개발사업 다변화

- 미완공 어항 집중투자로 어항완공률 제고('09. 38% → '13. 51%)
- '13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노후 국가어항 46개항 중 27개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다기능어항 13개 중 미완공 9개항 완공

8. 재정지원 계획

□ 재정지원 규모

-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 1,223억원 (평균 1조4,245억원/년)
 - * '10년은 확정, '11~'13년은 국가재정 운용계획('09~'13), '14년은 '10~'13년 평균증가율 1.9%을 적용하여 추정
 - * 실제 규모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10~'14) 및 해당연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
- (단위 : 억원)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71,223	13,880	13,878	14,383	14,403	14,679

□ 재정지원 방향

-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의 도래,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재정지원 방향 조정
- 증대시킬 분야
 -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DDA 타결 이후에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 (어선 건조 등, DDA 타결시까지 한시적 지원)
 - 저탄소 녹색 성장 촉진 (유류절감 장비 개발·보급, 저탄소 기술 개발,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 조성 등)
 - 신 성장동력 육성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경영 안전망 구축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직불제 등) 등
-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분야
 -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한시적 지원)
 -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 지원 등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사업 등
- WTO/DDA 협상 결과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 간접지원으로 전환

9.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 수산 거버넌스 개편

-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어장환경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조직” 설립
 - 인공어초, 바다 숲 및 바다목장 조성, 종묘방류 등 전담
 - '10년 9월 출범을 목표로 법적근거 마련, 준비위원회 구성 등 추진
- 현행 동·서해 어업지도 체계를 동·서·남해 “해역별 어업지도 사무소” 체계로 확대 개편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등 새로운 수산정책을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자율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협법을 개정하고 고강도 구조조정 등 “新 수협운동” 추진
 - 중앙회 조직·인력 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및 부실수협 통폐합 추진

□ 법률 제·개정

-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IUU 협정 및 FTA 체결 등으로 영향 받는 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감척제도 도입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 유해 낚시도구의 금지,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
- 수산업법(개정)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어업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업 허가 일제정비 도입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수산자원관리법(개정)
 -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조직의 법적근거 마련

제1편

우리 수산업의 현실과 新수산 비전의 도출

제1장 대내외 여건 변화

1.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녹색 시대로의 진입

□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지구 온난화 가속

- 21세기말에는 20세기 대비 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 전망
 - 태풍,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수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 심각
- 우리나라의 온난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
 -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하여 세계 평균(0.74℃)의 2배, 해수면 상승은 40년간 22cm로 세계평균(매년 1.8mm)의 약 3배
 - *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총 피해액은 17.7조원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 치열

- '09.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 *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반발로 합의에는 실패하고 주목(take note)한다는 수준으로 결정
-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고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확정('09. 11월)
 - * BAU : Business As Usual. 저감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
 - 향후 각 산업 분야별 감축 목표치 설정 및 감축량 배분 예정

□ 고탄소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압박 강화 예상

-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66ℓ 사용
 - 트롤, 쌍끌이 등 “끌이어업”의 유류소비가 특히 높은 편
 - 양식어업은 수산물 1kg 생산에 0.04ℓ 사용 (어선어업의 1/17)
- * '08년 수산업 유류 소비량(459만 드럼)은 우리나라 전체(6억 드럼)의 0.76%

2. 글로벌 시장개방 가속화

□ 세계적 불황 속 WTO/DDA 타결 가능성 증대

- '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농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갈등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음
 - '09. 9월 피츠버그 G20에서 DDA 타결을 지지하는 합의문이 채택 되었으며, DDA 타결이 전 세계적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할 가능성
- DDA 타결시 우리 수산업은 보조금과 관세부분 영향 예상
 - 수산보조금은 최악의 경우 어업용 면세유, 정책자금 이차보전, 어항건설 등 약 70%가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 수산물 관세는 17%('08 기준)에서 6% 수준으로 하락 예상

□ FTA를 통한 시장개방 지속 확대

- 칠레, ASEAN, 인도, 미국, EU 등 7개 경제권과의 FTA가 타결·발효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등 7개 경제권과 협상 진행 중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60%,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생산구조에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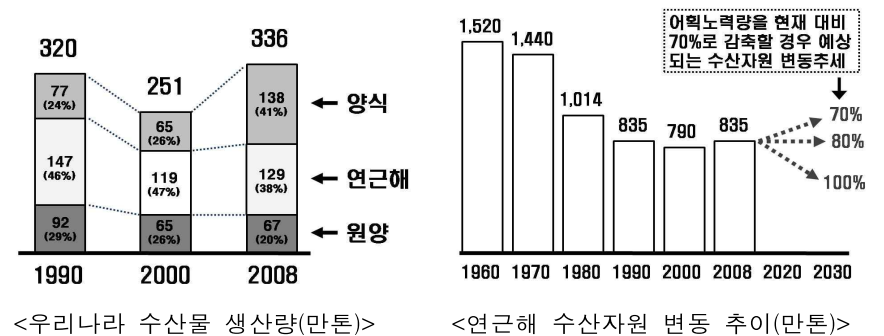
3.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은 한계에 봉착

- (연근해) 구조조정 및 자원증강 등에 따라 '02년을 저점으로 다시 회복추세이나, 아직 어선세력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

구 분	근 해	연 안	계
○ 총 어선척수('93년 기준)	5,564	63,046	68,610
○ 적정 어선세력	2,342	47,202	49,544
○ 적정 감척 척수	3,222	15,844	19,066
- 그동안 감척 척수	2,509	12,880	15,399
- 감척 필요 척수	713 (30%)	2,964 (6%)	3,667 (7%)

- (양식)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어장오염, 질병, 밀식, 불법어업 등 문제 산적
- (원양) 어선 노후화(평균 선령 28년), 연안국 및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수산자원) 지난 50년간 약 5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우려



4. 수산물 수요 증가

□ 생활수준 향상 및 웰빙 열풍 등으로 수산물 수요 꾸준히 증가

○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은 57% 증가하여 육류 17%, 과일류 29%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03~'08년간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소비지출에서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출 증가세는 연평균 8.8%로 식료품 중 가장 높았음 (CJ 경영연구소, '0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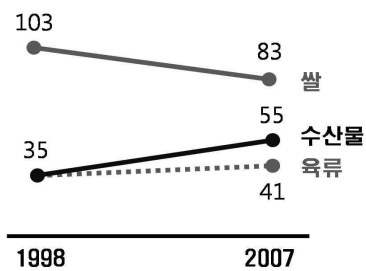
○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서 수산물 비중도 증가 (36%→40%)

□ 현 수산물 생산능력으로는 향후 수산물 수급에 차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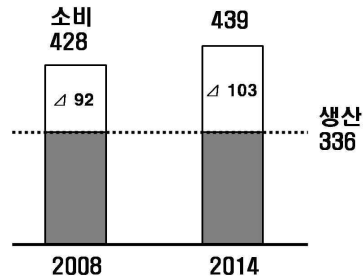
○ 국내 생산량이 '08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소비량과의 격차가 '08년 92만톤에서 '20년 111만톤으로 확대 전망

○ 이 경우 수산물 자급률 하락 전망 ('08. 79% → '20. 75%)

* 일본의 경우 국내 수산물 수요의 약 45%를 수입산에 의존함에 따라 수산 식품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수산물 생산·소비 전망>

○ 일본은 세계 제1의 수산물 수입국이고 중국도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바,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 증대 필요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00) 11kg → ('06) 22kg → ('09 추정) 30kg

5. 어업 경영여건 악화

□ 유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채산성 악화 추세

○ '08년 어가소득은 '04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어업경영비는 동 기간 중 49% 증가

* 어가소득 : ('04) 26,159천원 → ('08) 31,176

* 어업경영비 : ('04) 13,185천원 → ('08) 19,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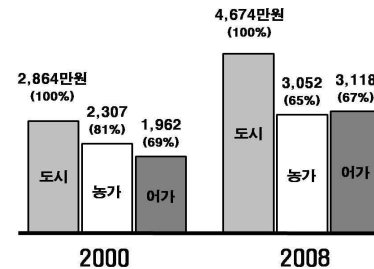
○ 어선을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유가 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어업경영비 상승도 대부분 유가 인상에 기인

- 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황 경우는 '04년 386원에서(리터당, 면세가) '08년 851원으로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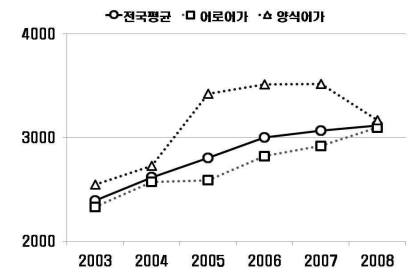
* '08. 7월 국제유가가 정점(147\$)에 달했을 때 면세유는 드럼당 23만원까지 상승('07년 평균 10만원)하고, 연근해 조업척수와 일수는 전년대비 11% 감소

□ 어가 소득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도시근로자의 67%에 불과

○ '05년 이후 어가소득 증대는 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인 하며, '08년에는 농가소득 수준에 도달



<도시근로자 대비 농어가소득>



<어로어가와 양식어가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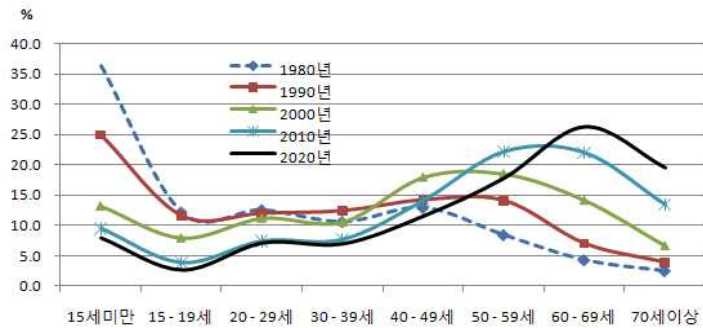
6. 어업인·어촌 활력 저하

□ 수산업의 지속적 침체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어가인구 및 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 대비 각각 39%, 58% 수준으로 감소('08년)

* 어가수 : ('90) 121천명 → ('00) 89 → ('08) 71

- '08년 어촌 고령화 비율(65세 이상)은 22.6%로 초고령 사회 진입



<어가인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

- 어촌은 보건의료시설 접근에 농촌의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촌의 정주환경 열악

7. 시사점

- 저탄소 녹색 시대를 맞이해 유류 등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개방화 시대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어업구조 개편 필요
- 어촌사회 유지를 위해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고 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등 어업외 소득 확대방안 강구 필요

제2장 지난 수산정책의 평가

1. 제 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개요

□ 제1차('00~'04) : 신 해양질서 시대 수산업 개편

- UN 해양법협약 발효('94), 신 한·일어업협정('99) 및 한·중어업협정('01)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조업수역 축소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6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증가
- 연근해어선 감척, EEZ 어업관리, TAC 본격 시행, 자율관리어업 도입, 바다목장 확대, 해외 신어장 개발 등 중점 추진
 - '01년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04년까지 참여 공동체(63개소 → 174개소) 및 참여 어업인(5천명 → 15천명) 약 3배로 증가

□ 제2차('05~'09) : 개방화 시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

- WTO/DDA 출범('01), 한-칠레 FTA 타결('02), 한-일 FTA 개시('03) 등 시장개방 확대로 수산업에 위기감 확산
 - 수산물 무역수지는 '01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수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
 - * 수산물 무역수지 : ('99) 3.4억불 흑자 → ('02) 7.2억불 적자 → ('08) 15
 - * 수산물 자급률 : ('99) 106% → ('02) 64 → ('08) 79
- WTO/FTA 협상 대응 및 국내대책 마련, 불법소형기선저인망 근절, 어촌·어항 종합개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 * '05년 2,467척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매입 정리

2.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성과

□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생산량 증대

- 지속적인 어업구조조정, 자원회복사업 및 불법어업 단속 등에 힘입어 연근해 수산자원은 '02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기간('99~'09) 중 13,059척의 어선 감척(근해 2,165척, 연안 10,894척)
 - * 수산자원량 : ('90) 835만톤 → ('00) 790만톤 → ('08) 835만톤
-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04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
 - 특히 근해어선은 '99년(5,937척) 대비 약 36%를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96% 수준 유지
 - * 근해선망(245→271천톤), 중형기저(20→35천톤), 근해통발(28→40천톤), 근해 연승(12→25천톤) 등 일부 업종은 생산량 증가
- 양식어업은 생산량이 1.8배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전복·넙치 등 고가 품목의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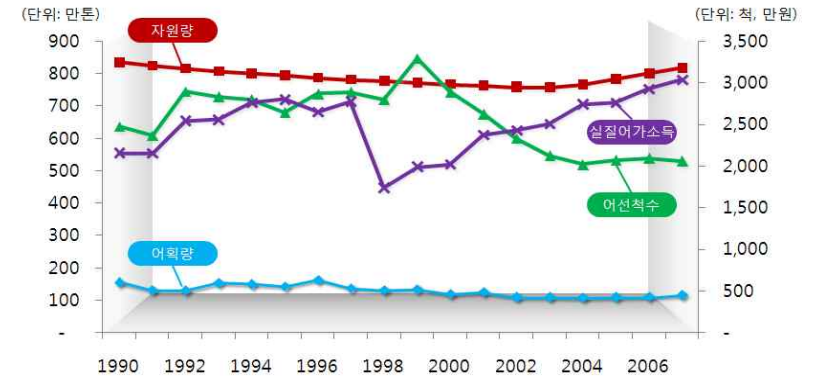
<표> 어업별 생산량 변화

(단위 : 천M/T)

구분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	
								04/99	08/04
계	2,911	2,514	2,519	2,714	3,032	3,275	3,363	-13.4	33.5
연·근해	1,336	1,189	1,077	1,097	1,109	1,152	1,286	-19.4	19.4
- 근해	915	773	765	737	753	764	876	-16.4	14.5
- 연안	421	416	312	360	356	388	410	-26.0	31.4
양 식	765	653	918	1,041	1,259	1,386	1,382	19.9	50.6
원 양	791	651	499	552	639	710	666	-36.9	33.4
내수면	18	21	25	24	25	27	29	41.8	15.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수산자원량, 어선척수, 어획량 및 어가소득 변화



□ 어가소득의 지속적 증가

- 어가호당 소득은 '99년 대비 69.2% 증가(1,843→3,118만원)
 -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산물 가격 및 수급을 안정시킨 효과인 것으로 분석
 - * 농가 소득과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어 '08년에는 농가 소득을 추월

<표> 어업총생산금액 및 어가소득 변화

구분	1999	2004	2008	성장률(%)		
				04/99	08/04	08/99
어업총생산금액(억원)	44,824	47,313	63,550	5.6	34.3	41.8
어업총부가가치액(억원)	21,189	21,258	21,742	0.3	2.3	2.6
어가호당 소득(천원)	18,428	26,159	31,176	42.0	19.2	69.2
농가호당 소득(천원)	22,323	29,001	30,523	29.9	5.2	36.7
도시근로자가구(천원)	26,696	37,360	46,737	39.9	25.1	75.1

자료 : 통계청

3. 아쉬운 점

□ 수산업에 대한 비전 상실

- 수산업은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 추세
 -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5대 갯벌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족자원 증가 등 풍부한 잠재력 보유
- 자원고갈, 어장오염, 시장개방 등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미래 수산업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비전 상실

□ 어업인·어촌의 자립능력 배양 미흡

- EEZ 시대 어장 축소에 따른 충격 흡수,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현안 대응에 치중
 - 어업인·어촌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미흡
- 수협 부실로 인한 폐단이 어업인에 전가되고 있고, 면세유 부정유출 등 일부 어업인의 모럴해저드 심각

□ 유가 급등에 취약한 산업 구조

- 자원감소에 따른 원거리 조업, 과잉경쟁에 따른 고마력화 등으로 유류 소비량이 증가하여 국제유가나 환율변화에 민감
 - 국제적 탄소 저감 압력 강화로 수산업에 어려움 예상
- 과도한 유류비와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부가가치는 제자리
 - '99년 대비 '07년도 어업 총부가가치액의 성장률은 1.0%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

《 주요 국가 동향 》

□ (일본) 자급률 향상, 어선현대화 및 어촌 활력 증진에 중점

- '07년 수산기본계획에서는 수산자원회복,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어업취업구조 확립, 신기술 개발, 어항·어장·어촌의 종합 정비,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등 6개 주요 정책과제 선정
- '17년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65%로 설정 ('05년 기준 55%)
-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 소비량을 10% 이상 감축한 어업인에 유류비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
- 노후된 어선 2척을 고효율·복지형 신조선 1척으로 대체하여 비용절감과 선원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지원

□ (중국) 수산자원 보호 및 양식·원양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양식 및 원양어업 발전을 통해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 '00년 제정한 「신 어업법」에서 TAC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하계 휴어제도, 수산자원 보호구 설정 등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모색
- 자국산 수산물 안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

□ (EU) 자원회복, 가격 안정 및 해외협력 강화 추진

- 기존 공동수산정책(CFP : Common Fisheries Policy)이 수산자원의 보호, 안정적 수산물 공급 등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CFP 개정 추진 중
- 대구, 민대구, 가자미, 랍스터 등 고갈위기 수산자원에 대한 TAC 축소 등 다년도 회복계획 강화

제3장 新 수산 비전과 전략

1.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수단	정부 규제 · 지원 ⇒ 어업인 자율 ·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정부지원은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 - 어업인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자립능력도 강화
자원관리	획일적 ⇒ 지역별 · 해역별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지역별 ·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변화관리	소극적 · 방어형 ⇒ 적극적 · 공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명태 고갈)보다는 기회(참치 출현)를 주목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 - 대중국 수입 증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추진

2. 관련 정책과의 연계

-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및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 수산업의 장기 비전 제시
 -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으로 수산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집중적 액션플랜

<표> 비전 2020과 30대 프로젝트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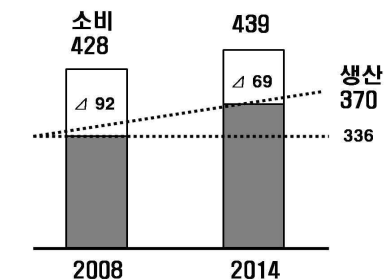
비전 2020	30대 프로젝트	제3차 진흥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의 체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구조조정 - 자원관리형 어업 · 신 성장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 바이오매스 - 친환경 어업 - 해외 수산자원 확보 · 식품산업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해양식장, 갯벌어장 - 수산물 유통인프라 개선 · 국가식품 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지역역량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리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행정 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어업관리 등 · 신 성장동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해양식, 갯벌어업 등 · 해외어업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선 신조 등 ·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활성화 등 · 어업인 · 어촌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 인력육성 등 · 수산 거버넌스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조성전문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 수산업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절감, 에너지 절감 등 · 자원관리 기반 어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등 · 친환경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양식어업, 수급조절 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산업 발전, 수출 확대 등 ·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절 체계 및 인프라 강화 등 · 어업인 · 어촌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안정망 확충, 복지 증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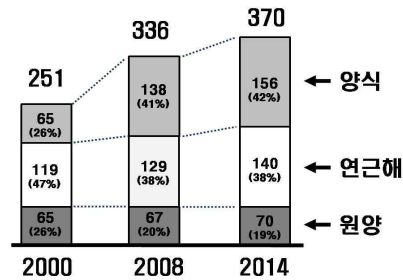
3.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목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 ('07. 생산 13위 수출 26위)
주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 (08) 336만톤 → (14) 370만톤 ■ 어가소득 : (08) 3,118만원 → (14) 3,800만원 ■ 수출액 : (08) 14.5억불 → (14) 25억불
중점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수산물 생산 목표>



<수산물 생산목표·소비 전망>



<수산업 분야별 생산 목표>

《 수산물 생산구조 개편방안 》

《 '14년 생산목표 370만톤 : 연근해 140, 양식 156, 원양 70 》

□ 연근해어업 : 129만톤('08) ⇒ 140만톤('14)

○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 24% 증대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연근해 생산량	129만톤	140만톤	8.5%	- 어업 구조조정 촉진 - 맞춤형 수산자원관리 - 자율관리어업 확산 - 유류비 등 비용 절감
연근해 어선수	57,183척	50,000척	-12.6%	
수산자원량	835만톤	900만톤	7.8%	
척당 생산량	22.5톤	28.0톤	24.4%	

□ 양식산업 : 138만톤('08) ⇒ 156만톤('14)

○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 증대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양식 생산량	138만톤	156만톤	13.0%	- 외해양식 활성화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불법양식어업 근절
양식장 면적	13.6만ha	13만ha	-4.4%	
ha당 생산량	10.1톤	12.0톤	18.8%	

□ 원양산업 : 66만톤('08) ⇒ 70만톤('14)

○ 원양 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척당 생산량 15% 증대

	2008	2014	증감률	주요정책
원양 생산량	66만톤	70만톤	6.1%	- 원양어선 신조대체 - 연안국 협력 강화 - 해외 수산투자 촉진
원양어선 척수	380척	350척	-7.9%	
척당 생산량	1,736톤	2,000톤	15.2%	

제2편



新수산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과제

제4장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정책지표

- ◆ LED 집어등 보급 : ('08) 0척 ⇒ ('13) 1,085척
- ◆ 저효율기관 대체 : ('08) 4천 마력 ⇒ ('14) 283천 마력
- ◆ 탄소 흡수 바다숲 면적 : ('08) 0 ha ⇒ ('13) 7,000ha
- ◆ 육상 종묘생산업체 가온비 : ('08) 1억원 ⇒ ('14) 3천만원
- ◆ 지하해수 보급 : ('08) 0개소 ⇒ ('14) 300개소

주요과제

- ① 저탄소 녹색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
- ②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 ③ 친환경 녹색 수산식품산업 육성

4-1. 저탄소 녹색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

1. 추진 배경

□ 연근해어업은 고연료 소비 및 고탄소 배출 어업생산 구조

- 연근해 어업은 어업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고탄소 배출 어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수산어획의 산업부문별(28개) 연료유 투입비중이 5위(한국은행 '05년 산업연관표)

-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 의무국이 될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탄소배출 규제를 받게 됨

□ 해조류가 신재생에너지용 제3세대 바이오매스로 부각

- 해조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친환경 작물
- 우리나라는 해조류 생산의 최적조건 구비로 국제경쟁에 유리
 - 3면의 리아스식 연안해역과 국토면적 2.3배의 배타적 경제수역 보유
 - 연간 70만톤의 해조류 생산력과 세계적 선두그룹의 기술력 보유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어업생산 구조를 저탄소 배출 산업구조로 재편

- 주요 어업에 대한 탄소배출 계수산정 및 저감장치 개발·보급
- 노후 어선·엔진의 개량 등을 통한 고효율 어선어업구조 정착
- CO₂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배출 어선어업 우선감축 추진

□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산업화

- '20년까지 외해에 50만ha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여 연간 22억L의 에너지원(에탄올, 알콜, 유기산 등) 생산
- 에너지 생산 후 부산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의약·화장품 및 웰빙 식품으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주요어업별 톤급·연령별 표본어선 탄소 배출량 조사

- '10년부터 주요 어업별 표본어선에 대하여 매년 5척씩(총 20척) 연차별로 배출량 조사 및 정량평가('10~'13)
- 연근해 어업 어선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저감시스템 개발('12~'15)

□ 주요 TAC, 양식어종 등의 가공·유통단계 배출량 조사

- 주요 TAC(총허용어획량) 어종 및 양식어종에 대하여 유통 단계별 탄소 배출량 조사하고, CO₂ 정량평가('12~'14)
- 총 10종의 수산가공품의 유통 및 가공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정량평가 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12~'15)

□ 고탄소 배출, 유류소모량이 많은 어업 우선감축 추진

- CO₂ 배출량이 많은 업종(대형·저인망) 또는 유류 사용량이 많은 업종 우선감축 시행

* ('09) 1,724척 → ('10) 194척 → ('11) 193척

나. 저탄소 어선개발 및 고효율 에너지 저감장치 보급

□ 에너지 절약형 어선의 개량 및 추진기 개발('11~'20)

- 연근해 어선에 대한 미래형 선형개선 및 고효율 추진장치 개발
- 노후어선의 탄소배출 기준설정, 저탄소 배출 어선엔진 개발

□ 고효율 에너지 저감장치 보급 추진

- 저효율 360천 마력의 노후기관 대체('10~'15)
- 채낚기, 선망, 봉수망 어업용 집어등 개발 및 성능개선 추진
- 저탄소 LED 집어등을 연근해어선 1,085척 보급('09~'13)

다.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산업화 기반 확충('10~'20)

□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기반구축

- 외해 속성장 해조류 종묘생산·양성기술 개발 및 품종연구
- 해조류 대량양식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평가 및 기상정보 DB구축
- 해조류바이오매스 대량생산 및 수거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해조류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부산물 산업적 이용기술 개발

-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원천기술 개발
- 원료전처리장치 및 에너지 절감 당화장치 개발
- 산업용 활성소재 개발 및 유용금속 회수기술 개발

□ 개발기술의 조기 실용화체제 구축

- 에너지 전문회사, 지자체 등 산·관·연 협력체제 구축
- 해조류바이오 에너지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3월)근해 표본어선 탄소 배출량 조사	- (11년)연안 표본어선 탄소 배출량 조사 - (12~15년)주요 TAC, 양식어종 등에 대한 탄소배출량 조사
나. 고효율 에너지 저감장치 보급	- (연중)노후기관 대체, LED 집어등 보급	- (11~20년)선형 개선, 에너지 저감 엔진 대체, LED집어등 보급
다.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산업화기반 확충	- (연중)바이오매스용 해조류 대량양식 기술 개발 - (연중)에너지화 및 통합활용 기반 연구	- (11년~)외해용 해조류 양식구조물 설치 및 제어기술 개발 - (12년~)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구축 및 기술통합

4-2.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1. 추진 배경

- 양식어업은 일반적으로 어선어업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나,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은 예외
 - 김, 바지락, 굴 등 해조류나 패류를 양식하거나 어류를 가두리에서 사육하는 경우 유류 등 에너지 소비량 적음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경우, 사육수를 취수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하고 난방을 위한 유류도 사용
- 양식어업, 특히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의 에너지 절감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양식산업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비용절감
 -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에너지 절감방안 강구

3. 세부 추진계획

가.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합 산업화

- 총 발전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여 양식함으로써 유류비를 줄이고 생산기간 단축
 - 난류성 품종인 돔, 방어, 새우, 전복, 은어 등의 양식에 적합
 - 겨울철 성장속도가 빨라져 생산비용 절감 기대

-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해면양식 품목은 신규면허 금지

- 양식어업 후보지와 대상 품종을 선정하여 경제성 평가 후 단계적인 사업 실시

나.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새우 양식 산업화

- 천연에너지원(지하해수)과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가온효과 및 경제성 분석('10년)
- 무환수 양식방식의 CO2 절감효과 분석('11년)
- 천연에너지원을 활용한 전지동 히터펌프 개발 및 절감매뉴얼 보급('12년)

다. 육상종묘생산 폐열회수장치 보급

- 우리나라 육상종묘 생산은 4계절 온대성 기후 특성으로 동절기(12월~익년 4월)에 수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
 -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여 종묘생산 어가에서 연간 약 120일 동안 1,200 드럼의 경유 또는 벙커-A를 사용하여 해수를 가온함으로써 연간 약 1억원 가온비 지출
- 종묘생산용 화석연료 사용량은 연근해어업 유류사용량의 약 24%
 - 수산종묘생산을 위한 연료 사용량은 연간 약 120만 드럼(2억 4,000만 리터)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유류사용량 약 10억 리터의 24%에 해당하는 엄청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
- 종묘생산을 위해 사용 후 바다로 배출되는 사육수는 약 18~22℃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배출수 폐열 회수기 보급 지원
 - 폐열 회수기를 사용할 경우 종묘생산 가온비를 약 70% 절감할 수 있고, 화석연료 사용 또한 대폭 감축 효과 기대

라. 육상수조식 에너지절감형 지하해수 개발 보급

- 육상양식단지 지하해수 개발 가능성 탐사(10)
- 개발 가능성이 있는 양식장 지하해수 개발(10~)
- 지하해수 양식방식의 CO₂ 절감효과 분석(12)
- 에너지 절감 매뉴얼 보급(12)

마.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

- 우리나라 연안에 많이 분포하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을 하고 이 전력을 육상 양식장 운영에 사용
- 소수력 발전 시설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연구 추진 및 실용화 방안 마련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발전소 온배수 활용	- (3~10월) 발전소 온배수 양식산업 활용방안 용역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나. 육상종묘생산 폐열회수장치 보급	- (2월) 주요 양식품종별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 - (2~3월) 육상 종묘생산 가온시설 및 폐열회수장치 효과 분석 - (4~6월) 2011년도 예산확보	- 지자체를 통해 폐열회수기 보급 및 개선방안 마련
다.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형 지하해수 개발보급	- (연중) 서해안 육상양식장 10지구 지하해수 조사 (9억원) - (12월) 사업평가회의	- 개발가능 적지를 조사하여 육상양식장 등 개발·이용방안 제시 - 연차적 사업 개소수 확대(50억원/50지구) - 화석연료 저감에 따른 CO ₂ 절감효과분석(12이후)

4-3. 친환경 녹색 수산식품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수산식품의 유통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산물 저감 필요

- 목재 및 스티로폼 어상자는 위생 및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가공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전기 등 에너지 절감 필요

2. 정책 목표와 방향

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 기반 마련 및 녹색기술 개발 유도

- 수산물 유통용기의 친환경 소재화 및 부산물 리사이클링 활성화
- 수산식품업체의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물 유통용기의 친환경 소재화 추진

- 어상자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어상자로 대체
 - 식품안전성 취약, 폐목재로 인한 쓰레기 및 환경 문제가 있는 목상자, 스티로폼 어상자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압축종이, 펄프몰드 등) 어상자로 대체
- 어상자의 재활용 및 처리 시설 확충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물 시장에 수산물 폐포장용기(나무 및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저감

나. 수산 부산물 리사이클링(recycling) 활성화 사업

- 제조·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 도모
 - 부산물의 사료화, 기능식품 개발 등 재활용을 위한 연구·시설 지원
 - 굴, 홍합 등 생산 이후 발생하는 폐각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연구 추진
 - 폐각을 이용한 인공어초 생산, 조경자재 및 농업용 자재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 * 뉴질랜드 SANFORD社は 홍합 폐각을 조경용 자재, 트레이킹용 산책로 정비, 포도농장에 뿌려 햇볕이 폐각에 반사되어 포도가 잘 익도록 하는 농업용 시설자재 용도로도 사용

다. 수산식품업체에 대한 녹색성장 지원

-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친환경 시설 도입 및 개선 지원
 - 기존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 등을 도입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지원
- * 냉동·냉장창고에서 기존보다 에너지가 효율적인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등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 (9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방안 수립	-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설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11년 이후)
다.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 시설 지원	- (4월)친환경 수산물 가공시설 도입 및 개선 희망업체 현황 파악	- 탄소발생이 많은 가공 시설부터 연차적 지원 - (12년 이후) 친환경시설 도입 및 개선에 따른 CO ₂ 절감효과 분석

제5장 자원관리에 기반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정책지표

- ◆ 연근해어선 척수 : ('08) 57,183척 ⇒ ('14) 50,000척
- ◆ 연근해어업 생산량 : ('08) 129만톤 ⇒ ('14) 140만톤
- ◆ 수산자원량 : ('08) 835만톤 ⇒ ('14) 900만톤
- ◆ 자율관리 참여공동체 수 : ('08) 659개 ⇒ ('14) 1,400개
- ◆ 연안 바다목장 개소 : ('08) 9개 ⇒ ('20) 50개
- ◆ 어업지도선 척수 : ('08) 33척 ⇒ ('14) 38척

주요과제

- ①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
- ②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 ③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 ④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 ⑤ 기후변화 등 어업환경 변화 대응
- ⑥ 어장환경 관리 강화
- ⑦ 선진어업질서 구축 및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 ⑧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5-1.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연안어업관리

1. 추진 배경

□ 지역별로 수산자원이 다양하고 어업종류와 발달정도 상이

- EEZ 체제 확립에 따라 축소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이용을 둘러싼 지역 내 어업갈등 심화
- 현행 어업관리제도는 해역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전국을 일률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

□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어업관리 역할 분담, 지자체 주도의 어업자치 실현

- 중앙정부는 기본적 어업관리 방향 및 제도 마련, 지자체는 지역 실정과 해역 특성에 맞는 세부 어업관리체제 마련
- 지자체의 어업관리 및 어업조정 기능 강화로 인한 지역별 특색 있는 어업발전 실현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체제 구축

- 지자체·어업인 주도의 상향식(Bottom Up) 어업관리 정착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어업관리체제로 개편

- 중앙정부의 일률적 자원관리에서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중심의 어업관리 지향

□ 지자체와 지역 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어업관리 추진

- 지역별·해역별 어업문제는 지자체 해결 원칙으로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자체의 연안어업 관리기능 강화

□ 지역실정과 능력에 따른 어업관리 범위 설정 및 권한 부여

- 지자체 연안어업 관리기능 관리 방향 검토('10)
 - 연안어업 관리기능 문제점 및 효율적 관리 방향 확정
-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자원남획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자원총량제 등) 마련

□ 지자체 연안어업의 자율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지자체 연안어업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규정 마련('10)
 - 연안어업은 시·도 단위, 구획어업은 시·군·구 단위로 어업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참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해역별 통일성이 필요할 경우 공동 조례 제정 추진

나. 어업인 자율협약에 의한 어업관리

□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어업인 중심으로 전환 유도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자율협약의 제도적 실효성 제고

□ 어업인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 기존의 공적 관리와 연계를 통한 자원관리 효과 유도
 - TAC, 수산자원회복계획, 자율관리어업 등의 자원관리 수단에 어업인 자율협약과 연계함으로써 자원관리 효과 증대

□ 어업인 자율협약의 확산을 위한 지침서 개발('10)

- 어업종류별 어업인 자율협약 지침 개발
 - 연안어업, 근해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등으로 다양화

다.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어업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 강화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 확정('10)

□ 동해, 서해, 남해 3개 해역수산조정위원회 신설

- 해역수산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11), 위원회 설치('12)
- 위원회의 조정 권한 강화 및 상설 사무국 설치

라. 연안수역 Green Zone 제도 도입

□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연안에 친환경 어업관리 목적의 "Green Zone" 도입

- 연안 산란장, 성육장에 Green Zone을 설정하여 낚시 등 어종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업만 허용

□ 동·서·남해 Green Zone 후보지 조사 및 선정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Green Zone 후보지 과학조사 및 이용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Green Zone 선정
- 연안수역 Green Zone 에 대한 해역별 이용관리 계획수립 및 DB 구축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지자체의 연안어업 관리기능 강화	- (6월) 연안어업관리 표준지침 마련	- ('11년) 연안어업관리를 위한 수산관련 법령 개정
나. 어업인 자율협약에 의한 어업관리	- (3월) 자율협약 지침 개발	- ('11년) 자율협약 관련 규정 보완
다.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 (6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기능강화	- ('11년) 해역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정비 - ('12년) 해역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라. 연안수역 Green Zone 제도 도입	- (6월) 연안수역 그린존 후보지 선정(3개소)	- ('11년) 연안수역 Green Zone 에 대한 해역별 이용관리 계획수립 - ('12년) 해역별 DB구축

5-2.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1. 추진 배경

□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 확대 및 정착단계 진입

-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불법어업 단속 등)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가 있어 '01년부터 제도 도입
- 자율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반조성 단계와 확산·심화단계를 거쳐서 2012년부터 정착단계에 진입 예정
 - 자율관리어업 도입 이후 참여 공동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4) 174 → '09) 758 (약 12배 증가)
 - 참여어업인 : '01) 5천명 → '04) 15 → '09) 56 (약 12배 증가)

□ 어촌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육성 필요

- 전국 1,978개('08) 어촌계 중 약 38%만 자율관리어업에 참여
- 공동체 지도자 고령화로 지도력 약화 및 미래에 대한 투자 기피
 - 공동체 지도자중 60세 이상이 33%(50세 이상은 약 80%)
- 자율관리 어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어촌사회 변화를 주도할 중심세력으로 육성 필요
- 자율관리 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적인 영역에 확산 적용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TAC 자원관리, 불법양식어장 정비 등

2. 정책 목표와 방향

- 자율관리 어업을 어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자원 관리 효과 제고 및 소득증대 도모
 -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 어촌계 정착 및 광역화
 - 참여공동체는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자원관리 의식 확산 등 어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육성
 - 자율관리 방식을 수산정책의 전반적인 영역에 확산 적용

3. 세부 추진계획

가. 참여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 2014년도 까지 참여 공동체를 1400개소까지 확대

- 어업인 및 관계자의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미참여 공동체 참여를 유도
 - * 참여공동체 : ('10) 840 개소 → ('12) 1,200 → ('14) 1,400
- 공동체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차등 지원으로 공동체간 경쟁 유도
- 우수공동체 지도자는 수산선진국 해외 연수 및 정부포상
-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역은 복합어업 공동체로 통합 유도
 - 마을어업만 운영하는 공동체는 마을어업 공동체로 존속
 - 지역특성과 어장여건 등을 고려, 어선어업공동체는 광역화 유도

□ 지역별·유형별로 시범 성공모델 육성

- 어장여건,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해역별·유형별 1~2개소 선정
- 시범모델 공동체는 현장 견학 및 성공노하우 전수의 場으로 활용

나. 참여공동체에 대한 관리 강화

□ 공동체 자율규약의 자원관리 기준 강화

- 채포금지 채장은 수산자원보호령 보다 5% 이상 확대
- 채포금지 기간은 수산자원보호령 보다 1~3개월 연장
 - 동 보호령에 정해지지 않은 어종은 과학원의 의견을 들어 별도 설정
 - * 수산사무소 또는 시·군에서는 공동체의 자원관리 활동 내용을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 공동체 어장 및 회관 앞 등에 자원관리 활동 안내판 설치
 - 어장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

□ 수산과학원을 통해 주요 관리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

- 공동체는 과학원에서 제시한 대상어종의 합리적 관리방안(금어기, 채포금지채장 설정 등)을 자율관리규약에 반영, 실천

□ 성숙한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 “졸업제” 실시

- 4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졸업
 - 성장기반이 마련된 공동체를 정부지원에서 졸업시킴으로써 조기 자립정착을 유도
- 가공,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한 “마을어업회사”로 전환 추진

□ 전국 공동체가 동시에 방류행사 등 실시로 자원관리 붐 조성

- 어업인의 날 등을 기해 전국 공동체가 동시에 방류행사, 바다 쓰레기 청소, 침적어구 수거 등 행사 개최

□ 어업간 갈등은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

- 갈등·분쟁사례의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 수협 및 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분쟁사례를 적극 발굴·조정
 - 조정이 완료된 과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또는 추가조정 실시
- 효율적인 분쟁 조정방안 강구
 - 과제별로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연도내 해결을 목표를 추진
 - 미해결 과제는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로 이관, 계속 조정 추진

다.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어촌사회 선도 중심체로 육성

□ 참여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강화

- 광역단위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체 지도자의 리더십 함양
- 미참여 공동체 지도자 및 수협 담당자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이해 증진 교육 확대 실시

□ 민간컨설턴트 및 명예홍보위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실시

- 민간컨설턴트를 지역담당제로 지정하여 지역 여건 및 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신규공동체는 우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기정착 유도

- 명예홍보위원(성공한 공동체지도자)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노하우, 성공사례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 대어업인·대국민 홍보 강화

-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공로자 포상 추진
-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확산 붐 조성
 - 지역단위 워크숍 시 예선, 전국대회 시 본선 실시
 - 입상자는 정부 포상, 소속공동체는 차년도 육성사업비 특별 추가 지원
-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는 우수 사례집과 영상홍보물로 제작·배포
- 자율관리어업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여 공동체간 정보 공유

라. 수산정책 전반적인 영역에 자율관리 방식 적용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율적 참여 추진

-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해오면 이를 평가(폐업지원금 등)하여 지자체와 협의 지원 등

□ TAC 관리를 관련 업종 및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자율적으로 관리(금어기, 그물코 크기 등)하고 있는 업종·단체는 할당량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 불법양식어장 정비를 품목별 자율협의회를 통해 추진

- 김·전복 양식 등 생산단체-지자체, 지자체-정부간 MOU를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비목표를 세워 실천

□ 자율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해 친환경 양식 활성화

- 양식 품목별로 단체를 구성하고, 무기산·항생제·밀식 등 추방 결의대회 개최와 실천운동 전개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월)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 통보	- ('14) 참여공동체 1400개소로 확대
나. 공동체 활성화	- (2~9월) 광역단위 워크숍 개최(6회) - (4~6월) 수산선진국 해외연수 실시(2회) - (10~12월) 우수공동체 홍보영상물 및 지정, 사례집 제작·배포 - (11월) 제7회 전국대회 실시 및 유공자 표창 - (연중) 민간컨설턴트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실시	계속 추진
다. 분쟁조정	- 자율조정협의회 총괄협의회 개최(2회) - 분쟁과제별 분과협의회 개최(수시)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수시)	계속 추진

5-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1. 추진 배경

□ '94년부터 어선세력을 줄이기 위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

○ '09년까지 14,356억원 투입, 연근해어선 15,399척 감척

* 연안 12,890척, 근해 2,509척

○ 현재 감척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참여 저조

- '08년 하반기 유가 급락에 따른 어업인의 사업포기, 추경예산 확정 지연('08. 9월) 등에 따라 실집행률 부진

□ 현재 자원수준에 비해 어획강도(어선척수, 단위노력 어획량) 과도

○ 연근해 어선척수는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 과도

○ 어린고기 등 비상품성 어종의 포획비율이 증가하고, 유류비 등 어업생산 비용은 증가로 인해 어업경쟁력 약화

* 연구용역('05 연안, '07 근해) 결과 연안 15,330척, 근해 1,280척 추가 감척 필요

□ WTO/DDA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경쟁력 취약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큼

○ 지구온난화 및 포스트 교토체제의 환경 규제 강화

-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우리나라가 2013년 제2차 포스트 교토체제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어선어업, 특히 인망류(트롤, 저인망)는 유류소비량이 많아 탄소감축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정책 목표와 방향

□ 「어업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 의무감척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명문화 하고, 인센티브와 부담 병행을 통해 실행력 확보

○ 저탄소 복지형 표준어선 신조 대체 지원

□ 경쟁력 있는 연근해어업으로 재편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차별화된 정책 목표 설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이 있는 근해어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TAC(총허용어획량) 및 ITQ(개별양도성 어획량) 제도와 연계

□ 예방적 접근법에 기초한 적정 어획노력량 유지

○ 어선세력을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하게 줄여 어업자원의 회복과 어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어업의 불확실성 및 WTO/DDA 협상결과 등을 고려하는 예방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적정 어선 감척 수 결정

□ 에너지 절감형 어선 선진화

○ 에너지 소모,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에 대한 어선 선진화 촉진

○ 선단 축소, 거주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절감형 어선 개발보급

□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 허가만 보유하고 실제 조업하지 않는 등 유히허가로 인한 수산 행정 혼란을 미연에 방지

3. 세부 추진계획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체계 개편 및 어선 감척

□ 어업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구 분	현 재	미 래
구조조정 주체	정 부	민간 자율
구조조정 방식	감척 위주 일률적·직접적	다양한 방식 도입 간접적 방식 도입
구조조정 대상	어선·선주 중심	실직 어선원 포함

- 어업 구조조정을 시장자율적인 수산 자원관리를 위한 TAC 및 ITQ 제도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 연근해 어선감척 활성화(어업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 근해어선 감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의무감척 필요성이 있는 업종 선정
 - 어업협정 이행, 불법어업 우려 업종
- 자원남획이 큰 근해어선 위주 감척 추진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WTO/DDA 협상에 의한 보조금 폐지 및 FTA 체결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위주 감척 추진
- 상시 구조조정을 제도화 하는 방안 도입
 - 상시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을 '수산자원관리 전담기구' 설립과 연계하여 검토

나. 어선선진화 추진

□ 현대적 어선개발·보급으로 고유가 등 새로운 조업환경에 적응

-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제형, 조업 편의형, 복지형·친환경어선 기술개발 추진

□ 국제노동기구(ILO) 어선노동협약에 맞게 어선구조 개편 추진

- ILO 기준이 적용되는 24미터 이상 어선에 대해 선원 거주 공간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필요
- 어선의 거주구역내 천정높이, 오락실 등 주요 시설기준 마련

다.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법령개정안 검토 추진

- 일괄적으로 어업허가증을 재발급하는 새로운 절차의 제도적 틀 마련

□ 무조업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 어업허가증 소지가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ID허가증으로 교체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작성·시행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연근해 구조조정	- (2월) 근해어선 감척 추진 - (12월)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	- (11년)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12년) 연근해특별감척, 자율감척 실시
나. 어선선진화	- (12월) 거주환경개선, 자원절약형 경제성 선진화 어선 1종 개발	- 어업별 경제성 선진화 어선 개발보급(11년) - 선진화 어선건조 지원(11년)
다.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 (4월) 정기적 어업허가 정비 관계법령 개정 - (5월) 어업허가일제정비 실시요령 작성	- (11년) 무조업선 일제 정비 소요예산 확보 - (11년)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검토

5-4. 수산자원관리체계 고도화

1. 추진 배경

□ 국내 연근해어장 축소 및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

-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외연어장의 대폭 축소로 우리 어장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조성 필요성 증대

* 어장면적 : 943천km² → 375천km²(△ 568천km², △ 60%)

- 어업자원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남획, 연안환경 오염 등으로 '80년대에 비해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 자원량 : ('80) 1,000만톤 → ('04) 790만톤 → ('08) 835만톤

* 어획량 : ('80) 137만톤 → ('04) 108만톤 → ('08) 129만톤

-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의 자원관리제도로는 남획 방지에 한계
- 선점 어획을 위하여 비규제 대상인 어선마력 등 어획노력량을 집중적으로 증대하는 고비용 구조 고착화

□ 기술적 규제만으로는 경제적 이익 달성 불가능

- 포획·채취금지 및 허가제도의 전통적 어업관리 틀을 기반으로 TAC 제도를 활용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 TAC 제도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임
-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관리형 시스템 도입 필요

□ 어기(漁期) 내 자원관리가 가능한 승선 읍서버 도입

- 양륙항 읍서버를 통한 어획량 파악의 수준을 넘어 상업어선의 실시간 어획상황 집계와 조업현장의 생물자료를 확보하는 과학적 읍서버로 탈바꿈 필요

□ 어업자에게 할당 배분된 어획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매 임대 할 수 있는 어업자원관리 수단 필요

- 개별 어업자들에게 어업자원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발적 어업행위 유인 필요

□ 수산자원에 관한 개별 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필요

- '15년까지 생태계 보유가능 최적 수산자원 1,000만톤 및 어획량 1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 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 사업 등 자원회복사업과 연관된 사업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향후 TAC 제도가 정착되면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하는 시장 지향적 어업자원관리제도(ITQ)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필요

- 수산자원이 지니고 있는 공유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어업자원 지대(Resource rent) 소멸, 자원 고갈, 사회적 비용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정책목표 및 방향

□ 정책 목표

- 승선 읍서버 도입으로 실시간 자원관리 실현
- TAC제도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고갈된 자원을 수산자원회복 계획을 통해 회복시키므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영위
- ITQ 제도 도입을 통한 조업경쟁 완화, 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추진 및 자원회복 목표 조기 달성

□ 추진 방향

- 어업자원 관리를 입구관리에서 출구관리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하여 ITQ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단계별 도입방안 마련
- 자원고갈 위험이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남획상태에 있는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및 자원조성 확대 추진
 - 2015년까지 자원량 1,000 만톤, 어획량 130 만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회복과 연계한 사업 추진
- 과학적 조사 및 평가에 근거하여 '15년까지 총 40개 어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회복방안 마련 시행

3. 세부 추진계획

가. TAC제도 확대 및 승선 읍서버 도입

□ TAC 제도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어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혼획율과 자원고갈의 위험이 높은 어종을 집중관리
 - 이를 위해 TAC 대상어종을 어업생산비중이 높은 15개 어종으로 확대
- 양륙항 읍서버 확충 및 지정판매제도 강화, 승선 읍서버제도 도입 등 어획량 감시감독기능을 강화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수산자원관리법(2010.4월 시행)」에 승선 읍서버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장기적으로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 방식을 어종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는 총허용 어획량만을 관리
-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의 공동이용 어종에 대하여는 한·중·일 공동자원 평가 조사 방안 모색

□ TAC제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전략

- 제1단계로는 TAC제도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이 단계에서는 2011년부터 2년 간 승선 읍서버 운영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
 -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TAC 어종을 확대하고, 자원수준에 적합한 대폭적인 어선감척 추진과 업계 대상 홍보·교육 및 협의
- 제2단계는 시범사업
 - TAC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2013년부터 현재 실시하는 일부 어종·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모색
 - 시범사업 실시 후에는 평가 및 TAC제도 시행계획 수립

- 제3단계는 TAC제도 단계별 확대
 - 2014년부터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 어종 확대와 함께 업종을 확대 추진
 - TAC 대상어종 확대(15개) 시점인 2015년 부터 근해어업에 대한 TAC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나. ITQ제도 단계적 도입

□ ITQ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3단계 추진 전략

- 제1단계로는 ITQ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 2010년부터 약 5년간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TAC 어종을 확대하고, 자원수준에 적합한 대폭적인 어선감척 추진과 업계 대상 홍보·교육 및 협의
- 제2단계는 시범사업
 - ITQ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현재 TAC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어종·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실시 후에는 평가 및 ITQ제도 시행계획을 수립
- 제3단계는 ITQ제도 단계별 확대
 - 2015년부터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 어종 확대와 함께 어종 및 업종을 확대 추진
 - TAC 확대 시점인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근해어업에 대해 ITQ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 추진

다. 고갈위험 자원회복 확대 추진

□ 자원조성 사업 확대 및 통합적 추진 시스템 구축

- 바다목장 사업, 인공어초 시설,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화
- 인공어초 4.4천ha 시설 및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치어 등) 1억마리 방류('10년 사업비 558억원/ 인공어초 386 종묘방류 172)
 -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토착성 고급어종 및 생태계 조화를 감안한 어종 방류 확대
 - * 붉은 썸팽이(여수), 강도다리·쥐노래미(울진), 쥐노래미(태안), 다금바리(제주)
- 대규모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10년, 250ha, 150억원)
 - 갯녹음 등 연안생태계 회복 → 어류 산란·서식장 조성 → CO₂ 저감

□ 한·중·일 공동이용 어종관리를 위한 3국 수산자원관리 협의기구 설립

- 3국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종에 대하여 공동자원관리 추진
- 한·중·일 3국 외 향후 동아시아 지역 국제 수산기구로 발전 추진

라. 해역별 지역별 바다목장 특화사업 확대

□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시범 바다목장 사업 추진 및 완료

- 현재 추진중인 시범 바다목장인 어로형(여수), 갯벌형(태안), 관광형(울진), 체험관광형(제주)은 2012년까지 완공
 - 울진 바다목장은 유어 및 관광형으로 개발 추진

- 태안 바다목장은 잘 발달된 갯벌을 활용하여 생태체험장을 포함하는 갯벌형으로 개발 추진
- 제주 바다목장은 어패류자원조성과 함께 체험관광형으로 개발 추진

□ **맞춤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 추진 및 확대**

- 각 해역별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연안 바다목장 유형화 개발
- 시범바다목장 사업이 종료되는 '12년까지 연안 바다목장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
- '20년까지 전국 50개소 연안 바다목장 조성

□ **연안 바다목장 메뉴얼을 개발하고 바다목장 사업 지침 개정**

- 맞춤형 바다목장 테마 및 모델 개발
- 수산자원조성사업간 연계 추진을 위해 연안 바다목장 사업 지침 개정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TAC 제도확대 및 승선읍서버 도입	- (8월) 승선 읍서버 운영 방안 협의 - (4월)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 승선 읍서버운영 제도 도입 - ('15) 근해어업 TAC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나. ITQ제도 단계적 도입		- ('15) ITQ 제도 도입 시범사업
다. 고갈위험 자원회복 확대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추진(연중)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추진
라. 바다목장 특화사업 확대	- 바다목장 21개소조성(연중)	- ('20) 바다목장 50개소 조성

5-5. 기후변화 등 어업환경 변화 대응

1. 추진 배경

□ **산업혁명 이후 CO₂ 증가로 지난 100년간(1906~2005) 지구 평균 기온이 0.74℃ 상승**

- 최근 40년간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표층 수온은 1.3℃ 상승하고, 수산자원이 매년 4~4.5km 속도로 북상
- 멸치 등 난류성 소형어류의 어획비율이 증가(70년대 40% → 90년대 중반 60%)하고, 명태 등 난류성 저어류의 어획량 감소
- * 참다랑어 : ('03) 84톤 → ('08) 1,536톤 / 명태 : ('81) 166천톤 → ('08) 0

□ **어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어업관리 방안 미흡**

- 어업환경 변화에 따라 어구·어법의 개량·변형 사례 증가
- * 서해안(연안선망의 기선권현망식 조업, 근해안강망 2중낭망 사용), 남해안(변형보강줄 자망, 연안양조망·들망의 저인망식조업), 동해안(연안자망의 저인망·선망식 조업)
- 기후변화, 어장환경, 어종 및 어구·어법 변화를 반영한 어장 및 수산자원관리 시스템 부재
- 연근해 어구·어법(46개 업종)에 대한 표준기준을 제정중에 있으며, 기준의 경직적 운영 방지를 위한 발전적 대안마련 필요
- 체계적 자원관리를 위한 조사·평가 체제가 미흡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어업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지연
- * 전체 어획고 대비 어업부문 조사연구비용은 0.1~0.2%에 불과(OECD 평균 약 1.5%)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기후변화 대응, 어업자 자율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

- 해양·어장환경, 자원변동을 고려한 새로운 연근해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와 어업실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업종별 그물코의 규격, 어구사용금지 구역 및 금지기간 재조정 추진

□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개발 보급 추진

- 표준 어구·어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 마련
- 어린고기 및 기타어류 혼획 방지 등 자원관리형 어구 개발·보급
-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보급

□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된 수산자원조성 시스템 구성

- 어장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변동 예측능력 강화
- 수산자원 회복을 전담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원체계 마련

3. 세부추진계획

가.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 새로운 연근해 어장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어장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변동 예측 능력 강화
- 기후 변화에 어업실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업종별 그물코 규격, 어구 사용금지 구역 및 금지기간 재조정

□ 어업자 자율 자원관리형 어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규제완화

- 예상탁월 어종 및 신규 출현어종 등에 대한 과학적 환경 관측·예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 한시어업 허가” 추진(‘10년)
- 자율관리, TAC 등 자율자원관리형 어업을 어업자 합의에 따라 실현하는 경우, 어업현장의 어구·어법 변화 적극 반영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마련(‘10년)

나. 어구 인증제 도입

□ 어구·어법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어업갈등 방지

-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 기준 제정(‘10.4월, 시행 ‘11년 상반기)
-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에 대한 경직적 운영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해석지침 마련(‘10년 상반기)

□ 자원관리형·친환경 어구 사용 활성화

- 어린고기, 혼획어류를 저감할 수 있는 자원관리형 어구의 개발·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증제·인센티브 도입(‘10)
- 어업허가장 발부 시 “인증 어구설계도” 부착 제도화 추진
-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인증 및 사용 활성화 추진(‘10)
-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어업자 부담 완화(20%)

다. 수산자원관리 전담기구 설치

□ 수산과학원 일부기능 전문법인 이관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조성 및 사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를 전담할 전문법인 설립 필요

□ 전문법인 법적근거 마련 및 법인 출범

- 「수산업법」상 “기르는 어업센터”를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가칭)”으로 개정 추진
-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 전담
- '10년 9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 (4~6월) 한시어업 허가 시범사업 추진 - (6~8월) 어장관리 예측 시범사업 추진 - (8~9월) 기후변화 대응 규제완화 방안 마련	- (11년) 한시어업 허가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단계적 추진(11년) - 새로운 어장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11~15년)
나. 어구 인증제 도입	- (2~3월) 어구 인증제 법제화 연구용역 추진 - (5~6월) 어구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 (10~12월) 표준어구·어법 해석 지침 마련	- (11년 상반기) 표준 어구·어법 기준 시행 - (11년)어구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 (11년)자원관리형, 친환경 어구 인증제 단계적 도입
라. 수산자원관리 전담기구 설치	- (2월) 임시국회 상정 - (3~8월)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 (9월) 전문법인 출범	- (11년) 수산자원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5-6. 어장환경 관리 강화

1. 추진 배경

□ 육상기인 및 어장 자가오염원 유입증가로 어장환경 악화

- 연안어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어장생산성 감소
- 어업인 어장관리 의무이행 미흡 및 형식적인 어장청소 실시

□ 연안오염으로 어장 생태계 악화

- 육상기인 및 자가 오염, 해상투기, 기름유출 등 연안오염 심화
- 과도어획, 폐어구, 해사채취 등으로 자원감소 및 서식지 파괴

□ 양식어장 장기간 연작에 따라 병해 빈발 및 생산성 저하

- 양식장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이 대량으로 어장바닥에 퇴적
- 어장퇴적물 분해로 빈산소수괴, 적조 및 어병 등 재해 발생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정책 목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장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장 환경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실현

□ 추진 방향

- 어장환경 관리체계 개선으로 어장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 어장환경조사를 통한 해역별 'ZONE'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으로 장기 연작으로 악화된 어장환경 복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가. 어장환경 관리체계 개선

□ 어장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

- 주요 양식품종 등에 대한 어장환경실태 조사 실시
 - 동·서·남해, 제주연안 수질·저서환경, 양식생물 먹이량 등 조사
 - 해역별, 주요 품종별로 어장수용력 산정을 통한 적정 생산량 규명
 - * 남해안 해역('08~'10), 서해안 해역('11), 동해안·제주 해역('12)
- 어장환경조사를 바탕으로 해역별, 지역별로 적절한 어장환경 개선·보전 대책 수립 추진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및 어장정화사업 실시

- 어장환경조사 결과 및 어업여건·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면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 후 어장정화사업 등 실시
 - 어장관리해역 지정하여 '어장관리해역 어장 정화사업' 실시
 - 해상가두리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실시
 -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휴식 등 실시

□ 어장환경 관리체계 개선

- 연안의 주요어장에 대한 어장환경 관측망 운영
 - 어장관리해역, 어장밀집, 어업재해 빈발 등 주요어장 실시간 어장 환경 관측망 운영
- 어장환경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 사업 평가 실시

- 어장정화사업의 적정한 시행여부 점검 및 사업 효과조사 실시
-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어구, 양식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계도
- 폐어구 및 시설물을 보관·처리할 수 있는 장소 설치·운영

나. 연근해 어장 환경개선사업

□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 실시

- 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사업
 - 분해가 안 되는 기존 나일론그물 등 해양폐기물 발생, 인공어초 기능 저하,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
 - *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어획량의 10%로 추정(2,048억/년)
- 환경친화적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
 - 양식어장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연차적으로 규격제품으로 교체 지원(총 23백만 개)
- 굴 패각 친환경 자원화 처리지원
 - 굴 양식 과정에 대량 발생하는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 원료) 하는 처리비 지원(연간 약 14만톤)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 환경개선사업 실시

- 연근해 바다(어선어장)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
 - 어선어업 어장 폐어망·유실어구 등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어업과정에 발생한 어촌 해안쓰레기 등 수거·처리
- 낚시터 환경개선을 통한 환경·생태계 보전
 - 낚시터 쓰레기(납추 등) 수거·처리
 - 환경오염방지 시설(친환경 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설치 지원

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

□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한 어장 휴식년제 도입

- 어장환경 개선 및 생산성 회복을 위해 어장환경 관리해역 양식 어장에 대한 어장 휴식제 도입
 - 사전 연구용역 실시('09~'10), 어장관리해역 지정('10) 및 어장휴식년제 사업 실시('11 이후)
 - 어장휴식기간 중 어장환경조사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우선 실시

□ 양식어장휴식 직불제사업 시범실시

- 양식어장 휴식에 의해 어업이 중단된 어업인에 대한 직불제 지원 사업 시범 실시
 - 기본자료 축적 및 시행착오 최소화 및 어장휴식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모색('10~'11)
 - 어장휴식 해역별, 품종별 휴식 및 직불제 지원 기준 마련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어장환경 관리체계 개선	- (2월) 남해안 어장 환경 실태조사 - (1월)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수립 - (6월) 어장관리해역 지정	- ('11) 서해해역 조사 - ('12) 동해해역 조사 - ('13) 어장환경 정보도 작성
나. 연근해어장 환경개선사업	- (1월) 사업 시행지침 수립 - (12월) 사업점검 평가	- (계속) 사업비 지원
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 (4월) 양식어장휴식년제 실시방안 연구	- ('12) 시범사업 실시

5-7. 선진어업질서 구축 및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1. 추진 배경

□ 국내외 어업질서 및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 어장확보 및 이용경쟁 심화, 불법어업 및 조업갈등 양상 다양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어업관리와 조업활동 지원 등 대어업인 서비스 기능의 개선 필요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 필요

-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한·일간에는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불법조업 개선 미흡
 - 일본은 자국 EEZ내 수산자원 보호와 한일 양국어선간 조업마찰을 이유로 우리어선에 조업규제 강화
 - 중국어선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EEZ내 위반조업 지속

□ 북한 서해 NLL 불인정 등 접경수역 안전조업 지도강화 필요

- 북한군 성명('09.1)을 통해 서해 NLL 불인정, 북측 해상군사 분계선만 인정('09.7), 서해상 항행금지구역 일방 선포('10.1)

□ 해양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원인별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정비불량 등 기관고장으로 표류, 견시 소홀로 선박간 충돌사고 등 운항 부주의가 사고의 대부분 차지

* 기관사고, 인평피해 수반 충돌·침몰 등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증가 추세

2. 정책 목표 및 방향

□ 대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율어업질서 확립 토대 마련

- 단속 중심에서 대 어업인 지도·단속 서비스 기능 확대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해역별 관리체제 개편
- 관계기관과의 협조강화 및 외국어선 관리 강화
-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3. 세부 추진계획

□ 어업 지도단속을 어업관리 등과 연계하여 정책효율 제고

-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 어구개조, 치어·미성어 포획 등 자원남획형 어업 중점 단속
 - 어장피해 등 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난폭형 어업 중점 단속
 - * 해상위주의 1차원적 단속 한계를 보완, 육상단속 전담반 구성 등 입체적 단속 시스템 구축
- 대 어업인 홍보, 수산자원 명예감시선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를 유도하고 어업인과 파트너십 강화

□ 동·서·남해 해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대 국민 서비스 중심의 어업지도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 지도단속 조직을 동·서·남해 3개 해역별 관리체제로 확대개편
 - 행정효율, 인원·시설수요 충족 여건, 업무공백 최소화, 조직의 미래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개편 방안 마련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

-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방지대책 마련 촉구
 - 한·중간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단속기관 방문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협력 유도
- 일본 EEZ 조업어선에 대한 행정지도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업협정 위반 예방 및 일본의 과잉 단속에 적극 대응

□ 접경수역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월선피랍 예방 강화

- 접경어장 어로보호를 위한 지도선 배치 및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등 접경지역 어업인의 조업질서 유지
- 특정해역 등 접경수역 출어 어선에 대해 선단 조업과 위치 보고 확행 지도 등 월선피랍 예방활동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어업인 준법 교육과 홍보 강화

- 어업여건 변화 및 어업현실에 맞도록 수산관계법령 및 행정처분규정 개선
 - 「수산자원관리법」 등 제·개정 법령상의 벌칙 및 상하위 법령간 벌칙기준의 형평성, 위반행위 관련 처벌기준의 적정성 등 검토
- 불법어업 홍보예산을 활용, '신고포상제도' 적극 홍보
- 불법 어업인에 대한 준법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별, 어업별 불법어업에 대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불법 어업단속 및 예방에 활용토록 지자체, 수협 등에 제공

- 불법어업 예방 참여 확대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 TV 등을 통한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 실시
 - * KBS 등 지상파 방송, KTV, 수협 자체방송 등에 방영
 - 소비자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예방 캠페인 추진
- 명예감시선의 역할을 재정립(어업인 참여 및 상징성 강화)
 - 명예감시선 내실화를 통해 어업인 중심 불법어업 예방체제 운영
- 지도·단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 교육실시
 - 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실시, 투명 행정체제 보완
 - 단속 현장에서 불법어구와 합법어구를 신속·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어구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

□ **해난사고 예방 등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대책 추진**

-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교육 및 홍보 강화
 - 해난사고 발생원인 분석자료, 유형별 주요 사고사례, 출항 전 자체점검 생활화 및 안전업무 전문가 특강
- 연근해 출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활동 보호
 - 연근해 주요어장(접적해역, 특정해역 등)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출어선에 대한 지도, 관리강화
 -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기상특보 방송 강화 및 안전대피 지도

□ **위성 등 첨단 어업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 해경 등 관련기관간 어업지도단속 정보공유 및 연계방안 마련
-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관리체계 확립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지도단속 체제 개편	- (6월)지도단속체제개편 계획 수립	- (14년)업무구역 재편 및 지도선 재배치
나.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출입항신고제도개선 - (1월) 접경수역어장 확장 - (3월)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수립 - (3월) 어업질서 확립 대책회의 개최 - (3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 (3월, 8월)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 수립 - (6월) 전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 워크숍 개최 - (5월, 10월)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 (10~11월) 한·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 (12월)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 (연중) 안전조업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수립 -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 수립 -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 어업질서확립 대책회의 - 전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 워크숍 개최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 한·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 (연중)안전조업지도
다. 어업지도선 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척 완공 : 150톤급 2척 (4월), 499톤 1척(9월) - (7월)1척 착공(1,000톤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노후선(5척) 대체 - ('14까지)신규(4척)확충

5-8.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주변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질서체제 확립

- UN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한·중·일 3국은 EEZ 내 상호입어를 근간으로 하는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10여년이 경과
 - 각국 EEZ는 영토문제 등으로 완전히 분할되지 않고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 등이 설정된 불완전한 상태
- * UN 해양법협약 발효('94), 한국·중국·일본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EEZ 설정('96~'98), 어업협정 발효 : 한·일('99), 중·일('00), 한·중('01)

□ 동북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협력체제 구축

- 한·중·일 3국은 공동 조업수역 존재 및 각국 EEZ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 등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수산자원을 공동 이용·관리하기 위한 어업협력 필요
 - 각국은 EEZ의 상호입어와 어업질서 등에 있어 상대국 어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공동어업협력에 대해 서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없음

□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통한 수산분야 협력 증진

- 2007 정상선언, 남북총리회담, 남북수산협력분과위 등에서 수산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 중단
 -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기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의 이행준비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동북아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체제 구축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과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관리 방향 마련
 - 한·일간 우리 어업의 일본 EEZ의 안정적 입어확보, 한·중간 우리 EEZ의 중국어업 규모 축소
 -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방향 및 구체적 대안 마련
 - 동북아 수역의 국제수산기구 설립

□ 남북한 수산협력 추진으로 공동이익 증진 및 해상 긴장 완화

- 남북 당국 간 기 합의사항 중 실현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

3. 세부 추진계획

가.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한·일 EEZ 상호입어에서 한국 어업의 입어규모 축소 대책 마련
 - 할당량 소진을 제고 및 조업질서 확보를 통한 양국 신뢰관계 구축
 - 입어규제 업종에 대한 감척사업 확대, 위반어선에 대한 할당량 최소화 및 민간협력 강화

□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한·중 EEZ 상호입어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 감축 추진
 - 한·중 양국 간 입어규모 등량·등척 추진, 어종별·업종별 할당량 도입 및 확대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강화 및 중국 EEZ 국내업종 조업 장려

나. 중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체계 구축

□ 한·일 중간수역에서 자원관리체계 구축

- 한·일 민간어업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국 어선 간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방안 모색
 - 동해 중간수역의 한·일 민간협력은 대상 자원과 업종이 단순하고 대게 및 붉은대게 어장 청소를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등 어업협력 실현 가능성 높음
- 중·일 현행 조업유지수역과 겹치는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자원관리체계 구축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자원관리체계 구축

- 양국 정부 협의 시 동 문제 지속적 제기 및 논의 발판 마련
 -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지속적 자원조사 및 자료 축적의 필요성 지속적 제시
 -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국내어업 조업 장려를 통한 동 수역 관할권 유지
- 민간협의 활성화를 통한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추진
 -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민간 협의 성사 적극 추진
 - 한국수산회 및 중국 어업협회 등 어업인 단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추진
 - 한·중 동종 업종별 교류회를 통한 상호간 협력 증진

다. 한·중·일 3국 어업협력체제 구축

□ 한·중·일 민간어업협의 활성화

- 한국수산회, 중국 어업협회, 일본 대일본수산회 중심의 민간어업협력 강화
 - 3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수역(제주 남부 중간수역 등)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방안 강구
 - * '05년 한중일 민간어업협의 정례화 합의
- 한·중·일 업종별 민간 어업협력 병행 추진
 - 한국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일본 이서저인망 수협, 중국 저인망 단체 등 업종별 교류회 추진으로 업종별 협력관계 도모
 - * 선망어업의 경우, 1996년부터 한국 대형선망수협과 일본 원양선망수협이 중심이 되어 '한일 선망어업합동어로장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양국 업종간의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등에 적극 대응

□ 한·중·일 연구기관의 활성화

- 한·중·일 연구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
 - 현재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일본 수산종합연구센터 등이 양자 간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중
 - 동북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한·중·일 연구기관의 협력 추진 및 강화
- 한·중·일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일본 수산종합연구센터간 어업생산, 무역, 자원관리, 어업제도 등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수행
- 중국 수산업 실태에 관한 체계적 조사
 - 한·중·일 EEZ 체제 이후 중국 수산정책 및 제도, 한국과 어장 및 자원 이용에 경합하고 있는 지역(산둥성, 절강성) 어업실태조사 및 자료축적

□ 한·중·일 수산고위급 회담 정례화

- '04년 담보 상태인 한·중·일 수산고위급 회담을 재개, 정례화 하여 한·중·일간 현안 문제를 고위급 회담에서 해결 유도

□ 동중국해 북부 수역 3국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추진

- 동중국해 북부 조업질서 유지가 필요한 수역 범위 및 대상 업종 도출
 - 자원조사 대상수역, 조사방법 등은 정부 간 협의 필요
- 수역 중심이 아닌 어종 중심의 자원관리 도입
 - 부어자원인 고등어, 전갱이에 대한 시범자원관리 실시

□ 한·중·일 수산자원관리 협력기구 설립 추진

- 수산자원협력기구를 한·일 간 우선 추진한 다음 중국측 참여방안에 대한 한·일 공동 추진
 - 한·일 간 수산자원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수산자원협력기구에 중국 측 참여 방안 수립
- 한·중·일 수산자원협력기구 운영 방안 수립
 - 수산자원협력기구 입지선정, 운영비용 분담
 - 수산자원협력기구 역할, 대상 수역, 자원관리 대상 및 내용

라. 남북 수산자원관리 R&D 협력

□ 남북 수산자원관리 공동 연구조사 추진

- 도루묵 자원회복, 꽃게 및 명태 자원관리, 연어 부화·방류사업, 고래·물범 등 포유류 자원 조사에 대한 공동협력 시범사업 추진

□ 남북 수산분야 기술교류 협력 추진

-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수산업 영향 등 남북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의 활발한 교류 지원
- 북측 어업지도요원 및 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실용기술 전수 추진

마. 남북 수산물 교역 및 수산협력 강화

□ 남북 수산물 교역의 활성화

-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 * 교역량 : '04) 43천 톤 → '06) 54천 톤 → '08) 66천 톤

□ 정부간 기 합의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대비 강화

- 서해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동해 북측수역 입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및 양식협력사업 등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한일·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6월)11년 한일·한중입어협상 대응전략 수립	(13)한중 양국간 입어규모 등량·등척 추진
나.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체제 구축	(6월)한일 동해 및 제주도·남부 중간수역 이장청소	(13)한중 잠정조치수역 이장청소
다. 한중일 3국 어업협력 체제 구축	(10월)한·중·일 민간어업협력 활성화 방안마련	(11)한·중·일 수산고위급 회담 정례화 추진 (12)한·중·일 수산자원관리 협력기구 설립추진
라. 남북 수산자원관리 R&D 협력	(7월)남북 수산자원관리 R&D 협력대상사업 발굴	(11)남북 수산자원 관리 및 R&D 추진방안 마련
마. 남북 수산물 교역 및 수산협력 강화	(12월)남북 당국 간 기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11)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수산기술 지원 (11)동해북측수역 입어

제6장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정책지표

- ◆ 양식어업 생산량 : ('08) 138만톤 ⇒ ('14) 156만톤
- ◆ 외해양식장 개발 지원 : ('08) 0개소 ⇒ ('14) 19개소
- ◆ 양식 참치 생산량 : ('08) 0톤 ⇒ ('14) 1,000톤
- ◆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수 : ('08) 7개 ⇒ ('14) 20개
- ◆ 넙치 신제품 보급률 : ('08) 0% ⇒ ('14) 40%
- ◆ 갯벌어업수출단지 지원 : ('08) 0개소 ⇒ ('14) 7개소

중점과제

- ①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 ②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 양식 활성처리제 보급
- ③ 불법양식어장 정비
- ④ 수산생물 종자산업 육성
- ⑤ 어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 ⑥ 양식 수산물의 수급 안정
- ⑦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 ⑧ 경쟁력 있는 대표품목 육성
- ⑨ 체험관광형 양식산업 도입 및 육성
- ⑩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 ⑪ 신 갯벌어업 프로젝트 추진

6-1.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1. 추진 배경

- 환경 보호 및 식품안전성 확보 위한 친환경양식 육성 필요
 - 양식어장의 80% 이상이 남해 연안의 내만에 집중, 장기간의 과밀 양식으로 어장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
- 국제적으로도 양식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FAO는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규범'(제9조)에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양식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규정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정책 목표
 -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제품 및 원천 기술 집중 개발, 양식 산업화 지원
- 추진 방향
 - 친환경 양식어업 구조 재편을 위한 친환경 양식 표준화지침 개발, 친환경 양식 인증제 확대 등 제도적 지원책 추진
 - 사료, 양식기자재 등 양식 생산의 투입 요소를 친환경적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친환경 양식어업 구조재편

- 신규 및 기존 양식어장 개발 제한을 통한 수급 안정 도모
 - 김, 어류, 한정면허 양식어장은 면허 유효기간 만료 어장을 재개발 할 경우 당초 면허면적의 80~95% 범위내로 제한
 -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해면양식 품목은 신규면허 금지
- 상습 재해 수면 재개발 금지
 - 재해 상습 양식어장으로 최근 5년 동안 50%이상 피해가 2회 이상 발생 어장으로 재해복구비가 지원된 어장은 재개발 금지
- 양식어장 진입제한 완화
 - 현재 양식어장 진입제한 : ①면허규모 제한(60ha 이하), ②대기업 진입제한 등
 - 양식어업에 새로운 투자자 진입을 허용하되, 가급적 신규 면허 허용 보다는 기존의 양식면허 취득 등을 통해 규모화 유도
- 친환경인증 수산물의 품목 확대
 - ('09) 10개(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14) 20개

나.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확대

-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
 - 친환경·실용 배합사료 및 급이 프로그램 연구개발
 - 배합사료 품질검정 확대 실시 및 대어업인 자료 공개
 - ('09) 150점→('10) 200→('12) 250→('13) 300→('14) 400
 - 배합사료 회사별 품질 검정자료 공개시스템 마련

- 배합사료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
 - '04년부터 추진 중인 배합사료 보조금의 지원조건 완화
 - '08년부터 추진 중인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특별융자 지원
- 수협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 지원
 -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 및 배합사료 시장 가격견제 역할 수행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친환경양식 활성화	- 친환경 양식(2개 시범사업) 세부 실행방안 마련협의 - (1·2·4·9·11월) 전북 시범양식단지 및 친환경 순환여과식 추진회의	- (계속) 친환경 양식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 ('11) 개선방안 마련 지속
나. 평가회의	- (6월) 친환경양식 활성화 중간평가회의 개최	-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1~)
다. 배합사료 보급 확대	- 고효율 배합사료연구개발 산·학·연 용역 추진 - 배합사료 보조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 - 지역실정에 부합한 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 - 배합사료보조금의 지원 조건 완화 및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6-2.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 양식 활성처리제 보급

1. 추진 배경

- 김 양식 활성처리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 미비, 오·남용 우려 등으로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활성처리제 지정 확대 요청
- 현행 「김 양식 활성처리제 사용기준」(고시)은 친환경 전해수, 고염수 처리제의 사용근거 없음

< 양식 기자재 및 김 활성 처리제 개발 현황 >

구 분	활성처리제의 종류			
	친환경 전해수	활성처리제	고염수처리제	천연미네랄활성수
구성분·특성	강산성전해수	유기산(무기산9.5%하용)	천연 염분수	천연미네랄암반수
사용근거	없음	규정 있음	없음	없음
실 태	•제품개발 완료 •실증시험중('09)	•제품 사용중	•제품개발 완료 •실증시험중('09)	•제품개발 완료 •실증 시험중('09)

- 해면 양식장에서 유실 및 투기되는 폐 양식 어구(플라스틱통, 스티로폼 부표)로 인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 증가
- 고밀도·내구성의 친환경 김 양식 어구의 보급 및 관리대책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양식 활성처리제 개발·보급 확대를 통하여 양식 어장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향상
-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 양식 활성처리제의 기준 및 사용에 대한 제도 정비

3. 세부 추진계획

가.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양식 활성처리제 개발·보급 확대

- 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
- 주요사업 및 지원내용

구 분	김 양식 활성처리제 보급	친 환 경 전해수기보급	친환경고밀도 부표 교체	친환경 양식 기자재 보급
종 류	• 유기산 활성처리제 • 고염수처리제 • 천연미네랄 활성수	강산성 전해수기	고밀도 PP부표	생분해성기자재 가두리 틀 가두리망(그물)
사업량	양식면적의 75%	238개(어업권의25%)	20,300천개	사업 희망량
추진방법	• 시군 집행 • 입찰제(투명성 확보) • 분권교부세 지원	• 어업권단위 지원 • 유통협약, 자조금, 영어자금 등 활용	매년 20% 교체	• 시군 집행
추진일정	'10년: 시범추진 '11년~: 사업확대	'10년: 개발·시험 '11년~: 보급·지원	'10~'14년	'10년: 시범추진 '11년: 사업확대

나. '김양식 활성처리제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 개정

- 현행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으로 친환경 전해수, 고염수 처리제 등의 사용기준 근거 마련

4. 추진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친환경 양식어구 및 김 양식 활성처리제 개발·보급 확대	- (5월) 기본계획 수립 - (7~12월) 예산 절충	- 사업 추진
나. '김양식 활성처리제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 개정	- (3월)실태 및 자료 수집 - (5월)개정(초안) 마련 - (7월)개정(안) 수립 및 의견 수립 - (9월)절차 이행 및 공포	- 제도 시행

6-3. 불법 양식어장 정비

1. 추진 배경

- 면허구역 밖의 불법시설(무면허, 어장이탈), 시설량 초과, 장기간 시설방치 등으로 조류소통 장애, 고품질의 적정 생산·공급체계 붕괴, 적정 가격 유지 및 소득안정 저해
- 전복먹이용 해조류 수요 증가와 함께 미역·다시마 양식장의 난개발 및 불법양식으로 조류소통 방해, 질병발생 증가 및 높은 폐사율 초래
- 불법행위 대비 미약한 처벌(과태료)로 한탕주의식 투기성 불법·초과시설 상존
 - 과잉투자·생산으로 인한 부채 증가 및 수급불균형 초래

2. 정책 목표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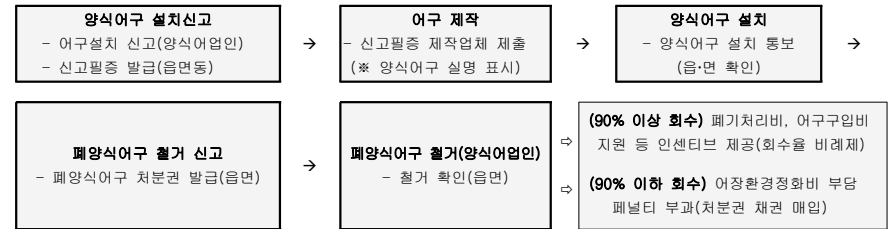
- 친환경 양식장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실효성 제고
- 과학적 양식장 관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양식어구 설치 및 폐양식 어구 철거에 대한 지원 확대
- 자율·상생의 건전 양식 질서 확립

3. 세부 추진계획

가. 친환경 양식어장 관리 제도 개선

- ‘양식어구 실명제’ 및 ‘양식어구 설치 신고 및 폐양식어구 처분권’ 제도 도입

- 양식어구실명제 제도 도입(도입사례 : 어선어업 어구 실명제)
 - 대상어구 : 어장기점표시 부표, 가두리 시설 등
 - 기대효과 : 무면허 불법양식 방지, 양식시설 투기·방치 예방 등
- 양식어구 설치 신고 및 폐양식 어구 처분권 제도 도입(도입 사례 : 탄소배출 거래제)
 - 양식어구 시설량을 기준으로 회수(폐기)량 기준을 설정한 후 기준 이상 회수시 폐기처리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준 이하 회수 시 어장환경 청소비 부담 등 페널티 부과(의무 강제) 제도 도입
 - 추진체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불법행위 적발 시 다수의 어업인이 행사(종사)하는 어업면허 전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규정된 제도를 불법 행위자만 행정 처분토록 개정 추진(선량한 다수의 생업터전 보호)

□ 자율정비 모범 지자체에 대하여 면허취소어장 우선 전배 MOU 제도 도입

- 불법양식어장 정비 및 면허취소 부분은 자율정비 모범 지자체에 우선 전배하여 기존의 양식어업 종사자, 귀어가 양식업종사자 등에게

생업터전 마련(MOU 제도 도입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생산자단체)

○ 불법 어장 자율정비 및 관리 의식 고취, 어장이용의 효율성 도모

나. 과학적 양식장 관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양식어장정비 생태지도’ 시스템 구축

- 조류 등 환경요인, 어장환경 영향 및 오염원, 어장개발 수용력 등을 포함하는 양식어장 정비 생태지도 작성
 - 어장 정비 및 어업면허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관련규정 개정으로 현행 어장도를 생태지도로 대체

□ 과학적인 위성관측을 통한 친환경 양식어장 관리 및 정비 시스템 구축

- 관측 품종을 4개에서 6개(김·전복·미역·다시마 + 홍합·어류가두리)로 확대
- 어장 설치시기(12월)와 해조류 어장 철거시기(7월)에 위성 관측으로 불법양식 시설 확인 및 어장이용 실태 확인 정확성 도모
 - 생산량 추정, 불법어업 단속 및 어장 정비 자료로 활용

다. 친환경 어구 설치 및 폐어구 철거

□ 어장기점 위치발신(GPS) 고밀도부표 설치 지원

* ‘양식어구 실명제’ 및 ‘친환경 양식기자재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도모

□ 위성(항공)관측 식별용 부표컬러화 지원

- 양식어장 부표를 업종별로 통일된 컬러부표를 사용토록 개선하여 위성관측 결과 판독 및 어장관리 효율성 도모

* 김-황색, 미역-적색, 다시마-청색, 홍합-흰색, 전복가두리-황색, 어류가두리-청색

라. 건전 양식어업 질서 확립

□ 불법양식어업 일제정비·단속 정례화

○ 시 기 : 시·군 4~5월, 시·도 8~9월, 정부 10~11월

□ ‘양식장 4대 병폐’ 근절 자율실천 운동 및 홍보 강화

- 양식장 4대 병폐 : 무면허, 어장이탈, 초과시설, 김 유해물질사용
- 생산자단체(품목별 대표조직) 중심의 불법어장 자율정비 및 양식장 4대 병폐 근절 실천운동 전개(결의대회, 선포식, 세미나 등)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친환경양식어장 관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구 실명제 도입 계획 수립 • 양식어구 설치신고 및 폐양식어구 처분제 도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 입법절차 이행
친환경 양식어장 관측 및 관리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양식어장정비 생태지도 도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안) 수립, 의견수렴 • 면허규칙 개정 •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친환경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건전 양식어업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양식어장정비 5개년 계획 수립 • 불법양식어장 정비·단속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양식어장 정비 5개년계획 실행 • 불법양식어장 정비·단속 추진(매년)

6-4. 수산생물 종자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 세계 수산생물 종자산업 규모는 157억불(전체 693억불)로 추정되며 분자 마커, GM기술 등 첨단생명공학 기법이 접목되어 지속적 성장 전망

<표> 종자시장 규모

(단위 : 억\$)

	계	수산	농산	축산	산림
세 계	693	157	365	171	-
한 국	10.5(1.5%)	1.58	4	4.76	0.18

- 각국은 식량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원 수집·평가·이용 등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수산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로서 우리나라는 '04년부터 수산과학원 중심으로 넙치, 전복, 김, 미역 등에 대하여 연구 진행 중이며, 선점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고부가가치의 첨단 생명공학 산업으로서 수산생물 종자산업을 신수산 미래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전략품종 중심의 신제품 집중 개발
- 수산식물 품종 보호제 전면실시('12.1)에 따른 대응 강화
- Aqua-Pet산업 육성 및 민간주도의 신제품보급센터 체계 구축
- 연구·개발은 관·학·연 주도, 종자보급은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육성
 - 수산과학원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자체 연구소, 산학연의 지역토착종 신제품 개발에 대한 R&D협력(지원) 체계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 R&D 투자 확대(수산생물 품종기술 개발)

- 국립수산과학원 중심의 지자체, 산학연 협력 및 지원 강화로 조기 연구개발 성과 도출
 - * 수산과학원 : 수입대체 전략품종 개발, 수산식물·수산관상생물 신제품개발 집중
 - * 지자체연구소, 산·학·연 : 지역 토착의 신제품 집중 개발
- 교잡 및 염색체 기법, 선발육종, MAS 등에 의한 품종개발 R&D 확대
- 넙치 육종품종개발('10~'14), 전복 육종품종개발('10~'14)
- 내병성 및 친환경성 육종 신제품의 개발('10~'14)

나. 수산생물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 수산종자 육종 프로그램 기반 구축
- 국제 유전자원 이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산학연의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 강화(특성평가, 산업화 등)
- 국내·외 수산생물 유전자원 분류(수집·평가) 및 관리(보존) 시스템 구축

다. Aqua-Pet 산업 육성지원

- 경쟁력 확보를 위한 One-Stop 시스템(전시판매, 마케팅, 홍보관, 관상용품)의 복합 산업단지 조성
- 토착종 및 고가관상어 등의 수출전략품종에 대한 지원 강화
 - * 주요대상품종 : 금붕어, 비단잉어, 목자루, 가시고기, 해마, 나비고기, 파랑돔

라. '수산 신제품 보급센터' 설립

- 양식기술이 확립된 품종(넙치, 전복)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센터 설립
- 신제품 주양식 지역별로 신제품 보급센터 설립(넙치-제주권, 전복-전남권)
- (추진체계) 연구·개발(민관학연) → 보급(보급센터) → 양식(양식어가)
- * 주요 보급대상 품종(양식기술 확립된 품종) : 넙치, 전복, 바리과어류, 김, 미역 등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수산 R&D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 사업 추진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 사업 추진(매년)
수산생물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 사업 추진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 사업 추진(매년)
Aqua-pet 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 •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 사업 추진(매년)
수산 신제품 보급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 •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 사업 추진(매년)

6-5. 어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가 양식어업에 지속적 영향

- 태풍 등의 풍수해로 양식생산 기반이 와해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적조, 이상조류에 따른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양식어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수온 상승으로 해양 환경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양식어업에도 근본적인 적응 대책이 요구됨

□ 양식어업은 공간적인 특성상 재해 및 환경변화에 취약

- 재해보험과 같이 제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해양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양식어업이 적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양식어업의 대응 체계 구축

- 자연재해·어업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제 마련
- 양식어업의 기후변화 적응 기반 확보

3. 세부 추진계획

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어업재해 피해 체계적 대응

-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의 분석 및 양식 어업인에게 제공
 - 이상조류, 적조, 태풍, 집중호우 등의 과거 발생 상황과 현 시점의 발생 상황을 종합 분석
 -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
- 적조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 매년 발생하는 적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방제사업(황토 구입 및 살포) 추진
- 하·동절기 재해예방대책 추진
 - 여름·겨울철 태풍, 적조, 한파, 폭설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철저한 대응으로 수산 증·양식분야 피해 최소화 도모
 - 위기별 대응 매뉴얼 등 숙지 및 실행으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양식시설 표준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복구 추진
 - 재해발생시 적용하는 복구단가의 신규지원대상 확대 및 현실적인 복구 단가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과 협의 추진
 - 양식시설에 대한 표준규격이 없어 태풍, 파랑 등 자연현상 발생 시 피해 예방 또는 피해 최소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모든 양식 시설에 대한 표준규격 마련

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온난화로 인해 양식어업은 양식 품종의 생리변화, 부영양화 촉진에 따른 집단 폐사 가능성과 새로운 질병 확산 및 발병률 증가 발생
 - 온난화의 영향에 대응하여 수온 상승에 대한 양식 품종의 적응력 증진, 규칙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안적인 먹이공급 체계 구축
- 해양환경 변화가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염도수 침투, 연안 생물 변화에 따른 양식어업의 먹이 부족, 해적 생물 증가
 - 고염도수에 강한 품종 개발, 대안적인 사료 개발, 해적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 재해 대비 양식시설기준 표준화 도입

- 양식시설별 양식현황 및 실태 조사
 - 동·서·남해 주요 양식시설별 양식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표준화 기반 마련
- 실태조사를 토대로 양식시설 표준규격 설정
 - 표준규격(안)을 마련하여 현장적용실험을 통해 표준규격 검토
 - 양식시설과 현장적용실험 결과를 토대로 표준규격 기준 마련
- 양식시설 표준화 제도 도입
 - 양식시설 표준규격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표준규격 제도화

4. 추진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 (4월)적조대응 계획 수립 - (6월)유관기관 상호협력 대책회의 개최	- 복구단가 인상 및 추가
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		- (12년)변화에 대한 양식 방법 개선 방안 검토
다. 양식 시설기준 표준화	- (12월)표준규격(안) 마련 및 현장적용 실험	- (11년)양식 시설별 표준규격 확정 및 제도화 추진

6-6. 양식 수산물의 수급 안정

1. 추진 배경

□ 양식수산물의 출하조절 곤란

- 양식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다수 생산자가 생산하는 동질적인 상품이고 생산 기간이 길며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수요에 맞는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가 곤란
- 생산자가 많은 넙치, 조피볼락, 굴, 전복, 김 등 일부 품목은 수출이나 국내수요의 여건에 따라 공급 과잉에 따른 경영 악화의 위험 상존

□ 어업인의 협력을 통한 수급 조절 체제 구축 필요

- 양식 어업인이 시장의 여건에 맞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자조금 사업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장려할 필요

2. 정책 목표와 방향

□ 양식 수산물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여 양식 경영체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

- 수산업관측사업을 고도화하여 신속·정확한 시장 정보 제공
- 양식 수산물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업관측사업의 고도화

- 가격 변동이 큰 주요 품종을 어선어업까지 관측대상 품목 확대
 - 양식어업 : ('09) 7개 품목 → ('16) 10개(돔, 우렁쟁이, 뱀장어 등)
 - 어선어업 : ('09) 0개 품목 → ('16) 2개(고등어, 오징어 등)
- 관측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의 활용도 제고
 - 관측 품목의 DB화 및 타 기관 DB 연동화 추진
 - 관측 품목의 모바일 서비스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 지원
 - 관측 품목의 수급 분석 시스템 구축
- 수급전망모형개발을 통한 정량적 분석·예측 기능 강화
 - 관측 품목별 생산 및 가격 전망모형 구축, 수요 및 공급 함수 추정

나. 양식 수산물 자조금 사업 확대

- 유통협약 자조금 사업 지원 대상품목 확대
 - 국내산 수산물 중 전국 규모의 생산자 조직구성이 가능하고 자율적 출하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
 - (현재) 5개(김, 넙치, 송어, 전복, 자라) → ('16) 10개(굴, 조피볼락, 미역, 우렁쟁이, 뱀장어 등)
- 품목별 지역단위 생산자단체를 전국 단위로 규모화
 - 지원 대상 품목 중 전국단위로 규모화가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전국 규모화 추진
- 품목별 출하조절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조절 기능 강화

4. 추진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업관측사업의 고도화	- (10월)수급전망모형 개발 추진	- (12년)관측 품목별 생산 및 가격예측모형 구축 - (11년)수급 전망모형 개발
나. 양식수산물 자조금 사업 확대	- (3월~12월)생산자 단체의 전국 단위 규모화 - (3월)자조금 위원회 사업 계획 수립	- (12년)자조금 지원 품목 확대

6-7.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1. 추진 배경

□ 국내 양식어업은 내만에 집중되어 연안환경 오염과 적조 등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

- 고밀도 어류가두리 양식시설에 따른 연안환경 오염 야기
- 태풍, 적조, 질병 등에 의한 반복적 피해로 국가재정 압박

□ 국외 규제 강화 및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

- 다량어 어획량 증가에 따른 국제기구의 규제 움직임
 - * (1950) 40만톤 → (1980) 200만톤 → (2007) 430만톤/ '80년 대비 215% 증가
- 기후온난화 진행에 부합한 새로운 참다랑어양식 종묘확보 위협
 - * 일본은 참치어종의 완전양식을 2002년에 성공,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 중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외해 가두리 양식 산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외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외해 양식어장 개발 및 참치 양식기술 연구개발

3. 세부 추진계획

가. 외해양식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외해양식업의 촉진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단계별 추진

- (1단계) 외해양식 본사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마련
 - 수산업법 개정 후속조치, 동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규칙 개정('10.6)
 - 외해양식 본 사업 원년으로 어업면허 사업자 선정 및 관리대장 등을 2010년 상반기 중에 준비 완료 후 2010년 7월부터 면허 허용
- (2단계) 외해양식의 본 사업 추진 후 양식산업화를 위해 내만 양식어업과 통합한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중장기 검토
 - 「양식산업발전법」(가칭)의 제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11)
 - 공청회 개최 및 제정 추진('11~'12년)
 - * 양식분야 수산업법, 어장용 관리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등 통합함

나. 외해양식어장 개발 및 참다랑어 양식기술연구 개발

- 참다랑어 종묘생산을 위한 5개년 연구개발 지원('10년 20억원)
- '12년까지 외해 가두리 양식어장 본 사업(15개소) 확대 추진('10년 24억원)
 - 참다랑어 어장 8개소, 타품종 어장 7개소
- 내만 가두리어장 면허면적의 30%(352ha)을 외해로 이설

- 외해 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만가두리를 외해로 이설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 혹은 용자 등의 지원 검토
- 연차별 이설계획(352ha) : ('11) 100ha → ('12) 125 → ('13) 127
- * 외해이설 방법, 지원단가 및 규모 등의 사전 연구용역 추진 필요('11)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관련법령 개정	- (1~6월)수산업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 (계속)관련법령 미비점 지속적 개선 보완
나. 종묘생산기술개발	- (1~12월)종묘생산용 어미관리, 양성기술 등 개발	- (11~14년)종묘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다. 외해양식장 개발	- (1~7월)사업자 선정 및 면허허용, 6개소	- (11~12년)외해가두리 어업면허 처분(9개소)

6-8. 경쟁력 있는 대표품목 육성

1. 추진 배경

- 양식어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으나, 양식어업 경영의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어장환경 악화, 투입요소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수산물 수입 증가, 국내 생산 과잉으로 시장경쟁 치열
- * 양식어가의 어업 소득률 : ('03) 46% → ('08) 38%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정책 목표
 -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생산, 제품개발, 판매·출하, 수급조절 등을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대표조직 육성
- 정책 방향
 - 지역 경제에 영향력이 크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조직 및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기술 및 고소득 품목의 양식기술 개발, 양식종묘산업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 등으로 산업 기반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주요 품목의 대표조직 육성 및 지원

- 정부가 지정한 29개 농축수산물에 포함된 넙치, 전복, 김을 대상으로 대표조직 육성 및 지원
 - 지역단위 생산자 중심 조직을 단일 대표조직으로 통합
 - 생산, 가공·유통, 수출입으로 분야를 나눠 전담기구 구성·운영
 - 전국단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소비촉진 행사, 공동 판매 및 브랜드 개발
 - 수출국 다변화, 수출전략 제품 개발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업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일관된 산업 협력체계 구축
 -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을 추진

나. 원가 절감형 생산시스템 개발

- 실용적 순환여과 모델 개발('10~'13년)
 - 해산용 실용 순환여과시스템(RAS) 모델 개발('09~'10년)
 - Pilot형 순환여과시스템 및 양식자동시스템 산업화 모델 개발 및 실용화('11~'13년)
 - 경제성 분석 및 어업인 기술지도('12~'13년)
- 먹이 자동 공급 시스템 개발('10~'13년)
 - 품종별, 크기별 먹이 공급 장치 개발
- 사육 환경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10~'13년)
 - 각 사육 환경 요인 등에 대한 수질 기준 설정

- 품종별, 크기별 각 사육 환경 요인

라. 고소득 양식품목의 기술 개발 및 보급

□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개발

-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개발 및 특화 브랜드 추진('10~'13)
 - 해역별 특산어종 개발 및 맞춤형 양식기술 보급
 - 동해안 : 참가리비, 강도다리, 대구 등
 - 서해안 : 참조기, 황복, 꽃게, 해삼 등
 - 남해안 : 고등어, 피조개, 멍게 등

□ 고소득 틈새 양식 품목 개발

- 농수산 융합형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10~'13)
 - 친환경 논 생태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
 - 기능성 양식품종 기술 개발 및 보급
 - 대상생물 : 미꾸라지, 다슬기, 참게 등

마.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 주요 양식품목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식 품목별 수출 1억불 조기달성
 - 품목별 수출 1억불 달성시기 : 김('12), 넙치('12), 전복('17)
-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전 양식어장으로 확대
 - 미국 및 일본에 활 넙치 수출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판촉전 지원
 - 동남아, 유럽 등 신규시장의 시장조사 및 고품질 브랜드 개발

○ 품목별 맞춤형 지원 대책 추진

- 김
 - 육상채묘 시설 및 냉동망 지원사업 지원
 - 이물질 선별기 지원 확대
 - 수출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 넙치
 -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일본 등의 박람회 및 판촉전 지원
- 전복
 - 수출용 전복의 수집 및 선별기능을 위한 전복물류센터지원 설치
 - 전복 일류화 상품기지 개발 지원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회사 육성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대표조직 활성화 지원	- (5월)대표조직 워크숍 개최 - (12월)대표조직 평가회 개최	- 관련법령 미비점 개선 보완(계속) - (11년~)수행생산·유통·수출 통합, 판매기능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나. 대표조직 품목별 연구회 개최	- 대표조직(넙치, 전복, 김) 격월로 회의 개최(6회)	- 전복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개최(연중 6회)
다.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	- (12월)품목별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또는 TV광고	-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또는 TV광고(계속)

6-9. 체험 관광형 양식산업 도입 및 육성

1. 추진 배경

- 최근의 수요자 패턴은 관람형에서 직접 체험형으로 변화
- 세계적 수준의 양식기술 및 시스템과 체험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패키지 산업화로 새로운 수요 및 소득 창출 필요성 증대
- 양식현장 체험관광 기회 제공으로 양식수산물의 청정 이미지 강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정책 목표

- 1·3차형 체험관광 양식산업 발굴·육성으로 새로운 수요 및 소득 창출
-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양식 현장체험 기회 제공으로 양식수산물 이미지 쇄신

□ 추진 방향

- 기술이 확립된 대표어종의 양식어업 중심으로 체험 관광용 양식 산업화 추진
- 어종에 대한 전래 역사와 양식방법 및 기술을 스토리텔링화 (교육기능 병행)

* 넙치·참치에 대한 史料(‘넙치의 눈썹리’, ‘다랑어’의 전래 스토리 등)와 양식업 발전사, 청정 양식 방법, 시식코너 등을 종합 재구성하여 체험관광 상품화(패키지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육상양식 체험관광단지 개발

- 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사업 희망 수산경영체 등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또는 BTL 방식(대자본 참여 허용)
 - 관람형 위주에서 탈피, 체험·교육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시설 도입 및 공간 배치
 - 청정·안전 육상양식 이미지 홍보 극대화 - 생산이력·HACCP 시스템 견학, 버섯·마늘 등 고기능성 안전사료 생산·급이 관찰, 청결 생선회 가공 체험기회 제공 등
- 주요 도입시설
 - 육상양식 역사관, 생태수족관, 양식관찰관(수중보행 체험기회 제공), 수산물 요리관, 기념품관, 휴게시설 등

나. 가두리양식 체험관광단지 개발

- 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사업희망 수산경영체 등
- 추진방법
 - 대형 : BTL방식(대자본 참여 허용), 중소형 : 민간자본보조 형태 지원
 - 낚시체험과 숙박형 해양레저 체험관광 기능 강화
 - 연륙 수송기능 강화(자체 보트 확보)

○ 주요도입시설

- 가두리양식 영상체험관, 가두리낚시터, 가두리방갈로, 수산물 요리관, 토산품관
- * 가두리 낚시공원(모델)



4. 추진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체험관광형 양식산업단지 조성	-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 사업집행지침 마련(12월)	- 사업자 선정('11년) - 사업 시행('11~'13년)

6-10.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1. 추진 배경

□ 농수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BSE 논란, 멜라민 검출, 말라카이트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 국가간 FTA 체결 확산으로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협정 체결 시 동등성 원칙에 대비

-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FDA 기준에 부합한 관리 요구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 체제 구축

- 생산단계부터 위생안전·관리(수산물이력제, 해역등급화 등) 및 양식 어장 HACCP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위생관리 강화

□ 수산동물의 체계적인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 항생제 사용량 저감, 주요 질병 예방 백신개발, 중장기적으로 전담기구(질병 관리원 등) 육성

3. 세부 추진계획

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

- 생산단계의 안전성검사 강화 추진
 -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10 : 8,500건)
 - 생산단계 조사 비중 연차적 확대
 - * ('08) 50% → ('09) 60% → ('10) 70% → ('11) 80%
- 중점검사제 도입으로 부적합 이력 수산물 6개월간 특별관리

나. 지정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굴 생산·공급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따른 대미패류수출 굴 생산지 지정해역 (15개)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과학원, 품질검사원)
 - 11월~4월 : 2주 1회 / 5월~10월 : 월 1회
 - * 서·남해안 총 30개 세부해역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 실시 중

다. 양식수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 수산물이력제 대상품목 확대 및 중점 육성품목(4개종) 육성
 - 참여품목 : ('09) 12개 품목 → ('12) 15개 품목
 - 참여업체 : ('09) 550개소 → ('12) 850개소

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개발 및 보급 확대

- 양식장 백신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09~)
 - 어류 노다바이러스백신 대상단백질의 최적발현 조건 확립

- 연쇄구균 혼합백신 면역원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재조합 노다바이러스 단백질 안전성 분석
- 3종 세균혼합백신 간섭현상 및 안전성 조사

○ 항 병원성 다효능을 가진 천연물질 탐색 및 개발('09~)

마. 양식수산물의 질병관리체계 구축

○ '08.12 시행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국제수준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2014년까지 구축

- 국영 검역 시행장 확보(동·서·남해 각 1개소/'11~)
- 중앙 및 동·서·남해별 각 1개소의 방역센터 구축('10~'14)

○ 수산질병관리사 및 질병관리원 육성

- 수산질병관리사 배출 : ('09) 225명 → ('10~'14) 425명
- 수산질병관리원개설 : ('09) 26개소 → ('10~'14) 64개소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안전성 검사 강화	- (1월)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 (11~계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사 추진
나. 안전한 굴 생산·공급	- (10월)한미 공동 위생점검 - (10월)오염원 통제 계획 수립	- (12년)뉴질랜드, 대만 등 MOU 체결
다. 수산물이력제 추진	- (5~6월)지역설명회 개최 - (12월)최종사업평가회의	- (11~14년)참여업체 및 품목 확대
라. 백신 개발 및 보급	- 백신 공급 (6개 시도, 13억원)	- (11~14년)대상어종 확대 및 혼합백신 상용화
마. 질병관리체계 구축	- (7월)이동병원 운영 - (9월)전염병방역협의회 설치·운영 - (12월)수산동물 질병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11~14년)수산동물질병 종합관리대책 시행 - (11~14년)수산동물 방역센터 구축

6-11. 신 갯벌어업 프로젝트 추진

1. 추진 배경

- 서·남해안 우수 갯벌을 보유(2,550km², 전국토의 2.5%)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의 활용은 미흡
 - 갯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역 소득과의 연계성이 낮아 지선 어업인 불만 및 보호효과 저하
 - * 현행 습지보호구역(8개소, 172.5km²)을 '17년까지 갯벌면적의 20%까지 확대 계획(국토부)
 - 갯벌 수산자원 활용도 단순한 정착생물 채포위주의 소극적 이용으로 갯벌패류 생산 감소('90년 109천톤 → '07년 35, △68%)
- 특히, 갯벌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서해안은 '07년 유류유출 사고 피해로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대책 절실
 - 어장환경복원을 위해 '09년 정화사업(20억원)과 함께, 중장기 어장환경복원계획을 마련, '10년 223억원 지원계획
- 서·남해안 갯벌 수산자원을 무급이(無給餌)·친환경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수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획기적 수출확대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갯벌어장 옥토(沃土)화 등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
 - '유류피해어장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별 수출전략품종 발굴 및 갯벌어업수출단지 조성
 - 굴, 해삼 산업 시범사업을 거쳐, 단지조성 확대

- 갯벌어장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법률 제정 또는 개정(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리 등 규정) 필요성 등
- 친환경 생산 인프라 조성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 제고
 - * 기반조성단계('09~'11) → 실행단계('12~'14) → 완성단계('15~)

3. 세부 추진계획

가. 갯벌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

- 오염 및 훼손된 갯벌어장 환경 개선(沃土化)
 - 어장경운·객토·정리 등('10년 172억원)
- 사업효과 조사 및 어장복원프로그램 개발 병행
- 굴·바지락 등 패류종패 번식장 조성(패류자원 획기적 확대)

나. 수출전략품종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

- 시도별 지역특화 가능 '수출전략품종' 발굴
 - 굴, 해삼, 바지락, 백합, 고막, 함초 등 대상
- 수출잠재력이 높은 굴, 해삼 시범사업 추진
 - 연구기관 주도, 어업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종묘+양식+가공+수출' 전 과정 시범추진

다.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

- '10년 계획 수립 후, 14년까지 7개소 조성
 - 민간기업과 다수어업인 협력사업 형태

라. 갯벌어업 개발제도 마련

- 갯벌을 지구단위(Zoning)로 지정, 사전 계획하에 단지조성 등 집중 개발하는 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 필요성·내용 등 연구용역('10년) 후, '11년까지 법률 제(개)정 추진

4. 추진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갯벌 친환경생산 인프라 구축	- (1월)사업시행 세부지침 시달(시도) - (3월)사업설계 및 사업지역 선정(지자체) - (3월)신 갯벌어업 프로젝트 연구회 발족 및 워크숍 - (12월)갯벌어업 개발제도 마련(용역)	- ('11~'14)갯벌어장 기반조성 - ('11~'12)패류 종패 번식장 조성
나. 시범사업 실시	- (4월)개체굴, 해삼 시범사업 추진 - (12월)시·도별 지역특화 품종 발굴	- ('11~'12)시범사업 추진
다. 수출단지 조성	- (12월)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계획 수립	- ('11~'14)수출단지 조성 (7개소)

제7장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정책지표

- ◆ 원양어업 생산량 : ('08) 66만톤 ⇒ ('14) 70만톤
- ◆ 수산물 수출액 : ('08) 14.5억불 ⇒ ('14) 25억불
- ◆ 원양어선 계획신조 : ('08) 0척 ⇒ ('16) 38척
- ◆ 연안국 경제협력사업 규모 : ('08) 4억원 ⇒ ('14) 30억원
- ◆ 연안국과의 MOU 체결 : ('08) 5개국 ⇒ ('14) 15개국

중점과제

- ① 안정적인 해외 생산체계 구축
- ②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 ③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
- ④ 해외 수산투자 지원체제 강화
- ⑤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 ⑥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활동 지원
- ⑦ 수출 상품화 및 홍보전략 모색

7-1. 안정적인 해외 생산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그간 원양산업은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

- 국내 수산물 생산량 330만톤의 20%(67만톤, 1.3조원), 수출액 14억불의 35%(5억불)를 생산
 - 합작 수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면 연간 약 100만톤 생산(추정)

□ 최근 국제규제의 강화와 연안국의 EEZ 자원 자국화 추세 속에 조업장 축소* 등 어려움에 봉착

- * '87년 미국 7개 어장 철수 및 '93년 러시아 오호츠크 공해 조업 금지 등
- 특히, 해역별로 자원 보존·관리 조치가 강화*되고, 연안국은 입어방식의 전환(단순입어⇒ 합작/직접투자)을 요구
 - * 18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주요 어종의 어획능력을 관리하고, 쿼터 배정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국제규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해외투자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통한 매년 70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수산 전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민·관 공동)를 확대하여, 미래 식량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한 해외 식량기지 구축
- 생산·가공·유통이 수직 통합된 글로벌 원양기업 육성
 - * 수산업은 안정적 원료 확보 없이는 사업 성공과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어선, 가공공장, 양식장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3. 세부 추진계획

가. 원양어업 허가지침 개정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관할수역에 대한 신규 허가 추진
 - RFMO 설립 예정 또는 척수 제한 등이 없는 수역을 중심으로 신규 허가를 허용
 - * 규제강화 등으로 어선세력 확대가 곤란한 업종은 허가를 자제하고, 현행 지침상 외국과의 어업협력과 신어장 개발 등의 신규 허가조건은 유지
- 제3국적선의 국적선 전환(허가) 기준 마련
 - 어획물 국내 반입금지 및 한·미 FTA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구어법이나 조업방식이 기존 국적선과 상이한 경우 허용
- 허가 제한에 관한 기준 마련
 - 자원관리 등을 위해 허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 해역, 선령별 허가 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 업체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
- 허가 및 허가제한과 관련된 업계간 분쟁 조정과 사전 방지를 위한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 원양어업·국제자원관리·경영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양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나. 해외 어장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원조사 등 단계별 해외 신어장 개발 지속 추진
 - 민간 주도의 합리적인 해외어장 이용·개발 지속 추진(3단계, '09~)
 - * 1단계('01~'05) 대체어장 개발, 2단계('06~'08, 민·관 합동) 해외어장 이용·개발

- 해외 어장 자원조사 방식 변경 및 범위 확대('10~)
 - 단순 조업형에서 자원관리형 자원조사와 조업 형태로 전환하여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격 확립
 - 자원 보유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RFMO 규제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용 도모
 - 해외 어장 조사 범위를 해외 양식어장까지 확대

다. IUU 어업 및 어획물 관리 강화

- 국내로 반입되는 IUU 어획물 관리를 위해 외국어선의 국내 양륙항 지정
 - * 「FAO 항구국 조치」 등 IUU 방지 관련 협상(약정) 등이 체결될 경우, 「원양 산업발전법」에 의거 양륙항 지정 가능
 - 우선, IUU 어획물로 의심되는 대만산(産) 꽂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양륙항으로 지정하고 강제 상장
- EU의 IUU 근절조치에 대응하여 원양수산물에 대한 어획·가공증명서 발급 지원(계속)
 - *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 제정(농식품부예규 제28호, '09.12.29)

라. 시장개방 대응력이 약한 일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확보된 폐업지원금(534억원)을 기 체결된 FTA에 대응한 원양어선 감척 자금으로 활용
 -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FTA이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업대상으로 지정
 - * 대상 업종 선정,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심의·결정
 - 당해 업종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 폐업수요를 산정하고, 정상 조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마.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 업계 자체기금 마련을 유도하여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강화
 - 옥외 동영상 광고 및 직거래 원양산 수산물 레스토랑 등 운영
 - * 원양선사 사장단회의('08.10.6)에서 자체기금 마련 합의
- 국내산 수산물의 해외 마케팅 강화
 - 해외의 대형 농수산물 유통회사 판매망의 연계·활용, 대형유통회사의 수산물 수입·판매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현지 매장에 수산물 저장시설(수족관, 초저온 냉장고 등) 설립 지원
 - 가격변동이 심한 선어 판매방식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저가 수입산 수산물과 차별화
 - * '10년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시설 지원 사업비 : 13억원
- 영세 원양선사에 대한 금융권 보증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에서 영세원양선사 지급보증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원양어업 허가지침 개정	- (3월)원양어업 허가지침 개정	
나. 해외 어장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7월)해외어장 이용·개발 추진	- 해외어장 자원조사 방식 변경 및 범위 확대
다. IUU 어업 및 어획물 관리 강화	- (6월)외국어선 국내 양륙항 지정 - EU 어획증명서 발급	- EU 어획증명서 발급
라. 일부 업종 구조조정	- 한·미 FTA 비준시 까지 유보	
마.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 (3월)마케팅분석 기초 연구용역	- (11년)마케팅전략 개발

7-2.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1. 추진 배경

□ 국제규제 강화, 쿼터와 자원량 감소 등 경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기피로 원양기업의 영세성 심화

○ 반면,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어장축소 등에 따른 연근해 수산물 공급의 한계로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

* 원양선단 세력 : ('77) 850척 → ('90) 810 → ('08) 380(평균 선령 26년)

* 선령 21년 이상 비율 : ('77) 29 % → ('95) 49 → ('08) 77

□ WTO/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연착륙 전략 필요

○ 어획능력 증강 보조금은 축소·폐지하되, 보조금 규모 확대를 위해 새로운 지원수단 마련 및 간접지원 위주로 재편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원양선단 세력의 양적·질적 확대 및 원양산업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량과 수출량 증대

* 생산량(만톤) : ('96) 72 → ('00) 65 → ('05) 56 → ('08) 66 → ('09) 61

* 수출액(백만불) : ('96) 531 → ('00) 535 → ('05) 410 → ('08) 506 → ('09) 540

3. 세부 추진계획

가. 원양어선 계획신조

- '16년까지 38척의 선박을 계획적으로 건조하여 저선령화
 - 유류 절감 등 저탄소 인간중심형의 선박 건조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표준 선형설계도 제작('09.12~'10.4)
 - * 예상 규모 : 총 6,100억원(선망 4,770(19척), 트롤 940(7척), 기타 390(12척))
 - 노후 어선은 연안국과의 합작 사업으로 전환하고, 러시아 어선 조선소 등과 기술이전 등의 전략적 제휴 실시
- 이를 위해 '10.6월까지 원양어선 계획조선 추진 전략 수립
 - 농수산식품 모태형 펀드 등 재원(민자) 조성 및 국내 조선업체의 참여를 위한 원가절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 검토
 - * 국내 조선소는 원양어선 건조 관련 기술과 경험 등의 부족하여 대만 등 해외 조선소보다 신조 원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

나. 저탄소 고효율 어선·어구 개발 보급

- 하이브리드 어선 및 발광 다이오드(LED) 집어등 교체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보급
 - 꽁치 봉수망, 오징어·갈치 채낚기 어선 등 교체를 원하는 원양 어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정부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 '09~'13년까지 연근해·원양어선 1,095척의 LED 집어등 교체
- 저탄소형 조업 매뉴얼 작성·배포 및 연료 절감형 선체구조 변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와 범위 검토
 - * 구조변형을 통한 유류절감 사례 : 동원산업 참치 선망본선, 트롤어선

다.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제도 도입(노사합의 전제)

-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상 현재는 노사합의에 따라 원양어선 척당 부원의 55% 이내에서 승선 가능

- 노사합의가 될 경우 선박직원법(10조의2)을 개정하여 외국인 간부선원의 승선도 가능토록 추진(현재, 관련 조치 완료)
 - * '05년 선박직원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원양노조의 반대로 무산
- 아울러, 등급별 법정 해기사 승무기준* 완화도 추진
 - * 400톤급 예시 : 항해 2명(5급1, 6급1), 기관 2명(5급1, 6급1), 통신 1명(3급)

라. 원양산업 관련 통계 보완

- 현재, 생산통계*만 집계하고 있으나, 가공·유통·판매 등 원양산업 전반에 관한 통계 신설
 - * 통계청 승인통계 내역 : ①어업생산, ②수산물가공, ③수출입수산물
 - 관련 업무의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명예 수산관과 해외 주재관 등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
 - 필요시 법령을 개정하여 해외 생산·수출 실적보고 의무화

마.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정부가 민간기관에 출자하고, 민간 기관이 자금을 집행·운영 하여 보조금의 특성을 희석
 - 사업 명칭을 '저탄소 산업 및 해외 협력' 등으로 변경하고, 금지 보조금은 어업생산과 무관한 단체를 선정·운영
 - * 보조금 지급체계 : (현행) 정부 → 개별 경영체
(향후) 정부 → 민간기관 → 개별 경영체

<표> 민간기관 선정(안)

현행	추진사업	향후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	원양산업통계, 어장개발, 해외 투자, 어선대체 등	해양수산관측지원센터
원양산업협회	국제협력자금 운영	원양산업협회

- DDA 타결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
 - DDA 타결 이전 당해 연도에 확보한 원양산업 활성화 자금을 민간기관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 작업 추진
 - 예산 운용지침 개정 및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를 자금 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
- DDA 타결 시 보조금 금지 이행기간을 활용, 정부예산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 원양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 고부가 가공식품의 상품화와 시장확대·개척 등을 위해 산·관 마케팅 협력·지원 강화
 -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가공식품, 기능성식품, 의약품, 산업재 등 기술개발 R&D를 확대하여 저가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
 - * 일본은 정어리를 활용한 DHA, EPA 함유 식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원양어선 계획신조	- (4월)표준선형 설계	- (11년)계획 신조
나. 저탄소 고효율 어구어선 개발·보급		
다. 외국인 해기사 승선제도 도입	- 노사 합의시	
라. 원양산업 관련 통계 보완	- (11월)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 (11년)원양산업 총조사
마.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12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바. 원양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7-3.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

1. 추진 배경

□ 유엔해양법 발효('94) 이후 국제기구의 조업규제 강화 및 해외 어장을 둘러싼 국가 간 조업경쟁 심화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는 자원고갈을 이유로 조업 척수 제한, 쿼터량 축소 등 규제강화 추세
- 일본 등 조업경쟁국은 해외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 전개

□ 연안국의 자원자국과 심화로 인한 안정적인 어장유지 애로

- 전 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82%)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는 등 자원관리 강화 추세
- 연안 개발도상국은 자국 수역내 입어조건으로 경제협력 강화 요구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연안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어업유지 및 국격 제고

-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지원 체계 확충 및 유·무상 원조사업을 활용한 연안개도국 지원 확대
- 연안국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양·다자간 수산협력체계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한·러 수산협력 강화

-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단순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수산 전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하여 러시아 수산발전의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쿼터 확보에 주력
 - 연해주 어선조선소 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한 검토('09.12~'10.6)와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조사단 파견('10.3)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현지 법인(가칭 '한·러어업협력공사') 설립 검토 및 한국 원양산업협회를 통한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

나.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

- 연안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에서 민·관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 강화
 - 관련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업계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수립
 - (예) 남태평양 도서국 : 개별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도서국 공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지원
- 협력 수요증가에 대응, 사업규모와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 * 연안국 경제협력사업 : ('08) 4억원 → ('10) 6 → ('12) 20 → ('14) 30
- 무상원조 사업과 유상원조 사업(EDCF)을 병행·확대하여 해외 수산식량자원 확보 사업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
 - (무상원조) 주요 인사 국내초청 및 교육, 선원학교 건립, 수산자원 및 환경조사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

- (유상원조) 도서국 어항개발 사업, 해외 연안 생태계 복구지원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 ODA 사업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활용

다. 자원부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 한-PNA 8개국과의 협의체(KOPNA) 구성 및 수산 고위급 회의 정례화

- 수산 고위급회의 ⇒ 공동협력과제(선원학교, 가공공장 등) 개발

*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 나우루 협정 당사국으로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마셜,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투발루 8개국

-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확대 및 협력 내실화

* MOU 체결국 : ('09) 5개국 → ('10) 8개국 → ('14) 15개국 이상

라. 해외 수산사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조성

- 읍서버 경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민간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의 제반 소요경비는 국제수산협력자금으로 통합·지원

- 원양산업 활성화 사업은 현행 유지, 해외 융·복합 수산사업 지원은 확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 비율 지정

- (축소 분야) 원양어선 대체 및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등 단순 어획능력 증강 사업(현재 95% → 향후 30~40%*)

* 하이브리드 어선, 선체 구조변경 LED 보급 등 저 탄소 배출형 어선 대체

- (확대 분야) 해외 수산시설 투자, 연안국 협력, 해외 어장 개발 등 자원외교 강화 사업(현재 0.5% → 향후 60~70%)

마. (가칭)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도국과의 어업교류 전담하는 기관 설립

- 외국어선원과 개도국 어업인 대상의 수산기술 교육과정 및 고위급 연수 등 실무와 정책 교육을 병행

* 수산기술 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 등 전문기관에 위탁

바. (가칭) 농수산물식품투자공사 설립

- 정책자금 대출 위주의 농어업금융방식에서 벗어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투자하는 선진 금융체계 도입

- 농림수산물기금 통합, 정책자금 집행·관리, 신성장 동력 분야 투자 유치, Project Financing 업무 총괄 및 신용보증 지원 등 실시

사. 해외 수산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양식·유통·가공·판매 시설 건축 등 대상사업 발굴

* '10년 16억원(수산발전기금) : 융자 80%, 연 4%, 3년 거치 7년 상환
해조류 펄프생산을 위한 양식시설 투자지원 등 검토 중

아. 해외 수산자원 합작 생산 추진

- 해외 수산자원 개발·수입 업체(현지 법인)에 대한 관세감면 추진 확대(기획재정부와 협의)

* 관세감면 합작 진출업체('10년 현재) : 5개국, 21개사, 33척
(알젠틴 3개사/7척, 러시아 15/20, 칠레 1/3, 멕시코 1/2, 캐나다 1/1)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한·러 수산협력 강화	- (2월)투자조사단 파견 - (6월)연해주 어선조선소 합작법인 설립 검토	- (11~12년)선원교육 지원
나. 수산분야 공적개발 원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	- (6월)주요 연안국과 수산협력 방안 마련	- (11~14년)선원학교 등 신규사업 발굴·지원
다. 자원부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 (12월)한-PNA 협의체 구성 - (6월)한-브라질 양식 협력 MOU 체결	- (11년)아프리카 연안국 수산협력 MOU 체결
라. 국제협력자금 조성		- (12년)국제협력자금 조성
마.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 (12월)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검토	
바. (가칭)농수산물식품투 자공사 설립		- (12년)농수산물식품투자 공사 설립 검토
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확대	- (6월)해외수산시설투자	
아. 해외 수산자원 합작 생산 추진	- (12월)관세감면 추천 확대	

7-4. 해외 수산투자 지원체제 강화

1. 추진 배경

□ 해외 수산업은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로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

- 중국 등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동남아권 수산업 성장률은 연 20%(전체산업 평균 7.5%)를 상회
* 태국은 새우 단일품목이 전체 GDP의 30%(이 중 70%는 CP그룹이 생산)

□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이 미흡

- 현행 개별 업체 단독의 소규모 투자방식으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산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97년 이후, 해외 수산분야 총 투자액(35,461천 달러) : 전체 해외 투자액 743억 달러의 0.01%에 불과
- 경험 부족, 투자정보 및 자금 부족 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설문조사) : ①국가간 협력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발굴, ②국가별 투자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

2. 정책 목표 및 방향

□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수산자원 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 정보지원시스템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민·관 공동 금융시스템 도입 및 투자 모델 개발·보급 등

3. 세부 추진계획

가. 원양산업 진출 지원시스템 운영

-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 내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조직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정보지원 역량 강화
 - 원양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
 - * 정보제공 대상국 : ('09년) 20개국 ⇒ ('10년) 40개국
 - 정보제공 분야 : ('09년) 생산 위주 ⇒ (~'14년) 양식·유통·가공
 - '10년까지 센터 운영은 투자·시장·고용 여건, 입찰 등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14년부터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마케팅 전략 개발·보급, 컨설팅, 조사대행 서비스 등 본격 제공
 - 협회 내 Global Network System을 구축하여 품목별·업종별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나. 원양산업 관련회사 육성

- 어획물의 수집·운반·판매·마케팅 등을 전담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영세선사의 수익률과 경쟁력 제고
 - 도입 3년차부터 분석을 실시하여 지원효과가 양호할 경우 타 지역, 타 업종으로 사업 확대

<표> 관련회사 지원 계획

구 분	내 용
사업 대상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인니, 서아프리카 트롤을 대상으로 2개소에 우선 지원(필요시 러시아 등 다른 해역 및 업종으로 전환 가능)
지원 규모	개소 당 101억원(운반선 21억, 냉동가공공장 35억, 운영자금 45억)
지원 조건	운반선 등 시설자금(융자 70%, 자담 30%,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융자 100%, 연리 3%, 1년 상환)
집행 시기	한·미 FTA 비준 이후

다. 민·관 합동 펀드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식량개발이라는 공공성과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펀드 조성(입법화)
 - (규모) 정부출자와 민자 유치로 5천억~1조원 대 검토
 - (대상) 원양어선 신조, 해외 양식·가공공장, 유통회사 M&A 등 식량자원 확보와 관련된 사업
 - * 동 펀드 투자를 받아 생산한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국내로 반입하고, 국가 식량 수급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우선 반입 조치
-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 보전 장치 마련
 - 펀드투자 후 손실 발생 시, 정부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우선 손실하는 방식으로 설계
 - * 해외 농수산업 투자펀드는 손실보전 장치가 없을 경우, 민자 유치가 어려워 규모화된 펀드 조성 불가

라. 해외 트레이닝센터 운영

- 권역별 현지 트레이닝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 수산사업 성공 가능성 증대 및 투자자의 현지 적응력 제고
 - 수산계 학생, 소규모 해외투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성공업체 견학, 현지 적응훈련(생활 및 사업관련 정보, 기초 생활언어 등) 실시

마. 명예수산물관제도 확대 운영

- 현지 교민과 주재원을 명예수산물관으로 위촉하여 현지 동향 파악 및 정부와 원양선사 간 가교역할 수행('10~'14년)
 - 우선 권역별로 위촉하고, 주요 연안국으로 40명까지 확대
 - * 현재, 우루과이, 사모아, 인도네시아, 호주 4명 활동 중

바. 해외 수산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 민·관 공동으로 해외 수산비즈니스 사업 발굴 채널을 다양화
 - (정부) 국내 기업과 단체가 제안한 사업 및 타국 정부 등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 검토
 - (민간) 원양산업협회 내에 Global Network System을 구축하여 유망 수산투자 사업 및 해외 품목별 수산투자 성공기업 발굴
- 해외수산투자협의회*를 통한 사업 발굴 및 기업간 정보 공유
 - * 해외 수산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의 모임, 연간 총 4회~5회 협의회 개최 등
-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권역·규모·업종별 진출 세부 전략 마련
 - 사업 타당성, 사업 구조(참여 주체 설정 등), 현금 흐름, 수익률, 리스크 분석 및 주체별 참여 방안(지분구조 등)을 설정
-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투자 가능성 확인
 - 금융, 무역, 수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수산투자심의회'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 등 추진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원양산업 진출 지원시스템 운영	- (12월)원양산업진출지원 시스템 운영	- (14년)원양산업정보 시스템 제공범위 확대
나. 원양산업 관련회사 육성	- 한미 FTA 발효시	
다. 민·관 합동 펀드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 (11년)민·관 합동펀드 신설
라. 해외 트레이닝센터 운영		- (11년)해외 트레이닝센터 설치·운영
마. 명예수산물관제도 확대 운영	- (3월)명예수산물관 확대	
바. 해외 수산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5월)거점별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7-5.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출국가와 품목의 집중화가 높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다수 보유
 - * (예) 참치, 양식넙치, 김 : 생산인프라 구축, 수출 활성화 추진 중
- 하지만, 전반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과 투자가 미흡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수출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및 지원 확대
 - 수출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출시설과 업체의 집중화·단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
 - 국산 수산물의 위생·품질관리 강화 및 관련 시설과 시스템 확충(생산·가공 업체 도입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출 물류인프라 확충

- 품목별(활어, 신선냉장, 냉동품) 중점 수출 대상국을 선정하고, 거점 지역 및 물류시설 지원 등 물류 거점 확보

- 국내 공항 인근지역에 활어와 신선물 수출 집하·포장 시설이 구비된 수산물 항공물류센터 건설
- 포장부터 수입국까지 이동 시간 단축으로 폐사율 감소 및 집하, 혼합포장(연계상품 Packing) 기능 병행으로 물류비 절감

나.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

- 원료 공급, 가공, 수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건립 지원
- HACCP 기준에 적합한 식품 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다. 수출 전문 클러스터 조성

-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참여·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수출가공 대표 클러스터 조성
- '14년까지 수출용 패류(전복), 넙치 물류센터 2개소 건립
- 동시에 주요 권역별 수출 대표 클러스터 조성 검토

라.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 수출 수산물 가공업체 및 단지의 위생·안전시설 현대화 및 시스템 도입 확대
- HACCP 도입, 김 이물질 선별기, 금속탐지기 구입비 등 지원

마. 우수수산물 지원 확대

-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수출 수산물 구매·운영 자금 지원 확대
- 우수 수산물의 저장·가공 수출 관련 비용 지원

-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유망업체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 *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목표 증대 수준으로 지원 확대
- *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바. 수출 지원체계 정비

-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수출입조합 간의 역할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정비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전문 마케팅 조직으로 육성
- 중소기업, 영세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지원단 구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농업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 전문인력 육성(수출컨설팅 실시)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	- (1월)수산물 항공물류센터 건설	
나.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	- (10월)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착공	- ('13년)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
다. 수출 전문 클러스터 조성		- ('12년)수출전문 클러스터 조성
라.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 (연중)위생·안전성 강화	
마. 우수 수산물 지원 확대	- (연중)우수수산물 지원 확대	
바. 수출 지원체계 정비	- (6월)품목별 수출협의회 개최	

7-6.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활동 지원

1. 추진 배경

□ WTO/DDA,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되면서 수출시장의 진출 및 확대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 개도국 고소득층 위주로 수산물 선호가 대폭 증가하고, 아시아계 식품에 대한 서구권의 선호도 상승 등 시장이 급변
- 체계적인 시장 정보 분석과 함께 공급자와 수요자가 쉽게 접근·활용 가능한 종합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

□ 식품 사고 등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가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면서 개별업체 입장에서 시장접근에 한계

- 정부 차원의 통상협상을 통해 수입국의 위생 기준·규정, 교역절차 등으로 인한 수출 애로요인의 완화 필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수산물 수출 관련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시장 정보 제공으로 해외시장 접근성 개선

- 주요국 시장진출과 동향 관련정보의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유도

□ 통상협상을 통해 검역·위생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수산물 수출 환경 정비 및 애로 요인 해소

□ 수산물 수출 마케팅 활동의 다변화와 전문화

- 국제박람회, 푸드페어, 로드쇼 등 마케팅 활동 확대 및 수출 관련 전담기구 설치로 전문성 확보

3. 세부 추진계획

가. 주요국 시장실태 조사·분석 기능 강화

- 국가별 수산물 소비실태 분석 등 해외시장 정보조사 확대 및 대상 범위 확대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정기 동향 분석, 핵심 전략품목 조사 및 심층조사 연차별 확대
- 주요 국가의 수출 저해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소비정보 심층분석, 수출 관련 위생기준, 수입통관 및 유통제도 등 분석

나. 수산 분야 통상협상 강화

- FTA 협상을 계기로 정부가 주도하여 대상국 관련 기관과의 양자 협의 등 수출 애로요인 적극 개선
 - 신규 국가에 대한 협상 시도를 확대하고, 기존 국가와는 정례화 (EU, 러시아, 일본 등과의 통상협상 추진)

다. 수출 대상국의 수입기준 강화와 다변화에 신속 대응

-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증명서 등의 분석·종합 및 신속한 발행체제 정비

* EU의 IUU어업 근절조치 이행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CDS(Catch Document System) 어획정보 작성 및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라. 해외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

-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국제박람회, 푸드페어, 로드쇼 등 참가 지원 확대
 - 마케팅 행사별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산물 수출 전담 기구화
 - 공관, 무역상사 등 해외시장 진출 관공서, 민간 기구, 기업 등과 연락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 체제 마련
-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상설판매장 운영·지원
 -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백화점, 대형 할인점 내 상설판매장 입점 지원으로 판매거점 확보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주요국 시장실태 조사·분석 기능 강화	- (2월)EU수산물 시장 분석	
나. 통상협상 강화	- (6,11월)한·일 무역실무회의	
다. 수입기준 강화와 다변화에 신속 대응	- (1월)EU IUU 어획증명서 발급 지원	
라.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	- (12월)국제 수산물 박람회 등 지원 확대	- (11년)상설판매장 운영·지원

7-7. 수출 상품화 및 홍보전략 모색

1. 추진 배경

□ 해외시장을 둘러싼 주요 수출국간 선점 경쟁 심화

- 주요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등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국가와 경쟁 불가피

□ 한식 세계화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이와 연계해 한국산 수산물의 홍보 증대 방안 추진 필요

- 품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한국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전략의 종합적 추진 모색

2. 정책 목표 및 방향

□ 해외시장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신규품목 발굴

- 수출금액 기준 5천만\$ 이상의 신규품목 추가·발굴

□ 한국산 수산물의 효율적 홍보체계 구축

- 한국산 수산물 홍보 광고 매체수 확대
- 2014년까지 이벤트성 마케팅 활동 개최(연평균 12회 개최)

□ 상품성 강화 관련 R&D 사업 발굴·지원

-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프로그램 발굴·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 및 시범진출 지원

- 국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수출 가능성 조사 및 발굴
 - 수출가능 요인, 심층적 가능성 및 경제성 분석 등 연구용역 실시
- 국내 수산전통식품 및 기능성식품을 위주의 고부가가치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
- 차세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시범진출 지원
 -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 업체당 3년간 일정액의 자금 지원

나. 한국산 수산물 홍보사업 추진

-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매체광고의 확대
 - 해외광고, 광고매체(전광판 등)를 통한 홍보 지원
- 재외 공관, 해외 유력인사 및 국제이벤트 등을 활용한 이벤트 마케팅 등 공격적 홍보 마케팅 확대 추진
 - 해외 공관·기관, 오피니언리더·스타마케팅 추진 및 세계 유명요리학 교와 연계한 레시피 개발 및 이벤트 개최
 - 2010년 동계올림픽(캐나다), 월드컵(남아공) 등 국제대회 활용 이벤트 개최

다. 상품성 강화 R&D 사업 개발·지원

- 대상품목의 현지화를 위해 품질평가 시스템 및 고품질 가공 기술 등 품목별 프로그램 발굴

- 수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종합 상품 카달로그 제작 지원
 - 업체의 포장재 개발, 디자인, 상품성 강화 연구개발비 지원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차세대 수출 품목 발굴 및 시범진출 지원	- (3월)품목 발굴 및 지원	
나. 한국산 수산물 홍보사업 추진	- (3월)홍보사업 추진	
다. 상품성 강화 R&D사업 개발 지원		-(11년) R&D사업 개발 지원

제8장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정책지표

- ◆ 수산물 자급률 : ('08) 79% ⇒ ('14) 84%
- ◆ 수산시장 시설 개선 : ('08) 60개소 ⇒ ('14) 133개소
- ◆ 수산식품 거점단지 : ('08) 1개소 ⇒ ('14) 10개소
- ◆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 ('08) 7개 ⇒ ('14) 20개
- ◆ 다기능수산물유통시설 : ('08) 51개소 ⇒ ('14) 100개소

중점과제

- ①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기반 조성
- ②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 ③ 수산시장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 ④ 수산업 클러스터의 특성화 육성 사업

8-1.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기반 조성

1. 추진 배경

- WTO/FTA 시장개방으로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 금융위기 및 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 국내 수산물 생산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및 수입이 지속 증가하여 수산물 자급률 하락 추세
 - * 수산물 자급률(%) : ('80) 138 → ('90) 127 → ('00) 94 → ('07) 71
-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한 수급예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수급안정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비축사업 개편 필요
 - 생산자와 유통인의 효율적인 생산·유통 관리와 정부의 수산물 수급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 필요
 - 정부비축사업의 구매·보관·판매 등 단계별 효율성을 높이고, 비축사업의 결손을 최소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
 -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 관측사업의 품목확대 등 내실화 추진
 - 정부비축사업의 비축 및 방출 품목·양·시기 등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 구축 및 수산물관측사업 내실화

□ 국내외 수산물 생산·유통·가격·수출입 등 수급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급정책 총괄시스템의 구축

-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산물 수급 관련 정보를 통합, 수산물 수급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국내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수산국의 동향파악을 위한 해외모니터링 기반 구축(일본, 중국, EU, 러시아, 미국 등)

* 수산업관측센터의 해외조사 기능 강화(해외 모니터 요원 조사체계 구축)

□ 국내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가칭)수산물 수급 관리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등으로 구성 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수립
- 정부비축, 민간수매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정책 수립

□ 현행 양식어업 위주의 관측품목에 어선어업 품목을 확대 추진

- 고등어, 오징어, 멸치, 갈치, 명태 등 대중 어종에 대한 관측 사업 수행

* 2009년 현재 수산물 관측품목 :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김, 미역, 송어 (양식어업 품목에 국한)

- 수산자원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감안, 어선어업 관측사업은 가격, 수출입, 국내외 시장동향을 중심으로 수행

나.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

□ 수급정책 총괄 시스템과 연계된 정부비축사업의 비축 및 방출 추진

- 민간수매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어가 소득지지 기능을 강화하고, 방출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 달성 추진
- 비축품목, 비축시기, 비축량에 대한 최적모델과 방출량 및 방출시기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추진

□ 매입 및 방출가격 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관관리 등의 낭비적 요소 제거 추진

- 현행 중도매인을 통한 입찰방식의 수매 및 방출 형태를 보다 투명한 가격 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보관료, 운임, 인건비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병행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 구축	- (7월)기본계획 수립	- (11년)연차별 계속 시행
나. 수산물관측 사업의 내실화	- (11월)기본계획 수립	- (11년)연구용역 - (12년)사업추진 및 품목확대
다.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	- (4월)연구용역 추진	- (11년)사업추진

8-2.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1. 추진 배경

□ 최근 씨푸드(seafood)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

- 국민소득 향상 및 식생활 개선에 따라 수산물 소비패턴이 다양화, 고급화
 - 소포장, 즉석편의 수산가공품에 대한 소비 증가 추세

□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는 한계

-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소비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다기능 수산물 소비거점 필요

- 바다와 인접해 있고, 수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유명한 수산물 소비 랜드마크(landmark)가 있음
 - * 호주 시드니 피쉬마켓, 미국 피셔맨즈워프, 홍콩 점보 선상레스토랑 등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수산물 소비 메카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 국산 수산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소비 랜드마크 조성
- 생산자-지자체-중앙정부가 연계한 수산식품 소비촉진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식품 소비 확대 홍보전략 수립

- 연령대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추진
 - (청소년층) 수산물 섭취의 중요성, 국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 (주부층) 다양한 요리프로그램 개발·보급,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식품의 이미지 지속적으로 홍보
 - (청·장년층) 수산식품 안주 개발 및 영양성 등 건강효과 강조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소비촉진 효과 극대화
 - (생산자단체) 자조금 조성을 통한 자율적인 판촉활동 강화
 - (지자체) 향토수산식품 축제 개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수산물 홍보 강화
 - (중앙정부) 종합적인 수산식품 홍보전략 수립, 정책지원 강화
- 실질적인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 전략 마련
 - 신문, 라디오 등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광고매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TV 등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나. 수산식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지 및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
 - 한국수산회와 수협중앙회로 국한된 지원대상 확대 검토
 - * 지원조건 : 국산 수산물의 판매업체로 한정(수입산 판매 제외)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산식품 구매자들에게 포인트 적립제 및 이벤트를 통한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다.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Korea Seafood Landmark 조성

- 불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수산물 테마파크 조성
 - 부산 자갈치시장, 서울 노량진 및 가락시장 등 소비지의 주요 수산물 시장을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소비 랜드마크로 조성
- 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씨푸드 스쿨 운영을 통해 수산물 관리방법, 요리법 등의 강습을 정기적으로 실시

라. 국산 수산식품 단체급식 활성화 유도

- 국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조례 제정 유도를 통해 학교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지원 대책 마련
 - 신청 지자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차액의 일부를 지원
- 국산 수산물의 군납 물량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유도
 -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수산물 선호도를 조사, 어종별 요리법의 보급 및 납품물량 확대 유도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식품 소비확대 홍보전략 수립	- (3월)기본계획 수립	- (12년)시범사업 실시
나. 수산식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 (4월)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업체 심사	- 참여업체 지원 및 감독
다. Korea Seafood Landmark 조성	- (6월)기본계획 수립	- (12년)시범사업 실시
라. 국산 수산식품 단체급식 활성화	- (9월)초등학교 대상 시범사업 추진	- (13년)중학교로 확대

8-3. 수산시장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1. 추진 배경

□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가 가능한 유통시설 기반 확충 필요

-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가 있는 위판장으로 인해 위생적인 유통과정의 부정적 영향 초래
 -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양육·위판 및 단순가공, 소분포장, 배송 등 다양한 유통과정에서의 높은 식품안전성 요구
- * 50년 이상 1개소, 30~50년 14개소, 20~30년 16개소, 10~20년 50개소, 10년 이하 100여개가 있으나, 저온시스템을 갖춘 위판장은 전무한 실정

□ 다기능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지 및 소비지 수산시장 경쟁력 강화

- 대형 소매점 등 대형 구매자들의 구매가 기존 시장이 아닌 직거래와 벤더업체를 통해 이루어져 산지 시장 역할 위축
 - * 벤더는 다품종 소량 도매업자를 말하며, 기존 도매업자가 특정 품목에 전문화된 것과는 달리 여러 품목을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역할 수행
- 소비지 도매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구매 기피 등으로 산지시장에서의 대량출하 수산물의 원활한 집하·분산 기능 약화

2. 정책 목표 및 방향

□ 국산 수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시설 확보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 시설현대화를 통해 양육·위판 및 산지·소비지 판매까지 신선도 유지로 어업인 수취가 보장

□ 위판장 건립시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수협경영정상화 및 어업인 복지 증대 도모

- 어업인의 주 판로기반 시설인 위판장 건립 및 재건축시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해 주고객인 어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 노량진 수산시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등의 현대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위생적 기능 유통시장으로서 대내외 볼거리 제공

3. 세부 추진계획

가. 다기능 수산물 유통시설 조성

- 저온유통시스템을 갖춘 위판장 구축
 - 고등어를 주로 취급하는 위판장은 저온유통시스템이 가능토록 시범 실시 후 필요시 부산공동어시장 등 대규모 위판장으로 확대
- 거점 위판장 조성을 통한 수협 및 어업인 경쟁력 확보
 - 단순 위탁판매장에서 벗어나 자동선별, 단순가공 및 배송 기능을 겸비한 위판장으로 조성
- 씨푸드 타운 및 유통물류센터 조성
 - 도시민을 많이 찾는 지역에는 판매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겸비된 씨푸드 타운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조성

나.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이미지 제고

- 기존 위판장, 공판장 및 도매시장 수산동의 노후시설 보강을 통한 비위생적 유통 요인을 사전에 제거

다. 대규모 수산시장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 공급망 구축

- 소비지 도매시장 및 산지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노량진시장('07~'13), 부산공동어시장('11 이후)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다기능 수산물 유통시설 조성	- (7월)기본계획 수립	- (11년)시범사업 실시 - (12년)연차별 확대
나. 시설개선을 통하여 수산시장 이미지 제고	- (10월)기본계획 수립	- (12년)지원 규모화
다. 대규모 수산시장 현대화(노량진, 부산공동어시장)	- (12월)노량진시장 공사 착공 - (12월)부산공동어시장 기본계획 수립	- (12년)사업추진 및 완공 - (11년)자체 현대화 계획수립

8-4. 수산업 클러스터의 특성화 육성 사업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수산물가공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고비용 발생으로 글로벌 수산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불리한 입장
- 어촌지역의 산업기반 확보와 함께 지역 불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추진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식품산업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의 한계 극복과 농어업과의 복합 및 글로벌 식품산업을 선도할 획기적인 계기 마련 필요

2. 정책 목표와 방향

- 수산물의 생산 특성을 고려, 지역별·품목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 지역별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이용한 거점단지 조성
 - 산·학·관·연의 상호 연계되어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유통, 가공 기능 등의 수산업 기반 존재 필요
 - 지역별·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필요
 - * 경북 과메기, 전북 풍천장어, 강원도 황태, 영광의 굴비 등은 이미 원료의 산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으나 가공 특산지로서의 기능 유지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식품 거점 단지화를 통해 기존의 수산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 확보

- 조직적 규모화, 마케팅·R&D·홍보·대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로 경쟁력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역별·품목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지속 추진

- 특정 수산물의 전국 생산비중이 지역적으로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규모화 있는 거점단지 조성
 - 경북 과메기, 전북 풍천장어, 완도 전북 등 지역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지원

나. 수산물의 수요변화 및 시장 개방화 대응을 위한 제품 개발

- 소비자의 생활 변화로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
 - 맛벌이 부부 증가, 소득 증가, 다양한 식문화 보급, 가족구성원 감소 등에 따른 다양·간편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 거점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식품 거점단지화 지속 추진	- (4월)수산식품 거점단지 장기계획 수립 - (4~6월)2011년도 예산확보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지속 추진
나. 수산식품 발전 방안 모색	- (4~12월)수산식품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4~6월)2011년도 예산확보	-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산식품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제9장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9-1. 수산업 인력 육성

정책지표

- ◆ 어가소득 : ('08) 3,118만원 ⇒ ('14) 3,800만원
- ◆ 수산업 경영인 육성 : ('08) 17,804명 ⇒ ('15) 20,000명
-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 ('08) 0% ⇒ ('12) 50%
-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전복) : ('08) 0% ⇒ ('14) 25%
- ◆ 어촌체험마을 조성 : ('08) 95개소 ⇒ ('14) 112 개소
- ◆ 다기능 어항 개발 : ('08) 3 개항 ⇒ ('14) 13 개항
- ◆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 ('08) 0개소 ⇒ ('13) 15개소

중점과제

- ① 수산업 인력 육성
- ② 어촌어항 특화 개발
- ③ 어가소득 및 어업경영 안정
- ④ 어촌복지 서비스 향상

1. 추진 배경

- 세계화·개방화로 수산업이 위축되고 어가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정예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어가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어촌의 공동화 심화
 - 최근 10년간 어가 인구가 40% 감소, 60대 이상 고령어가 대폭 증가
 - 정예 수산전문·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 수산업계 취업을 기피하고 수산분야 전문대학은 전무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수산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산업·어촌발전 주도
 - 수산분야 전문 인력 및 수산업 경영인 단체 육성·지원
 - 수산계 학교(고교·대학교) 지원 및 인력 양성

3. 세부 추진계획

가.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개발·지원

* 맞춤형 교육 : 종합승선실습, 산업잠수, 산업체 현장교육, 해외인턴·연수 등

- 수산계고교 학생 중 수산분야 정착 희망자를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업과 취업 유도
 - 수산계 고교 내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졸업 후 지속 또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함

□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추진

- 수산계 고교를 대상으로 재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프로어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 참여학교 공동운영 학교(완도수고, 경남해과고, 충남해과고) 등 9개교
- 전문교육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 공통프로그램 중 전문기술 습득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 * 종합승선실습훈련,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취득, 국제교류학습 등
 - 자체프로그램은 학교별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사업 추진
 - * 예산규모 : ('08) 2,300백만원 → ('09) 2,250백만원 → ('10) 2,250백만원
-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계고 육성정책이 “수요부처 중심의 일괄위탁운영(국립화)”에서 “마이스터고 육성(공립화)”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부 중심의 전문계고 특화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부가 학교교육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한국농업대학 내 수산학과 시범운영

□ '10년 수산양식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제반사항 추진

- 입학생(30명) 전문교육에 필요한 교원확보, 모집요강, 커리큘럼 및 예산반영 등 지원('10.2)

□ 수산양식학과 외 어업학과 추가 개설 추진

-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산, 임업, 식품분야 등 농식품 전 분야 정예인력 양성의 세계적 요람으로 육성
 - 가업승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다.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확대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창업어가 후견 확대

- 매년 인턴 30명 이상을 지원하고 창업어가 20명 이상 후견
- 창업어가의 경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라. 수산업 핵심인력 양성지원 확대

□ 정예인력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가 선발되도록 기준 개선

- 수산업경영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인력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10.12)
 - 장기적으로 담보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 추진
- 귀어 귀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교육, 컨설팅, 멘토링, 기술, 창업자금, 주거·양육비 등 지원지침 시행('10.2)

□ 수산업 CEO 등 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 수산업경영인 단체 중심의 실용화교육사업 지원
- 수산신지식인 발굴(10명 내외) 및 단체 활성화 지원
-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등 전문인력 양성 주력

□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지속추진

- 매년 400명 수준의 후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여, 2015년 후계인력 20,000명 달성

마. 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 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기간은 1년, 비용은 개별어가 800만원, 법인 및 단체 1,000만원, 어촌계 2,000만원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20%, 어업경영체 30% 부담
 - 어선 및 양식어가, 유통 및 가공처리,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수출까지 모든 과정
 - '09년 농업 컨설팅 인증업체는 38개소인 반면, 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2개소에 불과
- * 예산지원 현황 : ('09) 5,520백만원 → ('10년) 22,920

□ 현장 수요에 맞춰 컨설팅 사업을 규모별로 운영하되, 개별 농어가 사업량은 축소하고 조직·법인단위 사업 비중 확대

- 농가단위 사업 비중을 60% 이하로 축소하고 조직단위 사업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대규모 조직 50개소 수준)
 - * '11년부터는 조직경영체 컨설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농어가 컨설팅은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조직, 법인 컨설팅은 기업화 촉진 경영, 전략 분야 특화
- 사업점검·평가 기관을 별도 지정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확대	- (4월)취업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시행 - (12월)특성화고 운영방안 검토	- (11년)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2년~) 농식품부 중심의 특성화고 운영
나. 한국농업대학 내 수산학과 시범 운영	- (2월)교원확보 등 학과운영 제반사항 지원 - (7월)어업학과 추가 개설 추진	- (11년) 어업학과 개설 운영 - (12년~) 졸업생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다.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확대	- (12월)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마련	- (11년) 지원인원 확대 - (12년)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라. 수산업 핵심인력 양성지원 확대	- (2월)귀어귀촌 지원대책 마련 추진 - (12월)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 (11년) 귀어귀촌 지원 규모 및 프로그램 확대 - (12년~)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마. 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 (2월)어업경영컨설팅 규모 확대 - (12월)조직단위의 지원 비중 확대	- (11년~)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

9-2. 어촌·어항 특화개발

1. 추진 배경

□ 어촌·어항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어촌다움, 생태·문화자원, 지속가능성 등을 새로운 경쟁력 자원으로 활용
 - 차별화를 통한 어촌다움의 유지 및 다양한 가치 창출
 - 기반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어촌·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 * 어촌·어항개발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개발추진
- 정책고객(대상)을 어업인에서 지역주민, 도시민 등으로 확대

□ 어촌·어항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정책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어촌개발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 어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 일자리 및 어업외 소득원 창출
- 어촌에 적합한 어업경영공동체를 설립하여 어촌의 활력 증진
- 어업인 이외까지 정책대상 확장 등 어촌정책 영역의 확대

□ 어항개발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어항기능 다양화
- 해외어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가. 어촌종합 개발사업

- 1차 산업공간으로 인식되던 어촌을 2·3차 융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
 - 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관광레저형, 어촌정주형으로 유형화하여 개발
-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거점화하고 중심마을에 집중 지원
 -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중심마을에 20% 이상 집중

나. 어촌관광 개발사업

- 어촌에서 체험·휴양을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
 - 어촌 체험마을 112개소 조성('01~'13년)
-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어촌관광모델사업 18개소 개발
 - 어촌·어항 복합공간 7개소 및 어촌관광단지 11개소('04~'13년)
- 어촌관광 및 어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이 달의 어촌 12선' 포스터 홍보,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등
 - 사무장 및 컨설턴트 지원, 우수마을 포상, 홈페이지 개발, 체험학교 운영 등

다. 어업경영공동체 설립 지원

- 공동어장을 이용한 수익증대를 위해 어촌에 적합한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 마련

-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및 체험마을 50개를 마을어업회사로 설립·육성

다. 어항개발

- 어항시설의 지속적 확충(기본사업)
 - 미 완공 어항에 대한 집중투자로 '17년까지 어항 완공률 제고 ('09년 40% → '17년 56%)
 - 어선안전 수용률 제고 및 어항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속 추진 (안전수용률 : '09년 73% → '17년 81%)
- 노후어항 기능 제고(정비사업)
 - 정비계획이 수립된 국가어항 44개항 중 24개항 완료('13년), 어항기능을 제고하고 지구온난화로 설계과 상승된 기존 어항의 시설 보수·보강
- 다양한 기능의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
 - 다기능어항 13개 중 미완공 8개항을 완공('13년까지)
 - '12년 다기능어항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낚시 공원형, 자원 조성형 등 특화된 어항개발 추진

라. 新 어항 종합개발

- 전국의 어항을 개별적 개발에서 어항·어장·어촌과 연계한 광역 단위 어항개발로 전환
 - 전국에 산재된 국가·지방·어촌정주어항의 기능을 광역단위로 재정비 하고 배후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추진
 - 광역권내 거점어항과 중·소규모 테마별 보조어항 조성

- 거점어항은 단순어항기능 외 유통·가공·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 방파제·물양장 등 기반시설은 정부중심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유통·관광 등 상업시설은 민간·지자체 개발

마. 해외 수산업 거점어항 개발 및 수출어항 개발

- 해외 연안국에 수산업 거점어항 및 수출어항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원양어선의 입어권 등 자원 확보
 - 남태평양·서부아프리카 등 주요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09년)
 - 어항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연안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착수('10년~)
- 방파제 등 공공시설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고, 가공공장 등 수익시설은 민간투자로 개발

4. 추진 일정

구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어촌종합개발	- 18권역 사업 추진	- (11~13)58권역 사업 추진
나. 어촌관광개발	- 13개소 사업 추진(계속) · (10월)관광모델개발 · (3월)체험마을조성	- (11~13)16개소 사업추진 · 관광모델개발 9 · 체험마을 7
다. 어업경영공동체 설립	- (상반기)모델개발 - (하반기)시범회사 설립	- (12)마을어업회사 50개 설립
다. 어항개발	- (3월) 국가어항 설계과 상향조정 용역착수 등	- (13) 기존어항(81개) 보수 보강 계획수립 및 공사 추진
라. 신어항 종합개발	- (3월)연구용역 착수	- 신어항개발 모델 선정 및 시범사업 착수
마. 해외수산업 거점어항 및 수출어항 개발	- (3월)우선 지원대상국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	- 차관 지원 결정 및 사업 착수

9-3. 어가소득 및 어업경영 안정

1. 추진 배경

□ 심화되어 가는 어촌-도시간의 소득격차 및 수산물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응하여 어가소득 안정화 방안 필요

-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분야 직불제도와 유사한 대책마련 필요
 - 농업분야는 UR 이후 1997년부터 직불제를 도입하여,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2종 직불제로 통합·개편 추진 중임
- 일시적 경영위기에 따른 어가파산 방지를 위한 안전망 장치 마련
 -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유류비 등 생산비용의 상승, 지진·재해 등으로 인해 어가 급락 방지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어업재해 등으로 불안정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는 방안 마련

- 수산업 관련 보험 및 공제제도의 활성화 및 확대 운영을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 도모

< 수산직불제 개요 >

-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인 소득보조의 일종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자원 및 무역 왜곡적인 측면을 줄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출에 의한 어가소득 보전
- 수산직불제의 목표
 -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응한 어가소득 안정화
 -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 수산직불제 지원 원칙
 - 어업인 노력에 대한 대가성 지원, 생산중립적 사업에 대한 지원
 - 국제규범에 적합한 지원(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 규범 충족)

2. 정책 목표 및 방향

□ 수산직불제 도입으로 어가소득의 안정화 도모

-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통해 공익기능 증진 및 어가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형 수산직불제로 경영위험 완화
- 농가 수준의 어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

□ 재배보험 확대 운영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수산인 안전공제 확대

□ 어촌계 선진화 방안 마련·추진

- 어촌계에 '경영'개념 도입하고 수협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

3. 세부 추진계획

가.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추진

□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종류

- 수산부문에서 자원남획을 조장하지 않고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직불제로서
 -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 개선, 어로문화의 계승, 지역사회 유지,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의 가산형 직불에 해당
 - 농업의 경우 고정형 직불과 가산형 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통합·개편

<표> 수산직불제 추진 로드맵

수산직불제 명칭		'10	'11	'12	'13	'14~
공익형	조건불리지역	도입방안 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시범사업	본 사업	본 사업
	휴어		도입검토			
	어장휴식		도입검토			
	어촌경관		도입검토			
	친환경어업		도입검토			
경영안정형	도입방안 연구	도입검토	도입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나. 경영안정형 수산직불제(어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어가의 경영위험을 막기 위한 어가소득 안정대책 마련 필요

- WTO협상 및 FTA 확대에 의한 수입 수산물의 가격하락, 유류비, 사료비 급등에 따른 생산비의 폭등으로 어업소득의 하락에 대비한 어가소득 안정대책 마련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FTA로 인한 품목별 피해대책을 어가단위의 소득지원으로 전환하여 피해대책의 실효성을 높임

다. 어업경영정보 등록 추진

□ 어가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 어가의 경영정보 우선 파악 필요

- 기초 데이터 파악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조속히 실시

□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 용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요

- 어업경영체의 경우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 등

라. 재해보험 확대 운영

□ 어선원 보험 내실화

- 보험료 부담완화, 보험서비스 강화 등 어선원의 보험 내실화
 - 어선원보험가입률을 2012년까지 84%(당연가입대상자 기준) 수준까지 제고
 - '09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치 80%, '10년부터 누적결손금 623억원 국고출연 추진
- 임의가입자 모집수수료 신설, 회원조합 취급수수료 상향조정(7→8%) 등 소형어선에 대한 가입률 제고(어선원 보험)
- 장기요양환자 및 어선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점검 등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을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제고
 - '0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치 10%
 - *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폭풍·해일·적조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 양식시설물 : 태풍·폭풍·해일
- '09년까지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본 사업 실시를 위한 품목확대 연구사업 추진
 - * '10년 이후 해상가두리(우럭), 전복, 굴, 김 등으로 품목확대 추진

□ 국가 재(再)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
 - 손해율 14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수협)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하여 20%를 수협이 보유
- 거대재해 발생에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재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추가적인 국고출연 추진

□ 수산인 안전공제 확대

- 어업인의 조업 중 상해를 보장하는 “수산인 안전공제”의 조기 연착륙 추진
 - 2012년까지 가입률 50% 목표
 - '09년에는 20%(15,600건)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가입·홍보 전개
 - * 국고지원 범위 : 가입자당 1구좌 공제료의 50% 지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대상자 및 임의가입한 자 제외

마. 어촌계 선진화

□ 어촌계에 '경영' 개념 도입, 어촌계장 전횡 방지

- 어촌계장 등 임원선출 방식 개선
 - 선거 또는 지구별 수협 조합장의 임명 중 자율 선택하도록 전환
 - 어촌계장 임기는 지구별 수협 조합장과 같이 1회 연임으로 제한

- 어촌계 정관(고시)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고시)을 개정

□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

- 설립·해산권과 지도·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방안 추진
- 시장·군수의 어촌계 설립·해산 시 지구별수협의 의견 반영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공익형수산직불제 도입추진	- (12월)조건불리직불제 기본방침 마련	- 시범사업 실시 - 여타 직불제 도입 검토
나. 경영안정형 수산직불제 도입	- (연중)어가단위소득 안정제 도입방안 연구	- (13년)도입방안 마련 및 도상연습 실시
다. 어업경영체 등록 추진	- (12월)기본계획 마련	- (11년)경영체등록 추진
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확대	- (2월)공청회 개최 - (4월)전북시범사업 실시	- (13년)불락, 굴, 김 등 사업 확대
마. 어촌계선진화 방안 추진	- (4월)어촌계 선진화 방안 마련 - (9월)법제도 정비	- 어촌계 발전을 위한 소득원 개발 및 대책수립 추진

9-4. 어촌 복지 서비스 향상

1. 추진 배경

- '05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어촌 복지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및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 마련('09.12)

2. 정책 목표 및 방향

-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구현
 - 복지정보 포털 구축으로 어업인 복지정보 서비스 추진
 - 어업용기자재 서비스 확대 및 임대사업 도입
 - 복지정보 포털운영 등 어촌복지에 수협이 역할 확대
- 취약 어촌복지 개선
 - 어부증 마련 및 도서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 어촌의 의료접근 시간단축 및 방과 후 교실운영 확대실시

3. 세부 추진계획

가. 어촌 복지 강화

-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활성화

-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현실화, 신규 콘텐츠 및 홍보 강화
- 어업인 일자리센터 운영('09, 4개소)
 - 오프라인 지원센터, 지역수협 등을 활용하여 대면상담 및 입력대행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공통)

- 어촌서비스 기준(RSS : Rural Services Standard)은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 항목과 목표수준 설정
- 주민조사 및 토론, 사례지역 조사,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확정하며 절실한 항목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
- 서비스기준 항목과 내용, 주체의 다변화 및 유연화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항목 및 기준 보완
 - 주민들의 수요와 정책여건 등을 감안, 기준항목 및 목표수준 조정
 - 어촌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 개선(공통)

- 어업특성 고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대상액 확대
 -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 시 기초재산 공제액 특례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 개선
 - 빈곤 어업인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립

□ 어촌 보건·의료 지원 확대(공통)

- 고령어가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인하
 - 읍·면 소재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인하 검토

○ 건강보험료 지원개선(공통)

- 어업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어촌 교육지원 확대(공통)

○ 어촌유학 프로그램 신설

- 도시학생이 어촌에서 장·단기 체류 및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촌유학 프로그램 마련
- 교과과정 중의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참여확대 유도

○ 양육비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을 상향조정 및 중장기적으로 무상보육 실시

○ 대입특례 확대

- 수도권 대학 어촌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추진 및 어촌학생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취약농어가 지원 내실화

○ 어가가사 도우미 지원

-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입원 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 노후주택 개량지원

- 자원봉사, 농어촌주택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고령어가 거주 노후주택 고쳐 주기

○ 공동체형 어민 홈 조성

- 독거노인, 고령어민이 모여살 수 있는 집단거주 주택 마련

□ 어촌복지 사각지대 개선

○ 어부증

- 어업활동 관련 '어부증' 범위 구체화 및 의료비 지원방안 검토

○ 도서어촌의 의료서비스 확대

- 도서어촌의 의료서비스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 어가의 의료기관 접근시간 단축

- 농가의 2배 이상 소요되는 의료기관 접근 시간의 단축방안 검토
- 현재 어가의 약국 의존도가 의료기관 보다 높아 의료기관 진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방과 후 교실 운영 활성화 및 확대

- 방과 후 교실운영 서비스(현재 14%)를 농촌 수준(72%)으로 향상

나. 어업인 기자재 서비스 확대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확대 서비스

- '08년 시범사업(88개 어촌계)을 '09년 전국 취약 어촌지역으로 확대 실시(202개 어촌계)
- '11년까지 취약 어촌지역 전체인 310개 어촌계, 60개소로 확대

□ 양식장비 임대사업 도입 추진

- 양식장비 임대 활성화로 장비이용률 제고 및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 시범사업 실시 후 '12년까지 15개소 임대사업소 운영
- '09년 임대사업 대상자로 전남도와 경기도 선정(사업소당 15억 지원, 국비·지방비 각각 50%)

○ 양식장비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임대사업소 운영

4. 추진 일정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가. 수산장비 임대사업	- (2월) 임대사업소 수요 재 조사 - (7월) 국고 보조사업 현장 점검	- '13년까지 15개소로 확대
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2차 기본계획 추진	- '10년도 세부추진과제 시행	- '14년까지 본 계획 이행

제3편

정책지원 체계의 구축

제10장 재정지원 계획

□ 재정지원 규모

-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 1,223억원 (평균 1조4,245억원/년)
 - * '10년은 확정, '11~'13년은 국가재정 운용계획('09~'13), '14년은 '10~'13년 평균증가율 1.9%를 적용하여 추정
 - * 실제 규모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10~'14) 및 해당연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

단위 : 억원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71,223	13,880	13,878	14,383	14,403	14,679

□ 재정지원 방향

-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의 도래,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재정지원 방향 조정
- 증대시킬 분야
 -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DDA 타결 이후에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 (어선 건조 등, DDA 타결시까지 한시적 지원)
 - 저탄소 녹색 성장 촉진 (유류절감 장비 개발·보급, 저탄소 기술 개발,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 조성 등)
 - 신 성장동력 육성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경영 안전망 구축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직불제 등) 등
-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분야
 -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한시적 지원)
 -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 지원 등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사업 등
- WTO/DDA 협상 결과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 간접지원으로 전환

제11장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1. 수산 거버넌스 개편

가. 수협 선진화

- 수협의 경영구조와 경영부실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 미흡
 - 중앙회 공적자금(1조 1,581억원) 및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2,675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지연 및 일부 수협 부실 심화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자본으로 인정받던 공적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 비율이 급락하는 등 구조적 문제
-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자율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협법을 개정하고 고강도 구조조정 등 “新 수협운동” 추진
 - 중앙회 급여 감축 등 구조조정과 연수원 등 자산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자체 상환재원 최대한 확보
- 중앙회 인력·조직 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
 - 조직·인력 10% 축소, 경상경비 10% 절감,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사업부문간 급여체계 개편 등
 - 수협법 개정 이후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
-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및 부실수협 통폐합 추진
 - 부실수협은 합병·계약이전 등 통폐합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수협은 자금지원 및 MOU 체결로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 부여

나. 수산자원조성 전담조직 설립

- 기존 조직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여건 대응에 한계
 - 수산자원 조사, 평가, 관리, 조성 등 업무가 중앙정부, 지자체, 수산과학원에서 분산 수행되어 효율성 저하
 -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약 3배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변동이 매우 크므로, 수산자원 조성·관리에 있어 서도 고도의 전문성 필요
-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와 연계하여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담조직 설립 추진
 - 수산과학원의 기능 중 수산자원 조성·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전담법인으로 전환
 - 국가 사무 중 사업성이 강하나 직접 민간으로 이관이 곤란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크거나 일관성 있게 추진이 필요한 사무를 전담
 - 국가연구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접목
 - 주요 기능
 - 수산자원 관리 : 인공어초 시설관리,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
 - 수산자원 조성 :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종묘 방류 등
 - 수산자원 조성·관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료관리 등
 - 추진일정
 -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1단계)
 - '10년 9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정관 작성, 인력 구성 등 추진(2단계)

다. 어업지도사무소 개편

□ 국내의 어업질서 및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 어장 경쟁이 심해지고, 불법어업 및 조업갈등 다양화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어업관리와 조업활동 지원 등 대어업인 서비스 기능의 개선 필요

□ 단속위주에서 어업관리 및 수산자원회복 정책 지원, 어업인 지도 홍보 및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 유도 강화

-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 * 해상위주 1차원적 단속한계를 보완, 육상단속 전담반 구성 등 입체적 단속시스템 구축
- 대어업인 홍보, 수산자원 명예감시선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를 유도하고 어업인과 파트너십 강화

□ 어업 지도·단속 체제 개편으로 해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어업지도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 * 권위적이고 단속중심의 기관 명칭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이미지 제시
- 지도단속 조직을 동·서·남해 3개 해역별 관리체제로 확대개편
 - 행정효율, 인원·시설수요 충족 여건, 업무공백 최소화, 조직의 미래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개편 방안 마련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등 새로운 수산정책 지원

2. 법령 제·개정

가.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

□ 제정 사유

-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계획된 감척추진 곤란
 - 유가안정 및 어획상황 개선에 따른 감척수요 감소(특히, 어획강도가 큰 대형·저인망 업종)에 따른 대처 미흡
 - 급변하는 국내여건 및 국제어업 환경 대응에 한계
- 어선어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어업 경영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어선 척수를 줄이거나, 어업을 정비 및 재편
- 주변국과 어업협정(한·일, 한·중) 이행,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협정, FTA체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의 특별감척 근거 마련
- 업계 자율적 경영여건을 감안한 자율감척제도 도입
- 감척시 인센티브, 잔존자 부담제도 마련 등

□ 추진일정

- 법제처 심사 : '10. 9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 '10. 12
- 시행(예정) : '11. 하반기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 제정 사유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로 대두
-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 내용

-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종류, 체장 등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
-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명령 도입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 도입
 -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통하여 낚시터 개설 가능
-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 추진일정

- 국회 제출 : '10. 2월
- 시행(예정) : '12년

다. 수산업법(개정)

□ 개정 사유

- 국내외 수산업 여건 변화에 부응한 수산업법체계 정비 필요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연안어업관리 방안 마련 및 어업 간 갈등 및 분쟁예방을 위한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 근거 및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기능강화 및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 어업허가 처분 시 해당어업에 대한 포획·채취물의 종류 지정 근거 설정 및 그 외어종의 부수어획(혼획) 허용방안 마련
- 어업허가 일제정비 방안 도입

□ 추진일정

- 전문연구기관에 수산업법 전문개정 용역연구 : '10~'11
 - 주요개정 내용별 입법방향 설정 및 평가
 - 수산업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 '02년 이후

라. 수산자원관리법(개정)

□ 개정 사유

- 지구온난화 등의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 필요
-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조성법인 설립·운영 및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수산자원관리조성재단(법인) 설립·운영
- 2009.4.22 개정된 「수산업법」의 기르는 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조성재단 설립
- 수산자원조성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수산자원관리조성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 국회 제출 : '09. 12
- 상임위 등 상정 : '10. 2
- 시행(예정) : '10. 하반기

마.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개정)

□ 개정 사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정부조직개편 후속 법률 선진화를 위한 정비방안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생물 진료부분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할 필요
- “법제처”로부터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내용 중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 필요

□ 주요 내용

- 「기르는어업 육성법」상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수산생물 진료와 관련된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 등 정비
-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 등 정비

□ 추진일정

- 국회 제출 : '10. 5
- 상임위 등 상정 : '10. 6
- 시행(예정) : '11. 하반기

바. 어장관리법(개정)

□ 개정 사유

- 어장의 범위를 확대(면허어업, 종묘생산·구획어업+허가어업)하여 효율적인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 실시 필요
-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관리 도모

□ 주요 내용

- 어장관리법 정의 중 어장의 범위를 면허 또는 허가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으로 확대
-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허가·지정 시 농식품부 장관의 어장 이용협의 실시
- 양식어장 환경영향 평가제 도입으로 면허어장 재개발 시 반영
-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협회에서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일정

- 국회 제출 : '10. 10
- 상임위 등 상정 : '10. 11
- 시행(예정) : '11. 7

참고

2010년 수산업·어촌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년 우리 수산업 · 어촌의 모습 (KMI)

1. 2014년 전망을 위한 가정

□ 중기 거시경제 변동

-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09~'11년간 조정을 거친 후, '12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가정

□ 수산물 수급

- 국내 수산물소비는 지난 8년의 평균 증가율 5.3%보다 점차 낮아질 것으로 가정
 - '08~'12년은 5.0%, '13~'14년은 3.0%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전기 이월 재고는 '05년~'08년 평균인 562천 톤으로 가정
- 수출입은 향후 수산물 교역 구조의 고도화를 반영
 - '09~'14년 중 수산물 수출량은 대표품목 수출 전략화 사업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6.0% 증가 가정
 - 같은 기간 중 수입량은 연평균 3.0%씩 증가 가정
 - 수출 품목의 전략화 및 가공용 원재료 수입 확대 등으로 수출단가는 회복되고 수입단가는 안정되는 것으로 가정

□ 정부 정책의 영향

-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양식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자원회복에 따라 연근해 생산량도 소폭 증가 전망
- 원양 생산도 정부의 원양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12년 이후 회복 전망

2. 2014년 수산업 관련 주요 지표

□ 수산물 수급

○ '08년 대비 '14년 수산물 소비는 2.5%, 생산은 10% 증가하여 수급구조가 개선되고 자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수산물 자급률 전망 : ('08) 79% → ('14) 84%

-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는 경제 침체의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07~'08),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경기 회복 등에 따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8~'12년 연평균 0.5%, '13~'14년 0.3% 씩 수산물 소비 증가 전망

○ 수출과 수입은 물량 기준 각각 42%, 19% 증가 전망

- 대 중국 수출 확대전략 등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은 매년 6%씩 (금액 기준으로는 8~10%) 증가하여 '14년 24.6억 달러 전망

- 국내 생산 증대에 따라 수입은 증가 폭이 둔화되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08. 15억불 → '14. 6억불)

<표>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전망

단위 : 천 톤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국내소비	4,621	4,280	4,366	4,392	0.5%	0.3%
수출	1,211	1,450	1,831	2,057	6.0%	6.0%
이월	618	567	228	362	-20.4%	26.0%
계	6,450	6,113	6,425	6,811	1.3%	3.0%
생산	3,271	3,360	3,460	3,700	0.7%	3.4%
수입	2,604	2,135	2,403	2,549	3.0%	3.0%
재고	575	618	562	562	-2.4%	0.0%

자료 : 농림수산물부. 전망치는 KMI 작성

<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수 출	1,225	1,446	2,014	2,468	8.6%	10.7%
수 입	3,056	2,954	2,884	3,059	-0.6%	3.0%

자료 : 관세청. 전망치는 KMI 작성

□ 수산물 생산

○ 어업 구조조정, 맞춤형 자원관리, 신 성장동력 개발, 어선 신조, 해외진출 확대 등에 힘입어 수산물 생산 증가 전망

* '12년까지 연평균 0.7%, 이후 '14년까지 3.7%씩 증가 예상

- 연근해어업은 매년 1~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

- 양식어업은 평균 2~3%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참치 등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원양어업은 해외어장 축소 등에 따라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나, '14년에는 70만 톤 수준 회복 전망

<표> 어업별 생산 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원 양	709	665	650	700	-0.6%	3.8%
연근해	1,152	1,285	1,350	1,400	1.2%	1.8%
양 식	1,385	1,382	1,430	1,560	0.9%	4.4%
내수면	26	29	30	40	0.7%	15.5%
전 체	3,275	3,363	3,460	3,700	0.7%	3.4%

자료 : 농림수산물부. 전망치는 KMI 작성

○ '14년 370만톤 생산을 위해서는 원양어선 304척, 연근해 어선 5만 척, 양식어장 12만 8천 ha 필요

- 적정 수준의 원양어선세력 : 304척(해취어선 제외)
= 70만 톤(원양어업 생산 목표) ÷ 2,300톤(척당 평균 어획량)
- * '14년 원양어선 척당 평균 어획량은 어선 신조 및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08년 1,751톤보다 56% 증가한 2,300톤이 된다고 가정
- 적정 수준의 연근해어선세력 : 50,000척
= 140만 톤(연근해어업 생산 목표) ÷ 28톤(척당 평균 어획량)
- * '14년 연근해어선 척당 평균 어획량은 구조조정 및 자원 증강사업 등의 영향으로 '08년 23톤에서 24% 증가한 28톤이 된다고 가정
- 적정 수준의 양식어장 면적 : 128,764ha
= 156만 톤(양식어업 생산 목표) ÷ 12.1톤(ha당 평균 생산량)
- * '14년 양식어장 ha당 평균 생산량은 어장환경 개선 및 기술개발 등의 영향으로 '08년 10톤에서 19% 증가한 12톤이 된다고 가정

□ 부가가치

- '14년 (명목) 어업부가가치는 '08년 2조 1,740억원에 비해 8.9% 증가한 2조 3,68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실질 어업부가가치는 '08년 2조 1,42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2조 900억원이 될 전망
- 시장개방 확대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어업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업생산 금액은 감소 전망
- 부가가치율은 증가 전망
- * 어업 부가가치율 전망 : ('00) 52.9% → ('08) 34.2% → ('14) 40.0%

<표> 어업생산 및 부가가치 지표 전망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2-'14
어업생산량(천톤)	3,275	3,363	3,460	3,700	0.71%	3.41%
어업생산금액(명목,10억원)	5,752	6,355	5,882	5,920	-1.92%	0.32%
어업생산금액(실질 ²⁾ ,10억원)	5,752	6,262	5,477	5,226	-3.30%	-2.31%
어업부가가치(명목,10억원)	2,141	2,174	2,235	2,368	0.70%	2.93%
어업부가가치(실질,10억원)	2,141	2,142	2,081	2,090	-0.72%	0.22%
어업부가가치율 ¹⁾	37.2%	34.2%	38.0%	40.0%	2.66%	2.60%

주 1) : 어업부가가치율 = 어업부가가치/어업생산금액 (%)

주 2) : 실질치는 2007년 기준

□ 어가소득

- 어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14년에는 3,472만원 전망
-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어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14년 실질 어가소득은 3,065만원으로 '0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
-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어업수입이 어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44%에서 '14년 40%로 감소 전망

< 표. 2014년 우리 수산업·어촌의 모습 >

<표>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어가소득(명목)	30,668	31,176	31,931	34,721	0.6%	4.3%
어가소득(실질)	30,668	30,721	29,731	30,652	-0.8%	1.5%
어업소득(명목)	11,975	13,801	13,411	13,889	-0.7%	1.8%
어업소득(실질)	11,975	13,600	12,487	12,261	-2.1%	-0.9%
어업소득/어가소득	0.39	0.44	0.42	0.40	-1.3%	-2.4%

구 분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수산물 소비(천톤)	4,280	4,366	4,392	0.5%	0.3%
수산물 생산(천톤)	3,360	3,460	3,700	0.7%	3.4%
- 원 양	665	650	700	-0.6%	3.8%
- 연근해	1,285	1,350	1,400	1.2%	1.8%
- 양 식	1,382	1,430	1,560	0.9%	4.4%
- 내수면	29	30	40	0.7%	15.5%
수 출	1,446	2,014	2,468	8.6%	10.7%
수 입	2,954	2,884	3,059	-0.6%	3.0%
어업생산금액(명목,10억원)	6,355	5,882	5,920	-1.92%	0.32%
어업부가가치(명목,10억원)	2,174	2,235	2,368	0.70%	2.93%
어가소득(명목, 천원)	31,176	31,931	34,721	0.6%	4.3%
어업소득(명목, 천원)	13,801	13,411	13,889	-0.7%	1.8%
어업소득/어가소득	0.44	0.42	0.40	-1.3%	-2.4%
어가수(호)	71,046	70,000	68,200	-0.4%	-1.3%
어가인구(명)	192,341	182,400	174,000	-1.3%	-2.3%
어업종사가구원(명)	118,879	107,300	101,850	-2.5%	-2.6%

□ 어가인구

○ 귀어대책 수립 등 어가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이어(離漁)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14년 어가수는 68,200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어가인구는 '08년 19.2만명에서 '14년에는 17.4만명으로 감소
- 어업종사가구원수는 '08년 11.8만명에서 '14년 10.1만명으로 감소

<표> 어가수 및 어가인구 추이와 전망

구 분	2007	2008	2012	2014	증감률(연평균)	
					'08-'12	'13-'14
어가수(호)	73,934	71,046	70,000	68,200	-0.4%	-1.3%
어가인구(명)	201,512	192,341	182,400	174,000	-1.3%	-2.3%
어업종사가구원(명)	122,916	118,879	107,300	101,850	-2.5%	-2.6%

첨부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추진

1. 추진배경

- ◇ 『自律·自立·自强』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하여 수산 재도약 발판을 마련
 - 어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역점 추진

□ 수산업에 대한 희망적 비전 부족

- 수산업은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어려움을 강조하여 비전을 상실
 - 어장오염·축소, 불법어업 및 자원감소 등으로 어업활동 위축
 - WTO/FTA 등 시장개방, 수입 확대에 국내 생산기반 약화

□ 과거 수산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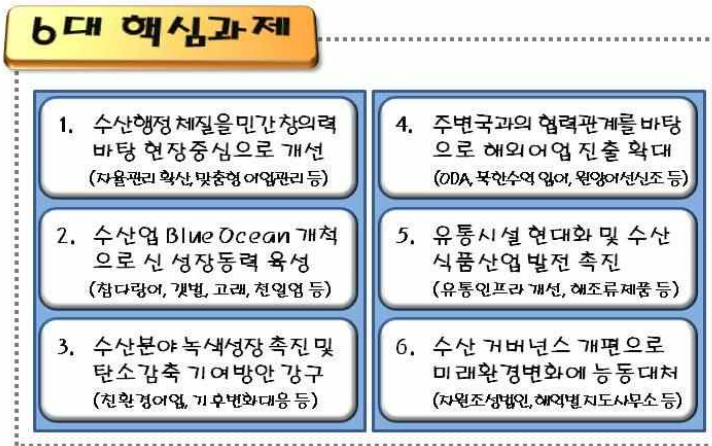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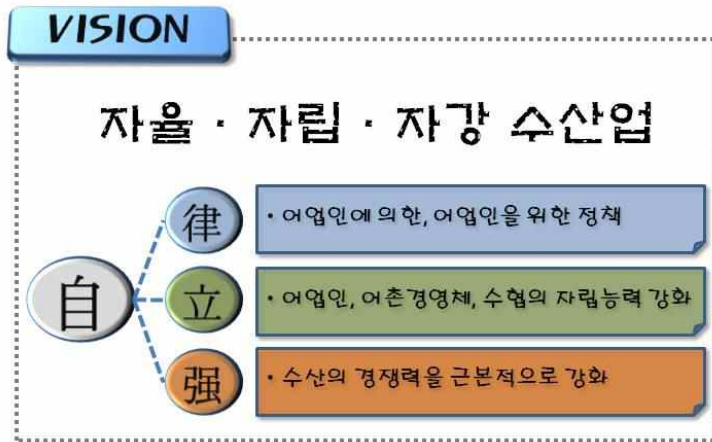
- 각종 수산업 진흥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위축
 - * GDP 대비 어업부가가치 비중(%) : 0.45('99) → 0.32('02) → 0.24('08)
 - * 수산물 자금률 (%) : 106('99) → 64('02) → 79('08)
- 수산업의 업종간·지역간 갈등과 분쟁이 고착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어업인 상호간 갈등 심화

□ 새로운 개념의 수산정책 필요

- 어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양산업의 프레임 극복

- 어업인 자율과 창의력에 기초한 『30대 프로젝트』 추진
 - 수산업, 어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블루오션 개척
-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개념으로 수산행정 진일보

2. 新 수산정책 비전 및 6대 핵심과제



3. 30대 프로젝트 주요내용

[전략 1] 수산행정 체질을 현장중심으로 개선

1.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1
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체계 개편 2
3.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발전 3
4. 불법양식어업 정비 대책 4
5.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5
6.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도입 6
7.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7

[전략 2] 수산업 Blue Ocean 개척으로 신 성장동력 육성

8. 어구 인증제 도입 8
9.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9
10. 외해양식 발전 방안 10
11. 친환경 양식 활성화 11
12. 新 갯벌어업 추진 12
13. 고래자원 활용 13
14. 내수면 어업 진흥 14

[전략 3] 해외어업 진출 확대

15. 수산분야 ODA 전략적 추진	15
16. 해외 수산자원 개발 촉진	16
17. 원양어선 신규 건조	17
18. 동해 북측수역 입어 추진	18
19.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19

[전략 4]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20. 부산국제도매시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발전 방안	20
21. 산지위판제도 개선 추진	21

[전략 5]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22. 어촌활력 증진 및 어촌계 선진화 방안	22
23. 어촌관광 활성화	23
24.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24
25.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25

[전략 6] 수산 거버넌스 개편으로 미래변화에 능동 대처

26. 어업정책보험 재정 건전화	26
27.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27
28. 수산업 지도단속 체제 개편	28
29. 수산보조금 개편	29
30. 어장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30

1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가 현황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01.2) 이후 '09년 758개(56천명) 공동체가 참여(전체 어촌계의 38%)
-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의식 확산 및 소득향상 공동체 증가(매년 8~9% 증가)

나 문제점

- 어촌계 참여부족(38%)으로 변화주도 중심세력 역할 미약
 - 잘하는 공동체만 계속 지원하여 지원받지 못한 공동체 의욕 상실
- 정부의존 공동체의 자율화 미흡, 변화주도 중심세력 확대 필요
 - 공동체 지도자의 고령화 및 지도력 약화,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

다 추진계획

- 공동체 신규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법 개편
 -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에 자원관리·조성 보조금 지원 검토
 - 일정기간 계속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마을 어업 회사로 전환
 - 우수공동체는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및 내실화 유도
- 참여공동체는 신규·개발·성숙으로 구분하여 지원·관리
 - 신규공동체는 민간컨설턴트를 통해 자원관리에 집중토록 지도
 - 개발공동체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동체 운영체계 정립
 - 성숙공동체는 어업외 사업까지 확대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
- 공동체 자율규약을 자원관리·어촌경영으로 강화하고, 실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적 평가에 반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의 희망에 의존하여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계획적인 감척추진 곤란
 -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 감소 및 감척 폐업지원금(50%)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 부진
-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수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분과위에서 논의('09. 5.12, 5.19, 6.22)
 -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참여조건 완화 및 구조조정 방안 논의
- “연안감척 투자효과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0.2.5)
-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추진 관련 신수산 정책포럼 및 연구용역 발표회(11.10), 토론회 개최('10.2.3)
 - * 어업 구조조정 법·제도 개선방안 Kick-off meeting(9.10)

다 추진계획

- (가칭)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10.9월 국회 제출)으로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 특별법(안) 주요내용 〉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과 어업 질서 유지로 어선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어업경영체 육성
- 단기적인 감척제도 활성화, 업계 자율적인 참여방안 지원
- 특별감척 필요성, 상시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방안 등
-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불참 어업인에 대한 잔존자 부담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업종 내 자발적인 감척 유도

가 추진배경

-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내용의 준수와 연근해 어업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관리체제 구축
 - 연안국의 EEZ내 수산자원 관리, 한일·한중 어업협정 이행 및 자원 남획 등에 부응하는 TAC 제도 강화 필요

나 문제점

- '06년 도입된 어종별 TAC 제도의 정착방안 필요
 - TAC를 지속적 자원관리 방법이 아닌 규제수단으로 인식하여 참여 어업인의 할당량 미 준수
 - 어획의 변화에 따른 TAC 산정 및 탄력적 적용 문제
 - 읍서버 부족, TAC 어획량 보고 누락 등으로 자원조사 기능 약화

다 추진계획

- 한국형 TAC 관리정책의 체계적 기반 마련
 - Trigger level(예방적 조업 한계량)을 실시, TAC 초과 사전 예방
 - 금어기 자체 설정 등 자율관리 조건부 할당량 증대 방안강구
 - (예) 꽃게, 오징어, 참홍어 → 기후 온난화에 능동적 대처
 - 어구 실명제,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부여
- TAC 제도 내실화 도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따른 TAC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10.4)
 - TAC 할당량 미배정, 어획량 허위보고, TAC 판매장소 미준수자 처벌 강화
 - 과학적·체계적 자원조사·평가 강화 및 자원관리기법 개발('10.10)

4

불법양식어업 정비 대책

가 필요성

- 불법양식에 대한 자성과 강력한 어장정비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 증가
 - 면허(단속책임) 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강력한 정부대책 요구

나 문제점

- 무통계 불법양식 조기 정비로 양식어업 통계 및 정책의 신뢰성 확보
 - 불법양식으로 인하여 위성 관측자료의 신뢰저하 및 수급정책 오류 발생
- 웰빙·안전 소비패턴에 걸맞는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관리체계 구축
 - 불법양식으로 인한 과잉생산, 품질 저하에 대한 관리

다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불법양식단속 공권력 확립
 - '불법양식어업 정비 5개년계획' 수립('10.1), 2010 불법양식어업 지도단속 계획 수립('10.2), 불법 양식어업 정비·단속 전국 평가대회 및 민관 합동연찬회 개최('10.2)
 - 양식어장 정비시 자율관리방안 도입 적극 추진
 - 양식장 4대 병폐 근절 자율협의회 구성·운영('10.3), 대표조직의 자율 조정권 확대방안 강구('10)
 - 현장 실정에 맞게 양식어장 면허 및 관리제도 제·개정
 - 김양식 활성처리제 지정 확대 및 용기 수거절차 강화, 불법행위자 위주 행정처분 개선('10), 양식어구 실명제 도입·양식어구 설치신고 및 폐 양식 어구처리 거래제 도입('10~'11)
 - 과학적 양식장 관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어장기점 위치발신(GPS)표시 부표설치·위성관측 식별용 어장부표정비 ('10~'11), 친환경 어장정비 생태지도 시스템 구축('10~'11) 등

5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가 추진배경

- 전 해역 일률적인 조업규제로부터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으로 어업관리 제도의 선진화 필요
 -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역량 성숙으로 어업인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 제도 도입

나 문제점

- 지역별 해양환경 특성에 따라 어구·어법의 다양한 양상을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통제로는 어업발전 및 관리에 한계
 - 지역에 한정된 어업이나 지역단위에서 가능한 어업을 중앙정부의 일률적 관리에 따라 추진 곤란 사항 빈발
 - 수온상승 등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어업형태 및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 발생

다 추진계획

- 지자체 연안어업관리 권한강화 방안 마련 시행
 - 중앙·지방정부 역할과 단계별 추진절차 및 방법 등 계획수립('10.2)
- 어업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의견수렴 및 대상과제 확정
 - 지자체에서 광역단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 발굴('10.5)
 - 어업제도개선협의회 과제검증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최종확정('10.6)
-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이양을 위한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 및 연안어업 표준 관리규정 제정
 - 표준관리규정 제정('10.9) 및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10.12)

6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도입

가 현황 및 필요성

- 한정된 어장에 다양한 업종의 경쟁 조업으로 인한 업종 간 갈등과 분쟁 불가피
 - 현행 지역단위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해역별 분쟁조정을 위해 별도 어업조정기구 도입 필요

나 추진경과

- 어업제도개선협의회 개최('09.5.29)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훈령 제95호, '09.7.15)
- 동해('09.10.23) 및 서해('09.11.3)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 충남 및 경남지역 멸치분쟁, 외줄낚시 미끼공급, 자리돔 들망 조업 구역 조정 등 4개 과제 선정
- 위원회 과제별 분과위 개최(서해 : '09.11.27, 12.29, '10.2.1, 동해 : '09.12.4)
- 동해 분위원회 개최('10.1.26) : 추진실적 점검 및 신규과제선정
 - (신규과제) 외끝이 대형기저 조업구역 조정, 기선권현망 울산연안조업 구역 설정, 동해북방어장 통발어업과 자망어업 간 조업구역 조정
- 어업조정위원회 현장 홍보·교육('10.1.20~2.5, 10회, 11개 시·도)
 - * 수협, 시·도, 어업인 등 대상 집합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다 추진계획

- 2010 어업조정위원회 조정계획 수립('10.2)
 - 조정과제 선정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조정방향, 전략 등
- 분기별 위원회별 추진실적, 추진방향 협의 및 점검(수시)

7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 어업허가 처분 건수는 77천건으로 5년마다 허가 갱신
 - * 근해어업(3,957건), 연안어업(66,660건), 구획어업(7,138건)
-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1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규정(수산업법 제32조) 하고 있으나 미이행 사례 다발
- 어선 없이 어업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유희어선으로 인한 어업정책 혼선 야기
 - * 일부 어업인들은 타인의 어업허가증을 복사하여 허가어선으로 위장 사용

나 추진경과

- 어선감척 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진입할 우려에 따라 “무조업 어선 일제정비 실시”
 - 어업허가 현황과 어선등록 현황을 정보화 사업으로 연계, 허가 및 등록현황 정비('09)
 - * 1차('04.4~'05.3) : 연안어업 무조업 어선 300여건 허가취소 등 정비
 - * 2차('08.8~현재) :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조사 실시 중
-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09.9~)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다 추진계획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법령개정안 검토 추진('10년, 법제연구원)
 - * (어업허가 일제정비) 일괄적으로 어업허가증을 재발급하는 새로운 절차
- 무조업선 정비(어업허가 일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11년, 6억원)
 - 어업허가증 소지가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ID허가증으로 교체 검토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작성·시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어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구·어법의 개량·변형 사례 증가
 - * 서해안(연안양조망의 기선권현망식 조업, 근해안강망의 2중낭망 사용), 남해안(변형 지지줄 자망, 연안양조망·들망의 저인망식 조업), 동해안(연안자망의 저인망·선망식 조업)
- 연근해 어구·어법(46개 업종)에 대한 표준고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시의 경직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어린고기 혼획방지 등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개발 추진 중
 - *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과제('08~, 수산과학원)
- 연근해 어구·어법 기준 마련 및 의견 수렴('08.12~'09.10)
- '07년부터 생분해성 어구보급 시범사업 실시(대게·조기·꽃게 자망 등)

다 추진계획

- 자원관리형 어구(혼획저감 등) 개발·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증제(어린고기 탈출장치 등) 및 인센티브 도입 추진('10년)
- 어업인이 신규 개발한 어구에 대하여 심사, 자원관리형 어구로 인증하여 사용케 하는 방안 강구
 - 어업허가장 발부시 “인증 어구설계도” 부착 제도화 추진
- 생분해성 어구 사용자 인증제 도입 추진('10년)
 - 생분해성 어구 생산단체 인증제 도입 : '07. 현재 6개 생산단체 인증
 - *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 관계법령 제정·공포('10년 상반기), 시행 : '11년 상반기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주변해역의 표면수온은 최근 41년간 약 1.03℃ 상승하고, 수산 자원은 매년 4~4.5km의 속도로 북상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어업관리시스템 미비
-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어장관리, 어업규제 및 어구·어법 제도 등 어업 관리 정책의 유연성 부여
 - * 해양환경자료 : 수온, 염분, 밀도, 플랑크톤, 용존산소, 해류 장단기 변동 등

나 추진경과

- 어장환경, 어구·어법, 조업어장 등 연근해어업 변화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추진 (연근해어업 총조사, '08~'10, 수산과학원)
- 기후변화에 따라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던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 수산업법 제42조(한시어업 허가) : '09.4월 개정, '10.4월 시행

다 추진계획

- 해양·어장 환경변화 조사결과를 전통적 어장관리 시스템에 접목, 새로운 연근해어장 관측시스템 구축방안 마련('10년)
 - 기후변화와 어업실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업종별 그물코 규격,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재조정
- 예상 풍어, 과잉어획 어종 및 신규 출현어종 등에 대한 과학적 어장환경 관측·예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 한시어업허가” 추진('10년)
 - 해역의 범위, 어획가능량, 조업기간 등을 정하여 기존 허가어선에 한시 허용
-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어업현장의 어구·어법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가 현황

- '05년부터 해역별 특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외해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시험어업 추진
 - * 시험어업 : ('05) 제주 → ('06) 경남 → ('07) 전남 → ('08) 강원 → ('09) 경북

나 문제점

- 외해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장치 미흡
 - 외해양식 면허에 대한 규정은 기존 내만 가두리양식 면허와 유사하여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에 한계
- 연안양식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필요
 - 참다랑어, 능성어, 대구 등 고급품종에 대한 개발 미흡

다 추진계획

- 외해양식 본 사업을 위한 관련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제도개선
 - * 개정추진 : 수산업법('09.9~'10.6), 어업면허의 규칙('09.9~12)
- 외해 양식어장 개발 및 참다랑어 양식기술 연구개발
 - 온난화의 영향으로 고부가가치 양식 가능성이 높아진 참다랑어 양식 어종에 대한 5개년 연구개발(인공종묘 생산, 부어초 등 개발) 지원
 - * 지원규모(국비 160억원) : ('10) 20억원 → ('11) 38 → ('12) 34 → ('13) 34 → ('14) 34
- 외해양식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및 시설관리 지원방안 강구
- 내만 가두리어장 총면허 면적의 30%를 외해어장으로 이설하는 방안 마련
 - * 연차별 이설 계획(352ha) : ('11) 100ha → ('12) 125 → ('13) 127

가 현황

- 어업인의 친환경양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추진 활성화 미흡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04~'09, 489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86~'08, 421천ha, 1,484억원) 에도 불구하고 어장오염 가중
 - '08년부터 친환경 무산(無酸) 김 양식(전남 장흥군) 실시, 친환경수산물 인증(어·패류 등 10종 대상, 현재 김 3건 인증)

나 문제점

-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사용 및 육상양식장 항생제 남용
- 배합사료 신뢰저하로 사용률 낮음(단가, 성장도, 제품의 질 등)
- 일부양식장 자가오염 및 밀식으로 폐사, 질병 등 생산성 저하

다 추진계획

- 주요 양식단지에 친환경 양식 시범단지 조성 점진적 추진
 - 불법시설 자율정비, 양식장 저질 청소 및 시설물 재배치 등 친환경양식 시범단지 조성
- 「친환경 고생산성 새우양식」 기술 개발 보급
 - 미생물을 이용, 사육수의 교환 없이 자체 오염물질을 제거한 순환 여과식 양식
- 지하열 이용 등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지원
 - 육상양식장 지하해수 개발 보급으로 연중 적정수온 유지

가 현황

-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세계 5대의 갯벌 보유(2,550km², 국토면적의 2.5%)
- 갯벌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지역 소득과의 연계성이 낮아 지선 어업인 불만

나 문제점

- 갯벌 수산자원 활용은 패류 등 정착생물 채포위주로 소극적 이용('90년 109천톤 → '07년 35천톤, △68%)
- 특히, '07년 유류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은 갯벌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절실

다 추진계획

- 서해안 유류피해어장 환경복원과 연계한 친환경 갯벌어업 육성
 - 갯벌어장 경운, 객토, 진입로 등 어장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갯벌어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
 - * 어장환경 복원계획('09.7.30), 어장환경개선 추진('10년 223억, '10~'19년 1,577억)
- 체계적인 갯벌 활용 제도를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 갯벌어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가 국내외 동향

- 고래자원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적 포경 논의에 대응한 국내법 정비 등 이용방안 강구 필요
- 고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어업분야 피해예방 및 전통적인 고래 식문화 보존을 위해 제한적 포경 검토

나 추진경과

- 제4차 신 수산 수요포럼에서 「고래자원 활용방안」 논의(4.8)
- 수산선진화 위원회 보고(5.7, 5.12, 5.26)
- 제61차 IWC 정례회의에서 고래 식문화 소개(6.23)
-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계 강화방안 보고(5.28)
- 고래자원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계획 보고(7.20)
- 국내 고래정책 포럼 개최(9.18, 울산)

다 추진계획

- 포경어업 신설 등 관계법령 개정('10.4월)
 - *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
-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추진('10.4월~)
 - *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고래포획 금지조치 이행지침을 통합
 - 돌고래류 잉여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강구
 - 모든 고래의 DNA 확보, 불법포획·혼획고래 유통관리 체계 확립 등

14 내수면 어업 진흥

가 현황

- 친환경 생태양식 및 창업 지원, 신품종 개발 및 고유어종 보존 등 내수면어업 기능강화 필요
-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보호 필요
- 전국적으로 어도설치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나 문제점

-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관련 강·하천의 서식지·생태계 변화 예상
- 어도설치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여 참계, 은어 등 소하성 어족자원 감소
- 중앙내수면연구소의 부지 협소와 최첨단 연구시설 부족으로 연구 기능 저하

다 추진계획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을 통한 창업지원 등 내수면 산업 육성 지원
 - 참계, 다슬기 등 종묘생산기술 개발 및 친환경 생태양식 사업 지원
 - 꼬치동자개 등 멸종위기 종과 천연기념물 종 복원 및 보존
 - 4대강 유역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의 생태계 회복 지원·관리
- 어도 실태를 조사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친환경 어도로 개선
- 종합적인 내수면어업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내수면어업기본계획’ 수립

15 수산분야 ODA 전략적 추진

가 현황

- 수산분야 대외지원 사업은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
 - ‘06년부터 무상 물자지원 약 13억원(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국)
 - * (‘06) 223백만원 → (‘07) 316 → (‘08) 388 → (‘09) 384
 - 스쿨버스 지원(‘05), 감척어선 지원(‘02) 등 간헐적·일시적 지원

나 문제점

- 공적원조(ODA) 사업 경험 부족 및 대외지원 전략 부재
-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ODA 사업 확대가 예상되나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미흡
 - * 정부 ODA 확대 계획 : GNI 대비 2012년 0.15% → 2015년 0.25%

다 추진계획

- 우리나라 원양 참치어선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PNA 8개국과의 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동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
 - PNA 수산 고위 레벨 방한 초청 협의
 - PNA 8개국과 수산협력 MOU 체결
- KOICA 무상원조사업 및 기획재정부 유상원조사업(EDCF)을 활용한 서아프리카 연안국 지원 확대
- 연안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서 민·관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가 현황

- '97년 이후 원양어업 등 해외수산자원개발 총 투자액은 355억 \$ 수준
- 해외 양식산업이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상
- 해외 합작진출 사업도 원양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태 파악 미비

나 문제점

- 원양산업 정책의 외연을 원양어업에서 해외 양식·가공·유통 등으로 넓혀야 하나, 해외 진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미비
- 일부 업체는 양식, 가공 등에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투자정보 부족, 현지적응 실패, 자본력 열위 등으로 실패

다 추진계획

- 수산분야 해외합작 투자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강구
 - 해외 수산투자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원양산업지원센터 활성화
- 주요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전문가 양성
 - 민간차원의 '한·러 어업협력공사' 설립으로 러시아 연해주 수산진출 기반 마련
- 해외 수산자원 개발자금 지원 확대(현행 10억원대 → 100억원대) 등 투자지원 체계 마련

가 현황

- 국내 원양어선의 노후화(평균선령 27년)가 심해 경쟁력 취약
 - 원양어업의 조업일수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어 고성능 어선 필요
 - * 참치선망 신조 용자 지원(소요자금의 70%, 금리 4%, '04~현재)
- 원양업계 설문조사 결과 원양어선 신조 희망물량은 '16년 까지 총 38척 (5,700억원)으로 파악('09.8)
- 전 세계적으로 어선 신조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나 문제점

- 어선 신조 지원은 WTO/DDA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현행 정부 용자방식의 원양어선 신조 사업 유지 곤란
- 국내 조선소는 최근 20년간 원양어선 신조 경험이 전무하므로, 어선 건조 기술력 축적과 건조비용 감축 대책 필요

다 추진계획

- WTO/DDA 보조금 금지를 감안, 선박금융 지원방안 강구
- 어선 건조 원가 절감을 위하여 원양어선 선형 설계도 작성을 위한 '연구회' 운영(원양업계, 조선업계, 한국해사기술협회 공동 참여)
- 원양어선 신조사업자에 대해 국내조선소에서 어선신조 기회 제공
 - '10년부터 국내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지침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07.12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에서 「북측 동해수역 남측어선의 입어 사업」 등 합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 중단
- 동해 북측 수역에 제3국 어선조업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 및 남측 어선 피해 우려
 - '04~'08년 매년 수백 여척 조업, '09년 들어 중단
- 동해 북측 수역 어업자원의 이용·개발권 선점 대책 필요
 - '07년부터 북한과 중국 간 동·서해 어업협력 프로젝트 등 추진

나 추진방안

- '07년 남북 간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호혜적인 사업으로 '동해 북측 수역 입어사업' 우선 추진
- 동해 북측수역 입어사업을 통하여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및 남북 간 공동자원관리 협력기반 구축
 - 조업조건, 입어절차 규칙 등 조업활동 및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동해 어로합의서 체결

다 추진계획

- 동해 북측수역 입어 방안 마련('10.3)
 - 조업안전 및 채산성을 고려, 러시아 EEZ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어장과 연계하여 인근 동해 북측수역 입어 추진
-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협의 추진

가 필요성

- 국내 어선원 수급난에 따라 많은 외국인을 어선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미흡한 기술 수준과 언어·문화 장벽 등으로 작업 능력에 한계
 - * 외국인 선원 : 8천명(원양 3천명, 연근해 5천명)
- 향후 외국인 어선원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적응을 도와줄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
-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PNA 8개국 등)과의 기술연수 등을 통한 교류 확대 필요
 - 현재는 KOICA의 지원으로 수산인력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부경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연수 실시

나 기대효과

-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어업분야 교류 실시
-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어선원 수급난 완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 개도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다 추진계획

- 가칭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유치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남아·아프리카·남태평양 등 개도국에 대한 어업교류 목적의 국제어업교류센터 필요
 - 외국어선원·어업인에 대한 각종 수산기술 장·단기 교육연수과정·시설 마련, 고위수산정책 연수 및 양식기술 교육 병행
- 수산기술 실험 실습은 수산과학원, 부경대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가 현황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08.9월 개장 이후 거래물량 부족 및 운영 주체의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시장기능 침체
- 건립된 지 36년이 경과한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장현대화 및 책임운영 체제 확립이 긴급

나 문제점

- 외부적 요인으로 수입 수산물 반입량 감소 등 물량유치 어려움
 - 환율 상승, 포클랜드 오징어 어황부진, 러시아 어획물 등 수입 수산물 반입 급감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시장운영 경험 등 역량 부족
- 산지·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양 시장의 상생 발전방안 강구 필요

다 추진계획

- 부산국제도매시장 운영정상화를 위해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방안 강구
 -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러시아산 수입수산물(2만톤) 양륙향으로 지정 토록 고시 제정
 - 대만산 썬치 반입물량(2천톤) 상장을 위해 대만선사와 협의 추진
-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체제 확립
 - 사업추진 주체 및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정지원 방안 검토
- 부산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통합운영 방안 등은 부산시와 협의

가 현황

- 임의 상장제 전면실시('97.9)에 따른 문제점 대두
 - 수산업법('99.4.15) 및 수산자원보호령('99.9.30) 근거조항 삭제
 - * 판매제도 변천 : 의무상장제('63.12~'95.2) ⇒ 단계별 임의상장제('95.3~'97.8)
- 임의상장제 부작용 보완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
 - * 대상업종(11개), 어업(12개) 및 판매장소(118개소)를 고시로 지정
- 수산업법에 시·도지사의 위판장 지정·고시 근거 마련('08.4.29)
 - * '09.11월 현재, 10개 시·도에서 185개소 위판장 지정 고시

나 문제점

- 통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수산정책 수립 및 집행 효율성 저하
 - 어업피해 보상시 객관적 자료 부족
- 위판수수료 수입 감소로 일선 수협 경영안정 저해
 - 수협은 면세유류 공급,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부 조합원들이 위판에 참여하지 않아 수협경영 안정성 저해
- '10년부터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수출용 국내어획물에 대한 수협계통판매 필요

다 추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지 위판률 제고 방안 마련
 - 임의 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 및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의무상장시 인센티브 부여, 조합원 총회의결로 의무상장 추진기반 마련 등)

가 현황

- 전국 어촌계 수는 1,978개('09년 기준)로 매년 증가 추세
 - 전남이 854개로 전체 43.2%를 차지하고, 경남, 경북 순임
- 발전 수준별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어촌계가 1,268개로 가장 많고, 자립기반을 가진 어촌계는 710개(35.9%)에 불과

나 문제점

- 신규 어촌계원의 진입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 장애
 -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고, 일부 어촌계의 경우 어업보상 등을 인식하여 신규가입 제한 실정
- 어촌계장 등 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경영능력 한계로 사업활성화 미흡
- 어촌계장 선거(직선)로 인한 어촌계원간 갈등 야기

다 추진계획

- 어촌계에 '경영' 개념 도입, 어촌계장 전횡 방지
- 어촌계장 등 임원선출 방식 개선
 - 어촌계장 선출방식을 선거 또는 지구별 수협 조합장 임명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
 - 어촌계장의 임기는 지구별수협 조합장과 같이 1회 연임 등으로 제한
-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
 - 설립·해산권과 지도·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방안
 - 시장·군수의 어촌계 설립·해산시 지구별수협의 의견제출 등
- 어촌계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가 현황

-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광사업 지원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종합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사무장·컨설턴트 지원, 우수마을 포상,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홍보 등
-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광특회계로 분류되어 정부입지 약화
 - *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정책평가 보고(12.11/제42차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 이행 지시

나 문제점

-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을도 있는 반면 부실마을 발생
 - 입지여건 불리, 지도자 및 지자체 의지부족, 주민갈등 등 복합적 이유
- 관광사업의 소득효과 미미, 분배의 불합리성 등으로 회의적 시각 확산
 - 시설의 위탁운영, 용도전환, 폐쇄 등 비정상적 운영형태 발생

다 추진계획

- “어촌관광업” 신설 및 어촌관광 추진 “마을어업회사” 설립 추진
 - 어촌에 적합한 회사 유형 개발 및 표준모델 설계
 - * 어촌관광회사 설립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컨설팅사업’에 의한 컨설팅 제공
- 어촌체험마을 실태조사 및 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성공·발전가능·미흡 마을로 분류하여 미흡마을(20여개소)은 구조조정
- 어촌관광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확대·보급하고 전문가 양성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확대(30→70명) 및 바다관광 해설사 육성
- 차원 높은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Boom-up 조성 등 새롭게 디자인
 - 유명인사 조형물 건립 및 어촌문화 발굴 등 축제 행사 지원 등

가 현황

-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 40세 미만 경영주(3.8%) 급감, 60세 이상 경영주(48.3%) 급증
- 어촌지역의 배타적 정서 및 낙후된 생활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귀어 대책 필요

나 문제점

- 어촌계 가입 및 어업기반 취득 곤란
 - 신규 어촌계원의 진입이 어려워 젊은 인력 활성화 장애
 - 신규어업허가 억제, 면허취득 기회 미부여, 어업권 구입 시 자본부족
- 어촌의 정주환경 열악 및 자본 부족
 - 자녀교육 및 주거환경 미흡, 생산환경 열악, 낮은 기계화율 등 문제
 - 어업기반 확대 또는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한 자본력 부족

다 추진계획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 어업인의 정예화
 - 현장 중심의 업종별 단기(2개월) 양성과정 설치(수산계 대학)
 - * 학계, 산업계 등 전문 강사진을 활용, 집체교육·현장 방문교육 등 재미있고 실용적인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수산업 진입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기존 교육기관)
- 어촌 귀어대책 추진 및 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 귀어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및 편의 제공
 - 어업권 임대차 금지 완화방안 강구
 - 영어승계자 지원확대, 창업자금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가 현황

- WTO/DDA 협상결과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일부감축·폐지에 따른 직접 소득지원 필요(FTA 국내대책 및 국정과제, '07.12)
- '08~'0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구용역(육지8km 이상, 23천어가)
 - * 농업분야는 WTO 출범 이후 '97년부터 9개 직불제 도입·운영 중
- OECD 국가에서 수산직불제 시행 움직임 강화
 - EU는 수산보조금 한도 설정, 3년간 업체당 3만유로 지원
 - 일본은 '05년부터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離島漁業再生支援交付金)을 지원 중에 있고 '09년 정권공약으로 어업 소득보상제도 공표
- 홍콩각료회의('05.11.18)에서 수산부문은 과잉어획능력을 유발하는 보조금 금지를 결의함에 따라 농업과 달리 수산직불제 도입 신중 검토 필요

나 문제점

- 수산 보전제 지원방안('07.6.28)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 생분해성어구 지원 등은 직불제 개념에 맞지 않음
- 법적 근거마련에 따라 72천어가 등록 소요예산 20억원 필요
 -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09.4.1), 시행령('09.10.8), 규칙('09.12.9) 개정·공포
- 농업은 직접지불금 지급 가능, 수산업은 직접지불금 지급 근거 미흡
 - * 주업농으로 한정 : 제12조(직접지불금),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다 추진계획

- 수산분야 직접지불금 법적근거 마련('10, 법 제12조, 제13조 개정)
- 어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10)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실시('11) → 본사업 실시('12)
 - * 농가단위소득안정제 : 도상연습('09.10~12월), 시범사업('10.6~10월)

가 현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시행('04~)
 - 5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어선원) 실시(사회보장성 정책보험)
 - * '09년에 19천건 806억원(어선원 459억원, 어선 347억원)의 보험금 지급
 - 어선원 보험가입 실적('09년) : 가입대상 79,867척(선원수 122,077명) 중 5톤 이상 당연가입(100%), 5톤 미만 임의가입(2.5%)
 - * 총보험료('08년 815억원) 기준 톤급별(14~62%)로 국고지원('09년 364억원)

나 문제점

- 보험사고 급증 및 보험료 체납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 * 종전 선원공제 대비 어선원보험 최대 45.1%, 어선보험 최대 19% 인하
 - * 보험사고 급증 : ('04) 2,319건 → ('06) 12,334 → ('08) 17,370 → ('09) 19,494
 - * 보험료 체납('08년) : ('04) 12 → ('06) 61 → ('08) 172 → ('09) 150
 - * 누적 결손금('09년) : 861억원(누적손실금 664, 국고지원 부족분 197)
- 소형어선 보험 가입율 저조, 보험재정 악화 등 문제 노출
 - 5톤 미만 소형어선(전체 가입대상의 88%)의 가입률 저조
 - * 가입실적('09년) : 가입대상 70,111척 중 1,739척 가입(2.5%)

다 추진계획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추진('10.3)
 - 재정수입 확대방안 및 재정지출 감축방안 등 대안 마련
- 어선원보험 단체가입시 인센티브 부여로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10.4)
 - 5톤 미만 임의가입어선 단체가입 시 보험료 할인 방안 마련
 - * 현재 어선보험에 한해 동일 어촌계원 소유선박 단체가입 시 10% 할인 적용

가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 등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필요
- 농림수산 분야 국가연구기관의 법인화 방침에 부응
 - 수산과학원의 기능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높은 연구분야 검토('08.1)

나 추진경과

- 법인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반 구성·운영
 - 국내외 법인 관련 유사기관 설립사례 분석·검토('09.11)
 - 수산과학원 법인화 대상업무 및 인원 행안부 협의('09.12)

다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전담법인” 법적 근거 마련
 - 의원 입법안 국회 제출로 '10.1월 본회의 통과 추진
 - 법인 설립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규정 수립('10.2)
 - 법인 설립 업무계획 수립·확정 및 법인 출범 준비('10.7)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역별 어업조정과 맞춤형 연안 어업관리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 지도단속, 자원회복 등 관련 정책과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 (구)수산사무소의 지자체 이관 등에 따른 수산행정지원기능 보완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수산정책 집행 및 지원요구 증가
- 동·서해 접경수역(NLL)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 효율적인 지도단속 체계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 신수산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지도단속체제 개편방안 논의('09.9.30)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 T/F 구성 및 회의 개최('09.10.14)
- 어업지도사무소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09.10.28)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방안' 보고('09.12.7)
 - * 업무 및 기능재편
 - 어업지도단속을 어업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율 제고
 - 조업어선 및 대어업인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능 확대
 - *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
 - 명칭은 기능함축과 인식이 용이한 '어업진흥원' 또는 '수산관리원'으로 변경
 - 동·서해 2개 사무소 체제를 동·서·남해 3개 해역 관리체제로 확대

다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어업지도단속 체제 개편방안' 확정('10.1)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연간 약 1조7천억원 규모로 면세유(6,021억원)가 전체 보조금의 약 36% 차지('08. 기준)
- WTO/DDA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 중인 바, 최악의 경우 면세유, 이차보전 등 수산보조금의 약 72% 금지 우려
 - ⇒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어업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사전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신 수산 정책포럼에서 "수산보조금 개편방안" 논의(3.11)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수산보조금 개편원칙"에 합의(7.27)
 - 전체 수산보조금 규모는 유지
 - 자원고갈 보조금은 축소, 자원증강 보조금은 확대
 - DDA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축소/폐지
 - 수산업 존립기반 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은 일단 유지
 - 기업형 어업은 간접지원 위주, 생계형 어업은 복지차원 접근
- "수산보조금 세부 개편방안"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10~11월)

다 추진계획

- "수산보조금 세부 개편방안" 마련
 - 수산보조금(79개)을 개편원칙에 따라 분류하여 확대·축소·폐지 등 결정
 - * 수산발전기금 및 원양어업관련 보조금 우선 검토
- (예시)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등은 연안국 협력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 '11년 예산편성에 반영(DDA 협상동향을 보아 강도·속도 조절)

가 현황

- 굴 등 일부 양식어장은 퇴적물로 인한 오염으로 어장환경 정화 및 생산성 회복 필요
- 어장관리법상 어장관리해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어장관리 방안 미비

나 문제점

- 어업인들이 자기 어장을 스스로 청소하는 어장환경관리 인식 부족
- 내만의 가두리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이 미흡하고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한 어장정화사업비 과다 소요
- 어장관리법상 '어장'은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연근해 어선의 조업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 추진계획

- 어장환경 개선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체제 마련
- 전국의 연안 양식어장에 대한 단계별 어장환경 실태조사 실시
- 어장관리해역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제 도입
- 어장환경정화 범위를 어선어업 활동구역으로 확대
 - 어획시 양망된 폐기물 등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연안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휴식 직불제 도입